

I. 반론보도청구사례^{주)}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중 記事의
주인공과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신청인들의 反駁이 사실에 反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訂正報道文을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1995. 1. 21.자 결정 (94카기4881)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오 씨 외 10명이 월간지 「FEEL」을 발행하는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 조선일보사에 반론문을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월간지 「FEEL」은 1994년 8월호 『독점수기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고백』이라는 제하로 서울대 사회대 86학번의 여학생이 운동권 선배와 연애티에 배신당한 후 호스티스 생활과 재벌회장과의 동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남자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 사건 소송에서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총 48명 중 11명인 신청인들은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으로서 기사내용과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했다. 이에 피신청인이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전원이 주

주) 본 사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개정법률(제 5145호, 1995. 12. 30.)이 시행(1996. 7. 1.)되기 전에 법원에 청구된 사건들이어서 사건명이 정정보도청구로 표기되어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이 그 권리의 성격에 적합하게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개칭되었으므로 본 판결집에서는 반론보도청구사례로 구분하여 게재한다.

인공과 같은 경력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위 기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정정보도문은 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위법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히면서, 신청인들의 반박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신청인들은 이 기사가 보도되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게재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했고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기사내용은 진실이며 다만 취재원 보호차원에서 전주출신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전주출신에 대한 부분만 정정하는 정정보도문안을 제시하여 합의가 결렬, 불성립되자(94서울중재214 참조) 신청인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신청인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여 1996년 5월 14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94가합91515 손해배상(기)참조).

決定文

사 건 : 94카기4881 정정보도심판

신청인 : 1. 오
서울
2. 이
전주시
3. 김
서울
4. 김
서울
5. 김
서울
6. 정
서울
7. 김
서울
8. 김

서울

9. 라

서울

10. 신

서울

11. 류

진주시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종걸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공동대표이사 방상훈, 방우영

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주교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자의 펴(FEEL)지의 표지 왼쪽 하단부에 가로 2cm, 세로 1cm의 크기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24급 고딕체의 표지활자로 게재하고, 목차란 첫번째면 상단부에 가로 13cm, 세로 2cm의 크기로 「지난해 8월호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고백기사에 대한 반론문」이라는 목차를 24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고, 126면 상단부에 가로 18cm, 세로 5cm의 크기로 위쪽에는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24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신청인의 성명을 12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신청인들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월간지 펴(FEEL)지 표지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지활자로 게재하고, 49면 목차란에 가로 7센티미터, 세로 7.5센티미터 크기의 명조체로 「지난 8월호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고백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목차를 게재하고, 126면에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정정보도문신청인의 성명을 본문활자로 1회 게재하라는 결정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지인 필(FEEL)지 1994. 8.호(통권 12호) 표지에 다른 기사의 표제와 함께 『호스티스출신 서울대 여대생의 충격고백』, 『서울대 사회대 입학-운동권선배와 연애티에 배신당함-휴학-호스티스 생활-재벌회장과의 아파트 동거-복학-두번째 휴학』이라는 표제가, 49면 목차란에 「독백수기」, 「호스티스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고백」, 「서울대 사회대입학-운동권 선배와 연애티에 배신당함-휴학-호스티스 생활-재벌회장과의 아파트 동거-복학-두번째 휴학」이라는 목차가 각 게재되었고, 126면에 『독백수기 호스티스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고백』이라는 제목으로 126면부터 131면까지 사이에 서울대 사회대 86학번의 여학생이 운동권 선배와 연애티에 배신당한 후 호스티스 생활과 재벌회장과의 동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남자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127면에는 약간 벌린 입술부위를 클로즈업한 사진이, 129면에는 배꼽부위를 클로즈업한 사진이, 131면에는 얇은 속옷을 걸친 둔부를 클로즈업한 사진이 각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들 및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들은 위 기사가 게재되어 공표됨으로써 신청인들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기사를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을 지명한 사실이 없고, 위 기사의 주인공을 서울대 여대생이라고도 보도하였다고 하여 위 필(FEEL)지 일반 독자들이 신청인들을 위와 같은 경력의 소유자라고 인식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들은 위 기사에 의한 피해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신청인들은 보도의 정정을 구할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으며 또한 위 정정보도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다룬다.

나. 그러므로 먼저 신청인들이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주체로서의 피해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에서 말하는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었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 위 기사에서 신청인들이 직접 지명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사의 주인공이 서울대 사회대 86학번으로서 여학생이라고 보도되었고, 한편 당원의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모두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총 48명 중 11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들은 위 기사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기사로 인하여 그 인격적 법익도 침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법 소정의 피해자라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신청인들이 구하는 이 사건 정정보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들은 먼저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으로서 위 기사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는 바,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반박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위 반박을 주장하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위 기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에 관한 정정보도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전원이 위 기사의 주인공과 같은 경력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이 위 기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은 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한 내용의 정정보도문이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다음으로 신청인들은 1989-87년경 서울대 사회대 공개씨클에는 디레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은 물론 위 기사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정정보도청구내용은 위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과는 개별적 관련성이 없는 제3자에 대한 것으로서 신청인들의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정정보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정정보도문의 크기

신청인들은 필(FEEL)지 표지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지활자로, 49면 목차란에 가로 7센티미터, 세로 7.5센티미터 크기로 「지난 8월호 호스티스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고백기사에 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목차를 126면에,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정정보도신청인의 성명을 본문활자로 각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는 바, 위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부분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표지의 제목은 가로 20cm, 세로 1cm의 크기로, 목차는 가로 13cm, 세로 2cm의 크기로, 정정보도문은 가로 18cm, 세로 5cm의 크기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 21.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이 민 걸
판사 김 재 형

〈별지 1〉 반론문

지난 1994. 8. 호 FEEL지 126면부터 131면에는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출신의 한 여학생의 독점수기라는 형식으로 서울대 사회대 입학, 운동권 선배와 연애편에 배신당함, 휴학, 호스티스 생활, 재벌회장과의 동거 등을 내용으로 한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총 48명 중 위 기사내용과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정정보도신청인

〈별지 2〉 정정보도문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것)

지난 1994. 8. 호 FEEL지 126면부터 131면에는 서울대 사회대 86학번으로서 전주를 모교로 한 여학생의 독점수기라는 형식으로 서울대 사회대 입학, 운동권 선배와 연애편에 배신당함, 휴학, 호스티스 생활, 재벌회장과의 동거 등을 내용으로 한 기사가 게재되었는 바,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은 총 49명으로서 그 중 전주를 모교로 한 여학생 2명은 물론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으로서 위 기사내용과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또한 1986~87년 무렵 서울대 사회대에는 공개씨클로서 사회대 평론 편집실과 연극반 2개가 있었으나 위 2개의 씨클에는 던레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은 물론 위 기사내용과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확인합니다.

정정보도신청인

□

경찰청의 報道資料를 그대로 記事化 했을지라도 신청인의 인격적 법익이 피해를 받았으므로 신청인은 반박할 권리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5. 1. 26.자 결정 (94카기5463)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5년 1월 26일 서울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의 전 의장 연 씨가 중앙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중앙일보사에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1994년 9월 29일자 중앙일보에 신청인과 관련해 「경찰청이 주사와 조직인 서울노동자 민족문화운동연합을 조직하여 공단근로자를 상대로 김일성 주체문예이론을 전파하고 불법집회에 가담한 혐의로 이 단체 의장인 연 씨와 조직원 등 7명을 구속했다」는 취지의 기사와 구속대상자 명단이 함께 보도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청인 이외에 기사에 거론된 사람들도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내용, 구속자 가족들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게 질의서를 제출한 내용, 사회 각계인사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내용을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담당 재판부는 연 씨는 신청인을 지칭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피신청인이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한 것이라도 그 내용이 중앙일보를 통하여 공표된 이상, 중앙일보의 사실에 관한 보도라고 할 것이며, 신청인은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신청인과 위 단체에 관한 정정보도요구 사항만을 인정했다.

신청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1994년 10월 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신청을 했다. 중재과정에서 피신청인측이 경찰자료에 근거한 보도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고 하여 중재가 불성립되자(94서울중재252 참조)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定文

사 건 : 94카기5463 정정보도심판청구

신청인 : 연
서울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中央日報社)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홍 석 현
대리인 변호사 이 경 훈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자의 중앙일보 제2사회면의 기사란 중 6단과 7단의 중앙부분에 세로 2단, 가로 5cm의 크기로, 오른쪽 윗부분에는 가로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44급 명조체활자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신청인 성명을 10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 1.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중앙일보의 1994. 9. 29.자 제2사회면인 22면 6단과 7단의 중앙부분에 『노동계 주사파 7명 적발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청은 28일 주사파 조직인 서울노동자 민족문화운동연합(노민문련)을 조직, 공단 근로자들을 상대로 김일성 주체문예이론을 전파하고 각종 불법집회에 적극 가담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단체구성 가입 등)로, 이 단체 의장인 연 씨(40·서울대 식물학과졸)와 사무국장 임 씨(29·서울대 법대졸) 등 조직원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구국의 전술> 등 불온서적 71권, <사회주의와 사실주의> 등 이적표현물 4백40여 종, 사상학습용 비디오테이프 2백44개, 컴퓨터 4대, 무비카메라와 프린터 각각 1대 등 8백여 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연씨 등은 90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문밖 교회에서 노민문련을 결성, 올 8월까지 북한원전인 <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등 7종으로 사상학습을 실시, 서울과 경기지역 노동자들에게 학습시키고 알레리 민족해방운동가 <알리>의 통일전선 투쟁 영화를 서울·경기지역 공단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상영, 노동자들의 투쟁분위기를 조장한 혐의다. 구속영장 신청자는 다음과 같다. 연 , 임 ,

김 (29·여·승의여전 관광과졸·문선국장), 이 (26·신구전문대졸·중부지부장 의장대행), 김 (28·여·이화여대졸·노래분과장), 이 (31·서울대 법대졸·정책 실장), 박 (24·고졸·구로지부 교육책)』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신청인은 1990. 9. 경부터 위 단체의 의장으로 활동하였으며, 1994. 9. 27. 위 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피신청인이 경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라 신청인의 본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명인 「연 」이라고 표기하여 위 기사를 보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므로 위 기사에 나오는 「연 」은 신청인을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이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 위 기사를 보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내용이 중앙일보를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는 이미 중앙일보의 사실에 관한 보도로 되었다고 할 것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중앙일보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는 위 기사 중 신청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 별지 1 반론문의 내용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①신청인 이외에 위 기사에서 거론된 사람들도 대부분 위 단체의 활동을 그만두고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내용, ②구속자 가족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게 4개항의 질의서를 제출한 내용, ③구속자 가족과 학계, 종교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속자 석방 및 진상규명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도 정정보도문으로 게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①항의 정정보도청구내용은 신청인과는 개별적 관련성이 없는 제3자에 대한 것이고, 위 ②, ③항의 정정보도청구내용은 신청인 등의 가족과 사회 각계 인사들이 신청인 등의 구속에 항의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위 기사를 반박하기 위한 사실적 진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정정보도는 모두 신청인의 반론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4.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 부분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크기는 세로 2단, 가로 5cm의 크기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 26.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이 민 결
판사 김 재 형

〈별지 1〉 반론문

중앙일보는 1994. 9. 29.자 22면 중앙부분에 『노동계 주사파 7명 적발 구속』이라는 제목 아래 「주사파조직인 노동자 민족문화운동연합을 조직, 공단 근로자들을 상대로 김일성 주체문예이론을 전파하고 각종 불법집회에 적극 가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위 단체의 의장인 연 (40) 등 7명이 구속되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연 는 위 단체의 의장을 그만두고 현재 생활문제연구소 이사로 있으며 위 단체는 이미 5년 전에 창립되어 공개적으로 활동해 왔고, 6공 시절에도 그 활동이 문제되지 않았다.

정정보도신청인 연

〈별지 2〉 정정보도문(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것)

본지 9월 29일자 사회면에 보도된 『노동계 주사파 7명 적발 구속』제목의 기사 중 노동자 민족문화운동연합 사건 관련기사에 대해 현재 구속 중인 전 의장 연 (40·서울대 문리대 제적, 현 생활문화연구소 이사), 임 (29·서울대 법대졸, 제36차 사법고시 1차 합격생), 이 (31·서울대 법대졸, 한국정밀금형 대리), 김 (28·컴퓨터 프로그래머), 김 (28·송의여전졸, 놀이진행자), 이 (26·신구전문대 제적, 사진 전문가), 박 (24·노동자) 씨 등은 이 사건이 신공안 정국을 위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경찰은 노민문련을 이적단체라고 규정했으나, 노민문련측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민문련은 이미 5년 전에 창립되어 공개적으로 활동해 온 단체이며 6공 시절에도 그 활동이 문제되지 않았던 단체인데 뒤늦게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들 대부분은 이미 1~3년 전에 활동을 그만둔 상태이며 지병을 치료 중이거나 임신 중에 있고, 사법고시 준비, 첨단기술개발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구속자 가족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게 4개항의 질의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구속이 당사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들 구속자 가족과 학계, 종교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자 석방 및 진상규명 작업에 나서고 있다.

정정보도신청인 연

□

피신청인이 경찰의 발표내용을 그대로 옮겨 기사를 보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신청인의 사실에 관한 보도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기사와 관련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권리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5. 2. 20.자 결정 (94카기5716)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6년 2월 20일 강 씨가 동아 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신청인이 경찰의 발표내용을 그대로 옮겨 기사를 보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내용이 동아일보를 통하여 보도된 이상 이는 이미 동아일보의 사실에 관한 보도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기사와 관련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1994년 9월 9일자 31면에 『고교에 주사파 침투』라는 제목과 『지하조직 '쌈' 적발』이라는 소제목 하에 신청인이 가입한 조직 '쌈'이 서울 남부지역 고교생들에게 主體思想을 학습시키고 이들을 불법시위에 동원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94서울중재256).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경찰청 발표내용을 보도한 것이므로 발표내용과 정반대인 정정보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중재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定文

사 건 : 94카기5716 정정보도

신청인 : 강

서울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병관, 권오기

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자의 동아일보 31면의 기사란 중 1, 2, 3단 가운데 부분에 가로 15cm, 세로 3단의 크기로, 그 맨 윗부분에는 가로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70급 고딕체활자로, 그 아랫부분에는 가로로 “‘샘’은 주사파 조직이 아니다”라는 소제목을 50급 명조체활자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세로로 별지 1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신청인 성명을 10급 명조체 본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별지 2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지 동아일보 1994. 9. 9.자 31면에 “고교에 주사파 침투”라는 제목과 “지하조직 ‘샘’ 적발”이란 소제목 하에 “서울경찰청은 8일 서울 남부지역의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 전파하고 이들을 불법시위 등에 동원한 주사파 조직 ‘샘’을 적발, 검거된 조직원 9명 중 회장 고 씨(21, 대헌공전 2년 중퇴) 등 3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강 씨(20, 단국대 농학과 2년)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해 6월 중앙대 루이스홀에서 고교생 70여 명과 조직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체사상에 입각한 고교생 운동조직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조직명칭을 ‘샘’으로 결정했다는 것, 이들은 샘을 결성한 뒤 풍물, 민족무예, 탈춤 등을 보급한다는 명분으로 구로고 등 서울 남부지역 11개 고교생 38명을 회원으로 모집한 뒤 이들 중 18명을 정회원으로 선발, 1주일에 1~3회씩 서울 당산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체사상을 학습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북한원전인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등의 책 내용대로 “주체사상은 우리쪽 사상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점 등을 고교생들에게 가르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지난 달 5일부터 2박 3일 동안 65명의 고교생을 참석시킨 가운데 지리산 노고단에서 ‘얼다

지기' 라는 수련회를 열어 미전향 출소 장기수인 이모 씨(67)를 강사로 초빙, 김일성을 미화하는 강연을 했다는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위 기사가 게재되어 공표됨으로써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신청인은 보도의 정정을 구할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고, 또한 위 정정보도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다룬다.

먼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 중 (1) '쌤'은 청소년들에게 민족문화를 가르치는 청소년문화단체이지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 전파하고 이들을 불법시위 등에 동원한 주사파 조직도 아니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도 아니며, (2) '쌤'에서는 고교생들에게 북한원전인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등의 책을 사용하여 "주체사상은 우리쪽 사상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등으로 1주일에 1~3회씩 주체사상을 학습시킨 사실이 없고, (3) '쌤'에서는 김일성을 미화하는 내용의 강연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의 위와 같은 정정보도청구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신청인이 경찰의 발표내용을 그대로 옮겨 위 기사를 보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내용이 동아일보를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는 이미 동아일보의 사실에 관한 보도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기사와 관련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이 부분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있다.

또한 신청인들은 '쌤' 회원들이 경찰 수사관들에 의하여 불법으로 강제 연행되었다거나, 경찰 수사관이 어린 고교생들에게 유도신문을 하여 허위진술을 이끌어 냈다는 등의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위와 같은 정정보도청구내용은 위 기사와 개별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제3자인 경찰 수사관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다.

3. 정정보도문의 크기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부분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정정보도문의 크기는 가로 15cm, 세로 3단의 크기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0.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이 민 걸
판사 김 재 형

〈별지 1〉 반론문

‘샘’은 주사파 조직이 아니다.

동아일보는 1994. 9. 9.자 31면에서 “고교에 주사파 침투”라는 제목과 “지하조직 ‘샘’ 적발”이란 소제목 하에 “서울경찰청은 8일 서울 남부지역의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 전파하고 이들을 불법시위 등에 동원한 주사파 조직 ‘샘’을 적발, 검거된 조직원 9명 중 회장 고 씨(21·대현공전 2년 중퇴) 등 3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강 (20·단국대 농학과 2년)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해 6월 중앙대 루이스홀에서 고교생 70여 명과 조직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체사상에 입각한 고교생 운동조직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조직명칭을 ‘샘’으로 결정했다는 것. 이들은 샘을 결성한 뒤 풍물, 민족무예, 탈춤 등을 보급한다는 명분으로 구로고 등 서울 남부지역 11개 고교생 38명을 회원으로 모집한 뒤 이들 중 18명을 정회원으로 선발, 1주일에 1~3회씩 서울 당산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체사상을 학습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북한원전인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등의 책 내용대로 “주체사상은 우리쪽 사상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점 등을 고교생들에게 가르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지난 달 5일부터 2박 3일 동안 65명의 고교생을 참석시킨 가운데 지리산 노고단에서 ‘얼다지기’라는 수련회를 열어 미전향 출소 장기수인 이모 씨(67)를 강사로 초빙, 김일성을 미화하는 강연을 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1) ‘샘’은 청소년들에게 민족문화를 가르치는 청소년문화단체이지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 전파하고 이들을 불법시위 등에 동원한 주사파 조직도 아니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도 아니다. (2) ‘샘’에서는 고교생들에게 북한원전인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등의 책을 사용하여 “주체사상은 우리쪽 사상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등으로 1주일에 1~3회씩 주체사상을 학습시킨 사실이 없다. (3) ‘샘’에서는 김일성을 미화하는 내용의 강연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정정보도신청인 강

〈별지 2〉 정정보도문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것)

1994년 9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동아일보가 지난 9월 9일자 사회면에 '고교에 주사파 침투'의 제목과 '지하조직 [샘] 적발'이란 소제목 하에 "샘은 93년 6월 중앙대 루이스홀에서 주체사상에 입각한 고교생 운동조직을 만들기 하고 결성하였다. ...고교생 38명을 회원으로 모집, 일주일에 1~3회씩 서울 당산동에 있는 샘 사무실에서 주체사상을 학습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이란 북한 원전으로 주체사상은 우리쪽 사상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점 등을 고교생에게 가르쳐 왔으며 지난 8월 5~7일에 전라남도 구례군 소재 지리산 노고단에서 미전향 장기수 이모 씨를 강사로 초빙 김일성을 미화하는 강연을 개최했다."라는 내용으로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측은 청소년회 샘은 주사파 단체가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민족문화를 가르치고 입시경쟁의 고교생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자 했던 청소년문화단체라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창립자료를 제시하면서 1993년 8월 중앙대 루이스홀에서 창립을 한 것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고교생 운동조직'이 아니라, '자주적인 삶, 공동체적인 삶, 실천하는 삶'을 청소년들과 함께 민족문화를 매개로 이루어 가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고,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등 북한 원전은 샘의 부회장인 최 이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던 책으로 실제 이 책들은 샘 사무실이 아닌 부회장의 독서실에서 발견되었으며, 학생들의 자술서에 따르면, 샘은 고교생들에게 주체사상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수입개방 반대 강연, 통일 강연회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김일성 우상화 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94년 8, 9월 「말」지를 읽고, 당시 한참 여론에 논의되었던 '김일성 조문 논쟁', '김일성 사망 원인'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토의를 한 것일 뿐인데, 학생들이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던 수사관이 "김일성 조문 논의를 했으면 그것이 '주사파' 지 뭐냐"는 식으로, 나이가 어린 고교생들에게 유도신문을 하여 허위진술을 이끌어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9월 29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샘 회장 고 등 9명을 상대로 낸 공소장에는 경찰조사 당시 문제가 되었던 '이적단체' 조항이 빠져 있어 94년 여름 총장의 주사파 발언이 계기가 된 공안정국의 여파가 청소년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샘 회원들은, 시경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강제 연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고 , 김 , 문 가 이적표현물을 소지, 집시법위반 혐의로 공판을 받고 있으며, 다수의 고등학생들은 9월 초순에서 중순 무렵 학교에서 경찰에게 조사를 받고, 일부 학교 3명의 학생은 이 일로 퇴학 조치되었다가 다시 복학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보도신청인 강

□

원고들이 부른 노래에는 김일성을
지칭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이 없음에도
「김일성 찬가를 불러 구속되었다」는
표현으로 인해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으므로 訂正報道하라

서울지방법원 1995. 5. 2.자 판결 (94가합47709)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는 1995년 5월 2일 노래패 [희망새] 단원 허 씨와 최 씨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의 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표된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원고는 조선일보가 「노래패 희망새 단원 3명이 김일성 찬가를 불러 구속됐다」며 원고들의 구속사실을 보도하자 자신들은 노래를 부른 사실조차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했다가 중재불성립되자(94서울중재103) 법원에 손해배상 등의 청구소송을 냈다.

判決文

사 건 : 94가합47709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1. 허

김해시

2. 최

부산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천정배, 이덕우, 전해철, 임종인

피 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상훈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정주교, 최승인, 장원찬, 이병선, 최광률

변론종결 : 1995. 4. 11

주 문 : 1.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조선일보의 모든 판에 별지 제1정정보도문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별지 제2정정보도문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는 판결.

이 유 :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4. 4. 17.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노래패 희망새 3명 김일성 찬가 불러 구속』이라는 제목 아래 「부산경찰청은 16일 각종 집회에서 북한과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른 노래패 [희망새] 기획부장 허 씨(26·여·경남 김해시)와 최 씨(25·여·부산시)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허씨 등은 93년 1월 김 씨(26·구속) 등과 함께 노래패를 결성한 뒤 지난 1일 부산대에서 열린 한총련집회와 9일 부산역에서 열린 우루과이라운드 국회비준 저지 시민대회 등 각종 집회에 참석, <붉은 산 검은 피>를 각색한 <아침은 빛나라> 등 북한과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혐의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위 [조선일보]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라 위 [조선일보]에 원고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기사는 피고 소속 사회부 기자 소외 양 이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와 담당수사관들과의 접촉, 구속영장의 열람 등을 통하여 얻은 자료들을 기초로 작성하여 게재한 것으로서 진실한 보도이며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어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민법 제751조 제1항 소정의 불법행위 책임으로서가 아니라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용어의 표현과는 달리 피해자가 원문보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원문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원문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진실에 부합되는 원문보도에 대하여도 정정보도청구가 인정될 수 있고, 또한 원문보도내용이 공익에 관련된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 25468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없다.

나. 가사 피고들의 위 주장이 위 기사의 작성경위가 위와 같으므로 위 기사는 진실에 부합하는 보도이니 이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그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을제1호증의 1(수사상황보고), 2내지 8(각 사진), 9(동향보고), 10(대의원대회 개최결과), 13내지 15, 18내지 20(자술서), 17(수사지휘품신), 을제2호증(보도자료), 갑제2호증의 5, 6(각 피의자신문조서), 갑제3, 4호증의 3, 4(각 피의자신문조서), 갑제5호증(공소장), 갑제6호증(판결문)의 각 기재와 영상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소위 엔·엘·피·디·알(NLPDR,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해방)론을 주장하는 [희망새]라는 노래패(후에 노래극단으로 확대 개편되었다)에 가입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과 그 수괴인 김일성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붉은 산 검은 피」라는 시집에 언급된 혁명전통에 대한 자료를 학습하고 이에 동조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원고들이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

구속되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선동용 이적노래(을제2호증)」 또는 「투쟁을 선동하는 노래(을제1호증의 17)」라는 표현만이 있을 뿐이고, 「아침은 빛나라」라는 무용서사극에 삽입된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된 것은 소외 안 1명일 뿐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갑제8호증(김 노래창작이야기), 갑제9호증(잡지기사), 갑제10호증의 2(음악무용서사극 「아침은 빛나라」대본), 3(붉은 산 검은 피)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오 이 지은 「붉은 산 검은 피」라는 시집에는 「압록 건너 만주벌에서 일어선 ○○○ 장군이여, 「이때 조선반도 구석구석 몰아치는/소문 소문들이 있었다/○○○ 장군은 축지법을 쓴다더라/두 팔을 벌리고 이 산 저 산 날고/두 다리 벌리고 산에 걸터앉는/○○○ 장군은 하늘에서 왔다더라, 「모두가 믿고 있었다/전설처럼 불리어진 이름/○○○ 장군이 있기에/아니 북풍을 타고 휘몰아쳐 온/전설 같은 소문 소문들이 있기에/조선의 독립은 멀지 않았다고/조선 빨치산이 있는 한/조선의 해방은 멀지 않았다고/삼천리 방방곡곡 일어나는 노래가 그것이었다」는 등의 김일성을 지칭·찬양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구절들이 있으나, 이를 각색한 「아침은 빛나라」라는 무용서사극은 일제시대 항일무장투쟁을 하던 공산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 등의 활동과 해방 이후 화순탄광사건을 소재로 한 점에 있어서는 「붉은 산 검은 피」와 동일하나 아직 그 대본이 미완성인 상태인데다가 「붉은 산 검은 피」에 있는 위와 같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김일성을 지칭하거나 찬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사실, 피고가 「붉은 산 검은 피」를 각색하였다고 기사화한, 「아침은 빛나라」라는 무용서사극의 주제가인 「아침은 빛나라」라는 노래는 1992. 이전에 소외 이 지가 작곡하여 발표한 곡으로서 원래는 「붉은 산 검은 피」와는 관련이 없는 곡이었으나 다만 위 「아침은 빛나라」라는 무용서사극의 주제곡으로 삽입된 노래일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반인이 보기에 다른 시국사범들과는 달리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를 불러 구속된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김일성 찬가 불러 구속』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기사화하였으므로 오히려 피고가 게재한 기사가 사실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정정보도문의 내용

다만, 원고는 별지 제2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구하나, 정정보도의 취지, 위 기사의 제목, 게재부위, 기사내용의 원고에 대한 관련정도, 정정보도

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별지 제1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별지 제1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이 하는 외에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5. 2.

재판장 판사 박 장 우
 판사 이 회 기
 판사 김 주 형

제 1 정정보도문

1. 기사형태 : 2단×7cm 크기의 박스기사
2. 게재면수 : 제1사회면(단, 아래쪽의 다섯단 광고게재 부분 제외)
3. 박스제목 : 정정보도
4. 기사제목 : 『노래패 [희망새] 김일성 찬양 사실무근』
(활자크기 16급 이상, 길이 6cm 이상)

5. 기사본문

조선일보는 1994년 4월 17일자 사회면에 『노래패 [희망새] 3명, 김일성 찬가 불러 구속』제하의 기사에서 「각종 집회에서 북한과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붉은 산 검은 피〉를 각색한 〈아침은 빛나라〉라는 노래를 부른 노래패 [희망새] 기악부장 허 씨(26·여·경남 김해시)와 최 씨(25·여·부산) 등 3명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했다」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내용 중 위 허 , 최 씨가 「아침은 빛나라」라는 노래를 부른 것은 사실이나, 위 노래는 「붉은 산 검은 피」를 각색한 노래가 아니며, 「북한과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정보도신청인

제 2 정정보도문

1. 기사형태 : 2단×7cm 크기의 박스기사
2. 게재면수 : 제1사회면(단, 아래쪽의 다섯단 광고게재 부분 제외)
3. 박스제목 : 정정보도
4. 기사제목 : 『「김일성 찬양」 사실무근』
(활자크기 16급 이상, 길이 6cm 이상)
5. 기사부제 : 노래패[희망새]명예훼손 유감
(활자크기 11급 이상, 길이 3cm 이상)
6. 기사본문

본사는 본보의 1994년 4월 17일자 사회면 『노래패 [희망새] 3명, 김일성 찬가 불러 구속』제하의 기사에서 「각종 집회에서 북한과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른 노래패 <희망새> 기악부장 허 씨(26·여·경남 김해시)와 최 씨(25·여·부산)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내용 중 「북한과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 「<붉은 산 검은 피>를 각색」이라는 부분이 사실과 달라 위 노래패 및 그 단원인 허 ; 최 씨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본사는 위 노래패가 「아침은 빛나라」라는 노래를 부른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이 북한과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거나 「붉은 산 검은 피」를 각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독자 여러분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본사는 앞으로 이러한 오해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보도에 충실할 것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신청인측의 반박을 함께 게재했으나, 기사전부에 대하여 충분한 반론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1995. 7. 5.자 결정 (95카기1885)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5년 7월 5일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가 일요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일요신문사측에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하면서 아울러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매주 금 1천만원의 비율에 의한 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일요신문사가 발행하는 주간지 「일요신문」 1995년 2월 17일자 표지 및 6면에서 9면까지 걸쳐 연기자협회의 청와대 진정서 사건에 대해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보가 발행하는 <프로듀서>가 연기자협회가 청와대에 제출한 진정서 사본을 게재하면서 당초 이 회장 명의로 제출된 진정서를 변조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자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는 진정서 변조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으로서 위 보도내용이 독자들에게 전달하여 준 적절치 않은 인상에 대하여 반박할 권리를 갖는다’고 전제한 후 ‘피신청인 소속기자가 연기자협회 이 회장과 인터뷰를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기사를 보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신청인의 반박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원 보도 중에 신청인협회 대표자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기사 전부에 대하여 충분한 반론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정정보도 인용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신청인측이 요구한 정정보도내용 중 ‘연예계 비리사건과 PD연합회는 무관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기사가 연예계 비리사건에 신청인이 연루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보도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충적 반론권은 허

용하지 않았다.

신청인측은 1995년 3월 1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신청을 제기했으나 정정보도문을 표지에 게재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 타협점을 찾지 못해 중재가 성립되지 않자(95서울중재47),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와 같은 반론보도 결정을 받았다.

한편 이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가 신청인을 상대로 맞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1996년 2월 15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천만원을, 신청인은 이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95가합26099, 95가합97978)

決定文

사 건 : 95카기1885 정정보도청구심판청구

신 청 인 :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서울

대표자 회장 김승수

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신청인 :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의 35

대표이사 심상기, 백승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황의인, 한이봉, 류광현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자의 「일요신문」지의 표지 오른쪽 중간 부분에 가로 3cm, 세로 1.3cm의 크기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28급 고딕체의 표지활자로 게재하고, 제6면 왼쪽 상단 부분에 가로 8cm, 세로 6cm의 크기로 위쪽에는 『「PD 연합회보 진정서 변조 의혹」기사에 대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18급 고딕체 활자로 2줄에 걸쳐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 신청인을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만료의 익일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주 금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일요신문」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 제3목록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약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제1항의 이행기간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매주 금5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지인 「일요신문」지 1995. 2. 17.자(제144호) 제1면 표지에 다른 기사의 표제와 함께 『연예계 비리 전 추적, 이 폭탄발언, 큰손이 빠졌다, PD연합회보 이 진정서 변조의혹, PD연합회 vs 연기자협회 전면전 조짐』이라는 표제가 게재되었고, 제6면에 『막바지 연예계 비리수사 총추적』이라는 제목 하에 『진정서 변조의혹』이라는 소제목의 기사가, 제8면에 『연기자협회 진정서 변조의혹, PD연합회보에 청와대 민원서류 원문 전제, 연예인 불륜·금전관계·연기자 생활고 언급, 이 회장 「공개된 사본은 우리가 쓴 것 아니다」 변조됐다』라는 소제목의 기사가 각 게재되었고, 제6면부터 제9면까지 사이에 「지난 1월 28일자로 발행된 프로듀서연합회보 <프로듀서>가 ‘연예계 비리 사건의 제보자가 연기자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이 씨’라고 주장하면서 프로듀서연합회와 연기자협회는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었다. 한편 이를 바라보는 방송관계자들은 <골리앗>과 <다윗>, <범>과 <하룻강아지>, <편의점>과 <구멍가게>로 표현하면서 최후의 승자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자로 발행된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보<프로듀서>에 게재된, 연기자협회의 청와대 투서가 변조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회장이 밝힌 것으로 이 회장은 전제된 사본에 대해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확인했다. … ‘본질 왜곡하는 연기자협회의 청와대 투서’라고 명명되어 <프로듀서> 9면에 전제된 이 공문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는 방송국 직원들의 생활상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다수 연기자들을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을 비회원들의 출연으로 인해 회원 뿐만 아니라 방송계 전체까지 <불협화음>을 내게 되었고 ‘이런 외인부대 같은 연기자들은 매니저라는 돈의 힘으로 밀고 있는 그들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중간부분에는 ※의 부언을 통해 ‘신인들의 NG로 인한 시간외 수당의 증가’ ‘불륜의 관계’ ‘금전관계’ 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게재되었고, 제6면과 제7면에서 이 연기자협회장과 의 인터뷰 기사를 실으면서 「…먼저 그에게 PD연합회 회보에 실린 진정서 사본을 내밀었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닌데…」 몇 번을 되풀이해 읽어본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PD연합회쪽에서 조작했다는 얘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내용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걸 내가 쓴 것과는 차이가 있다.’ -진정서 문안은 누가 작성했나. ‘... 집행부가 작성한 걸 내 이름으로 제출한 것이다.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진다.’」라는 기사가 각 게재된 사실, 신청인 연합회는 방송사 프로듀서협회의 회원과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방송사 및 비방송사의 프로듀서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이 위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1), (3), (4)항 정정보도문은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하지 아니하였던 내용으로서 이 부분 신청은 중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동일한 사건의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통하여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법원에 정정보도심판청구를 하면서 구하는 정정보도내용이 동일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추가, 보완, 또는 삭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 (1) 위 보도내용 중 『PD연합회보 이 진정서 변조의혹, 진정서 변조의혹, 연기자협회 진정서 변조의혹, PD연합회보에 청와대 민원서류 원문 전제, 이 회장 「공개된 사본은 우리가 쓴 것 아니다」 변조됐다』라는 표제 및 소재목 부분 「지난 1월 28일자 발행된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보 <프로듀서>에 게재된, 연기자협회의 청와대 투서가 변조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회장이 밝힌 것으로 이 회장은 전제된 사본에 대해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확인했다.」라는 본문 부분, 위 이 연기자협회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실으면서 「...먼저 그에게 PD연합회 회보에 실린 진정서 사본을 내밀었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데...’ 몇 번을 되풀이해 읽어본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PD연합회쪽에서 조작했다는 얘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내용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걸 내가 쓴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본문 부분이 각 게재, 공표됨으로써 신청인이 마치 위 이의 진정서를 변조하여 위 「프로듀서」에 게재한 것 같은 왜곡된 인상을 독자들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 위 보도내용이 독자들에게 전달하여 준 적절치 않은 인상에 대하여 반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이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PD연합회보에 실린 진정서의 내용이 위 이가 쓴 것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후 게재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주

장하는 정정보도문은 명백히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미 신청인 대표자의 반박내용을 위 기사에 게재하여 신청인에게 반박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율제1호중의 1, 2의 각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 소속 기자가 위 이 와 인터뷰를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위 기사를 보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신청인이 위 진정서를 변조한 바 없다는 신청인의 반박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소갑제1호중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위 보도기사 중 제8면에 「이에 대해 프로듀서연합회의 김 PD는 '공보처 장관 명의로 KBS사장에게 보내졌고 이를 최 부주간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며, '그렇다면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한 서류를 공개하라' 고 요구하고 있다」고 신청인의 대표자인 김 의 발언내용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앞서의 기사 전부에 대하여 충분한 반론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충분한 반론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3)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는 위 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반론으로서 별지 제1목록 기재 반론문의 내용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신청인은, 위 보도기사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 중 (1), (3)내지 (6)항과 같은 정정보도문도 게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 중 (1), (5), (6)항에 관하여는, 위 보도 내용 중 연예계비리에 관한 부분은 주로 방송국 직원 또는 불특정 프로듀서에 관한 내용으로서, 신청인이 직접 지명된 바 없고 또한 연예계비리사건이 신청인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인상을 독자들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바, 단체와 구성원간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원에 대한 사실적 보도로 인하여 그 단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프로듀서 개인에 관한 보도로 인하여 프로듀서들을 회원으로 하는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에 관한 정정보도청구는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유없다.

그리고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 중 (3)항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자정노력을 도외시한 채 신청인이나 그 소속 PD들이 마치 연예계 비리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하여 방어적 반론권 내지 보충적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기사가 연예계 비리사건에 신청인이 연루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보도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충적 반론권은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구하는 위 정정보도문은 신청인의 자정 노력 등에 관한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정정

보도청구는 이유없다.

또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 중 (4)항에 관하여 보건대,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기사는 그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비평, 논평 등 의사 표현 내지 가치판단의 사항에 대한 정정보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위 기사는 신청인과 연기자협회의 사회적 영향력에 관한 주관적 가치평가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논평의 당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의 이 부분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다.

3. 정정보도문의 크기

신청인은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는 바, 위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부분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 수 등을 종합하면, 표지의 제목은 가로 3cm, 세로 1.3cm의 크기로, 정정보도문은 가로 8cm, 세로 6cm의 크기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부분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간접강제신청부분에 관하여는 주문 제1항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5.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김 재 형
판사 신 광 렬

〈별지 제1목록〉 「PD연합회보 진정서 변조의혹」 기사에 대한 반론문

지난 1995. 2. 19.자(제144호) 「일요신문」의 표지 및 제 6, 7, 8면에 『PD연합회보 이덕화 진정서 변조의혹』 등의 제하로, 「지난 1월 28일자로 발행된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보 <프로듀서>에 게재된, 연기자협회의 청와대 투서가 변조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회장이 밝힌 것으로 이 회장은 전제된 사본에 대해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확인했다」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러나,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는 위 이 명의의 청와대 제출 진정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으며, 위 「프로듀서」 제67호에 실린 이 명의의 진정서는 이 가 1994년 말경 청와대에 제출

한 진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정정보도신청인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별지 제2목록〉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

가. 정정보도문

연예계 비리, PD연합회와 관련없다.

PD연합회보, 이 진정서 변조없다.

이 , PD연합회보에 실린 청와대 진정서 변조사실 없다는 사실확인

정정보도신청인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나. 정정보도문

대제목 : 연예계 비리, PD연합회와 관련없음이 밝혀져

중제목 : 이 의 진정서를 변조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

PD연합회, 이 진정서 조작한 사실이 없다.

소제목 : PD연합회, 연기자협회를 지배하거나 무시한 적 없다.

본 문 : 본지 제144호(1995. 2. 19.자) 제6면에서 제9면은 『막바지 연예계 비리수사 총 추적』 제하로 『진정서 변조의혹』, 『연기자협회 진정서 변조의혹』, 『PD연합회보에 청와대 민원서류 원문전재, 연예인 불륜, 금전관계, 연기자생활고 언급』, 이 회장 『공개된 사본은 우리가 쓴 것이 아니다』, 『변조됐다』라는 제목 하에 「지난 1월 28일자로 발행된 프로듀서연합회보 <프로듀서>가 ‘연예계 비리 사건의 제보자가 연기자협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이 씨’ 라고 주장하면서 프로듀서연합회와 연기자협회는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었다. …한편 이를 바라보는 방송 관계자들은 <골리앗>과 <다윗>, <범>과 <하룻강아지>, <편의점>과 <구멍가게>로 표현하면서 최후의 승자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자로 발행된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보 <프로듀서>에 게재된 연기자협회의 청와대 투서가 변조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질 왜곡한 연기자협회의 청와대 투서’ 라고 명명되어 <프로듀서> 9면에 전재된 이 공문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는 방송국 직원들의 생활상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다수 연기자들을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은 비회원들의 출연으로 인해 회원뿐만 아니라 방송계 전체까지 <불협화음>을 내게 되었고 ‘이런 외인부대 같은 연기자들은 매니저라는 돈의 힘으로 밀고 있는 그들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 고 말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르고 아래의 사실들이 진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1) 지난 연초에 발생한 이른바 「연예계 비리 사건」은 PD연합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PD연합회보인 「프로듀서」 제67호(1995. 1. 28.자)에 실린 연기자협회 회장 이명익의 청와대 제출 진정서는 변조된 사실이 없고 이가 1994년 12월 청와대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게재한 것이다.

(3) PD연합회는 금년초 이른바 「연예계 비리사건」이 보도된 직후부터 소속 회원 중 일부 PD의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분노와 자성의 뜻을 표하면서 위 사건을 계기로 보다 질 좋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작으로 국민들의 영상문화를 고양시키는데 진력하며 연예계 비리를 낳게 할 수도 있는 제작환경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4) PD연합회와 연기자협회의 관계를 「골리앗」과 「다윗」, 「범」과 「하룻강아지」 등으로 표현하며 마치 PD연합회가 연기자협회에 대하여 또는 프로듀서가 연기자에 대하여 절대적인 힘의 우위에 있고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는 것과 다르다.

(5) 또한 연기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린 반면 프로듀서들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

(6) 연기자협회 이회장이 청와대에 제출한 진정서에 담긴 연예인 불륜, 금전관계에 대한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정정보도신청인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별지 제3목록〉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요신문」 제1면 표지의 우측 최상단부분에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18센티미터의 크기로, 4각 외 각은 두께 5밀리미터의 크기로 검은색 테를 그리고,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 활자로, 정정보도내용은 그 아래에 70급 명조체 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이름은 그 아래에 50급 고딕체 활자로 각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일요신문」 제6면의 좌측 최상단부분에 별지 제2목록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 활자로, 대제목은 검은색 바탕에 흰글씨인 상태로 하여 100급 명조체 활자로, 중제목은 70급 명조체 활자로, 소제목은 50급 명조체 활자로, 본문은 13급 명조체 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이름은 50급 고딕체 활자로 각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를 10일간에 걸쳐
상당한 분량으로 반복 보도하였으므로
신청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론보도 횟수는
그 보도한 횟수와 동일하게 정함이 상당하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5. 7. 14.자 판결 (95카합125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5. 8. 1.자 결정 (95카기60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5. 8. 4.자 결정 (95타기2543)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1995년 7월 14일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장 박 씨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판결에서 『신청인은 장기기증운동본부의 본부장이므로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일간신문 국민일보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신청인은 1995. 3. 20. 국민일보 제1면에 위 운동본부가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수혜자들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기사를 상당한 분량으로 게재한 이후 10여 명에 이르는 기증자 및 수혜자의 진술을 토대로 같은 해 4. 1.까지 10일간에 걸쳐 연이어 또는 격일 간격으로 거의 유사한 내용을 발표기사나 그와 관련된 설명을 덧붙인 보도 또는 사설 등의 형식으로 한 면이나 두 면에 걸쳐 계속하여 상당한 분량으로 반복 보도한 사실, 보건복지부가 위 보도 이후인 1995. 3. 21.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장기기증운동본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3개 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1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2개 사항에 대하여 경고를 하였는데,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위 각 보도에 나타난 비리부분에 대하여는 기증자 1인에게 보로금 85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점 이외 달리 지적사항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서 그 횡수는 그 보도한 횡수와 동일하게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히면서 제1의 반론문부터 제10반론문까지 전체 13개 반론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일보는 1995년 3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臟器기증, 非理 진실 밝혀 '승고한 사업' 활성화 해야』, 『기증·수혜자 상대 '회유공작』 등의 제목의 기사들에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장기이식 수술을 주선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보로금을 가로채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다(95서울중재63).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100여 명의 장기기증자와 수혜자를 직접 취재한 결과를 토대로 한 진실된 보도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정정보도게재 판결 후, 피신청인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신청인은 당해 재판부에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를 신청했으며, 피신청인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담당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전체 13개 정정보도문 중 4개 반론문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신청인의 간접강제신청에 대해서는 위 4개 반론문을 제외한 9개 반론문에 대해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진행 중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화해제의를 받아들이고 본 소송을 취하였다.

判決文

사 건 : 95카합1256 정정보도게재

신청인 : 박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신청인 : 주식회사 국민일보사

서울 마포구 신수동 371의 16

대표이사 이견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부

변론종결 : 1995. 7.14.

술을 받았다. 김(金)씨의 수술을 지켜본 병원관계자는 「김씨가 장기본부에 최소 1천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기본부는 또 수혜자로부터 「기증자의 보약과 휴식기금으로 주겠다며」 받은 보로금 1백20만원도 상당수 기증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중략) 본사 취재진이 지금까지 장기본부에 신장을 기증한 70여 명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보로금을 받지 못했으며 대신 장기본부에서 만들어준 감사패나 금10돈짜리 행운의 열쇠(50만원 상당)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장기기증본부는 그러나 수혜자로부터 거둬들인 거액의 후원금과 가로챈 보로금의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동환(李東煥) 의정국장은 20일「복지부 등록재단법인인 장기본부가 수혜자로부터 기증자 수술비와 검사비용 외에 별도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운동본부 설립취지에 어긋난다」며 「더욱이 기증자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수혜자로부터 돈을 받아 중간에서 가로챘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또, 같은 신문 같은 일자 같은 면 왼쪽 상단에 적시된 후원금·보로금의 도표 옆부분에 『본부측은 임의로 수혜자에게 후원금을 요구하고 기증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하며 받은 보로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2) 위 제1.가의 (1)항과 같은 신문 같은 일자 제22면 기사란 중 우측 상단부분에 “사랑의 장기(臟器)로 ‘돈벌이’ 라는 큰 제목 하에 “보로금으로…”라는 중제목과 “수혜자에 내 부규정(規定) 보이며 ‘내라’ 요구, 기증자에게 거의 전달안하고 가로채” 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기증자가 돈이나 기타 보상을 전혀 바라지 않는 「순수한 심성의 소유자들」 이라는 점과 기증자와 수혜자가 서로 만나서는 안된다는 불문율을 교묘히 이용해 보로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왔다. (중략) 장기본부는 수혜자로부터 보로금 1백20만원(93년까지는 90만원)을 일률적으로 받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 돈을 받아야 할 기증자에게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달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장기본부는 보로금으로 감사패와 금10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상당수의 기증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93년 1월 신장을 기증한 이 씨(40·가명)는 「수술 후 장기본부로부터 감사패만 하나 달랑 받았다.」며 「보로금이라는게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93년 2월 장기본부에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신장을 받아 딸의 이식수술을 마친 김 씨(여)도 보로금을 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김(金)씨는 「딸이 신장을 이식 받을 때 분명히 보로금을 냈으나 내가 신장기증자

가 되었을 때는 보로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고 감사패만 받았다。」고 말했다. (중략) 92년 2월 신장을 기증한 김

씨(32·여·가명)는 수혜자의 직장동료들이 모은 성금 1백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로금을 받지 못했다. 장기본부는 김씨에게 「이미 기증자측 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았으니 보로금을 줄 수 없다.」며 전해주지 않았다. 92년 10월 신장을 기증한 한

씨(45·여·가명)는 「보로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장기본부가 감사패 제작비를 내라고 권유해 10만원을 냈다.」고 말했다. 한(韓)씨도 「기증자들이 모두 그렇게 제작비를 내는 것으로 알았다.」며 「보로금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어이없어 했다. 장기본부는 그러나 내부사정을 잘 아는 기증자나 뒤늦게 보로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분개해 강력히 항의하는 기증자에게는 뒤늦게 보로금을 전달했다. 93년 신장을 기증한 황

씨(45·여·가명)는 수술 후 보로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장기본부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끝에 결국 보로금을 받아냈다. 장기본부가 「달라고 조르는 이들에게만 주겠다」는 식으로 보로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또, 같은 신문 같은 일자 같은 면 같은 부분에 “후원금으로...” 라는 중제목과 “정부(政府)보조금 등 불구하고 수혜자에게도 받아 유명인사(人士) 기증 경우엔 「홍보」 노려 ‘무료’”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소문으로만 나돌던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각종 비리가 표면화됨에 따라 장기본부는 그 동안 수많은 생명을 구한 「선행」에도 불구하고 기증자가 순수한 뜻으로 내놓은 장기로 돈벌이를 해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장기본부는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반면 생사의 기로에 선 채 장기를 필요로 하는 수혜자가 많은 현실적인 상황을 이용, 대소 후원금을 받아온 것이다. 순수생명운동단체임을 표방하는 장기본부는 2천여 명의 일반후원자들이 매달 5천~1만원씩 내는 후원금을 받는 한편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보조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측은 수혜자들에게 「장기본부의 운영이 어렵다」며 사례금조로 별도의 후원금을 낼 것을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본부는 조직검사 등을 통해 수혜자가 결정되면 자체적으로 책정한 기증자검사비용(조직검사비 96만원, 건강관리기금 80만원,보로금 1백20만원) 용지에 후원금 항목을 끼워 넣어 수혜자가 이 돈을 내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 93년 신장이식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8백만원의 후원금을 낸 강영숙(姜榮淑) 씨(여)는 「기본적으로 장기본부에 내야하는 기증자 검사비용 항목에 후원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수혜자들이 수술 전 이 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강(姜)씨는 그해 11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연말정산을 위해 장기본부에 후원금 영수증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때문에 장기본부가 후원금을 정식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1천만원의 후원금을 내고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박 씨는 「수술대기자 중 최우선순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0월 장기본부와 연락을 취한 김 씨도 단 1주일만에 신장이식수술을 받아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주변에서는 「김(金)씨가 최소한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냈을 것」이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떠돌고 있다. 김(金)씨는 자신이 낸 후원금 액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수술대기자 순위는 중요하지 않고 돈만 있으면 언제나 신장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들과는 달리 수혜를 위해 몇년째 기다리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기(長期) 대기자들은 「언제 차례가 돌아올지 모른 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93년 5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최 씨(36·여·가명)는 남편이 막노동을 하는 등 생활이 어려웠지만 수술 전 후원금을 내기로 약속하고 그해 10월 계를 탄 뒤 이 돈을 납부하기도 했다. 장기본부는 또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이식받은 수혜자의 경우 병원까지 찾아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3년 8월과 94년 8월 각각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은 김 씨(27·가명)와 서 군(18·가명)은 병원에서 장기본부에 2백만원씩의 후원금을 냈다. 장기본부는 그러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장기를 기증했을 경우 「홍보효과」를 노려 일절 금품을 받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수혜자로부터 받는 각종 비용은 물론 후원금에 대해 말도 꺼내지 않고 무상으로 「혜택」을 준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기택(李基澤)민주당총재 부인 이 여사가 신장을 기증한 뒤 수혜자로 선정된 이(李)모 씨(48·여)는 장기본부측에 일체의 돈을 내지 않고도 이식수술을 마쳤다.』

나. (1) 국민일보 1995. 3. 21.자 제1면 우측 상단부분에 「“보로금 못받았다” 폭로 잇달아」라는 큰제목 하에 그 아랫부분에 “기증자들 「장기(臟器)본부」 비리(非理) 의혹 확산”이라는 중제목, 기사 우측 상단에 “박(朴)본부장 해명은 거짓” 분노”라는 중제목과 기증 수혜 모녀회견(母女會見) “5백만원만 내고 감사패만 받아” 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장기기증운동본부측이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로금과 관련, 이를 받지 않았다는 새로운 기증자들의 폭로가 20, 21일 곳곳에서 잇달아 장기본부의 비리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중략) 94년 신장을 기증한 김(金)모 씨(40)는 「수술 뒤 감사패와 행운의 열쇠 외엔 받은 것이 없다」고 박(朴)본부장의 발언내용을 부인했다. 그는 「장기본부측에서 교통비라며 10여 만원을 줬으나 순수한 뜻으로 장기를 기증했기 때문에 이 조차도 받지 않았다」면서 「장기기증으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외에는 사인을 해 준 영수증같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날 본사취재팀이 확인한 다른 4명의 기증자 및 관계자들도 모두 「보로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보로금이라는 것이 있는지

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박(朴) (47) 김(金) (22) 씨 모녀는 이날 밤 본사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보로금은 받지 못했으며 감사패만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박(朴)씨는 딸 김(金)씨가 빨리 수술을 받게 하기 위해 93년 2월 장기본부를 통해 자신의 신장을 제3자에게 기증했고 딸은 장기본부를 통해 신장을 기증받았다. 박(朴)씨는 「딸의 수술비(8백만원) 외에 기증자에게 일어날지도 모를 후유증에 대비한다는 명목(보로금을 의미)으로 90만원과 후원금 50만원 등 모두 5백10만원 정도를 별도로 냈다.」면서 그러나 내가 신장을 기증한 뒤에는 감사패만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박(朴)씨는 이어 장기본부가 기증자와 수혜자가 수술 후 겪을 수 있는 후유증과 재수술 등에 관한 모든 재량권을 갖고 있어 수혜자가 불만을 쉽게 토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딸의 목숨을 되살린 사실이 너무 고마워 보로금 등 돈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기자와 만난 이(李) (48·여·93년 8월 수술)는 「신장을 기증한 뒤 감사패와 행운의 열쇠만 받았고 보로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다만 나중에 장기본부에서 알아서 쓰라며 30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93년 1월 수술한 주(朱) (41·여)도 「감사패, 행운의 열쇠만을 받았고 기증자가 받을 수 있는 보로금이 있다는 사실은 오늘(20일)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또, 같은 신문 같은 일자 같은 면 같은 부분에 “검찰 내사(內査)착수” 라는 중제목 하에 “복지부 특감(特監)… 유용 드러나면 고발(告發)” 이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검찰은 21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장 박(朴) (47) 김(金) (22) 씨 모녀」가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보로금과 거액의 사례비를 받아 가로챘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 정밀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은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특별감사와 별도로 이 단체의 비리여부에 대한 방증수집과 법률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감사결과 비리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대검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시키겠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힘에 따라 고발 즉시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장기를 받은 환자가 기증자에 대한 보로금 명목으로 낸 돈을 박(朴)본부장 등이 기증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후원금을 강요한 뒤 개인 용도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게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것을 검토 중이다.』 연이어 위 기사의 아래부분에 ‘관련법(法) 제정키로’ 라는 소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감사관실 직원 5명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 (중략) 정부가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지원하는 연간 6천2백만원의 사용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감사결과 후원금이나 보로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이 법인체

씨 등이 공동 집필한 「한국헌혈운동사」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단체의 재정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박(朴)본부장이 벌인 행적들이 오히려 우리 나라 헌혈운동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다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박(朴)본부장이 개별적으로 교섭을 해 헌혈자를 확보했기 때문에 실제 헌혈자 수와 혈액원에 기록된 헌혈자 수가 달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가 혈액기증자들을 혈액원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알선료를 받거나 일부 헌혈자의 혈액을 팔아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략) 헌혈자들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또다시 물의를 일으켰다. 「헌혈증서를 불우한 환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는 이유를 들어 헌혈을 한 당사자에게는 증서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朴)본부장이 지급하지 않은 증서를 모아 현금으로 바꿔 착복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보사부는 헌혈자에게는 반드시 증서를 교부하도록 명시한 혈액관리법령을 들어 이를 중지시켰다. 84년 5월 19일, 그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그의 관련된 구설수도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다. (중략) 그러나 수혜자들로부터 장기이식수술을 받는 대가로 후원금을 요구했으며 수혜자들로부터 장기수술치료비와 별도로 기증자에게 지급하는 보로금을 받아 이를 중간에서 착복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일보 취재팀의 취재결과 이는 사실로 드러났고 마침내 보건복지부의 특감과 검찰의 내사로 이어지고 있다. (중략) 그의 약력은 홍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남는 의문은 결국 하나로 집결되고 만다. 박 , 그는 진정 누구인가.』

(2) 1. 위의 (1)항과 같은 면 중간 부분에 “「장기본부」 어떻게 운영되나” 라는 사이 제목 하에 “정부(政府)보조·후원금 사용내역 ‘베일’”, “박(朴)씨 91년 설립… 절대적 권한” 이라는 중제목을 붙이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생략). 이에 따라 장기본부도 서울 이외에 8개 지역본부를 둘 만큼 규모가 커졌으나 운영실태가 공개리에 제대로 밝혀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중략) 그러나 이는 법인체로서의 형식적인 모양새를 갖춘 것일 뿐 실제로는 창립 때부터 박 본부장의 절대적인 권한에 의해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장기본부의 각종 업무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장기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체임에도 불구하고 수혜자들이 낸 후원금과 복지부로부터 매년 6천2백만원씩 받는 보조금이 쓰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 (중략) 현재 장기본부를 통해 연결된 수혜자는 자신과 기증자 수술비용을 제외하고도 장기본부에 기증자 검사비용 명목으로 2백96만원의 기본경비와 기증자에게 제공되는 40~70만원의 교통비를 이식받기 전에 의무적으로 내고 있다. 또 장기본부가 수술받기 전 수혜자에게 제시하는 「기증자 검사비용」에는 후원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금융기관 계좌번호도 명시돼 있다.』

라. (1) 국민일보 1995. 3. 24.자 제22면 좌측 상단부분에 「“후원금 못낸다”하자 “수술 못함” 통보」라는 제목 하에 기사 중간부분에 ‘어느 수혜자의 증언(證言)’, ‘장기본부 이렇게 했다’, 나중 다시 불러 「이식」 후 ‘2백만원 내라’”, “뇌사자 가족에 전달않고 영수증 안 줘”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후원금과 보로금에 이어 뇌사자의 장례비용까지도…,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생체이식과 더불어 추진하고 있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수술. (중략) 생명을 되살리는 숭고한 「작업」에 부당한 돈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개입된 것이다. 94년 12월 22일 서울 강동 성심병원에서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아 수술한 김 씨(44·대구). (중략) 영세민보호1종으로 신장병을 앓아오던 김씨가 도움을 받기위해 장기본부의 문을 두드린 것은 94년 11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서울의 장기본부를 찾은 김씨는 장기본부가 제시한 검사비 80만원, 보로금 1백20만원 등 3백여 만원의 수술비 내역을 설명받았다. 장기본부 관계자는 이어 「후원금으로 3백만원을 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김씨는 「후원금으로 낼 돈이 없다」고 말했다. 며칠 뒤 장기본부는 「신장기증을 하려했던 사람의 부인이 기증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술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 (중략) 그러나 김씨는 12월 21일 갑자기 장기본부 이(李)모 간사로부터 서울에 와서 수술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급히 상경한 김(金)씨는 다음날인 22일 누구인지도 모르는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아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 병실에 누워 몸조리를 하는 김씨에게 장기본부 직원 김(金)모 씨가 찾아왔다. 기증한 뇌사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던 김(金)씨는 먼저 「뇌사자 장례비를 내가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본부 직원 김씨는 「우리가 다 해결했으니 장기본부에 2백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중략) 보조금을 전달하는 조출한 자리에 본부직원 김(金)씨도 나타났다. 그는 부친 김(金)씨를 바로 건물화장실로 불러 2백만원을 받은 뒤 그 자리를 떴다. 부친 김(金)씨는 「장례비라면 뇌사자 가족에게 전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했다」면서 「돈을 받아 가는 명목도 불확실했고 당시 영수증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중략) 서울대 장기이식 프로그램 관계자는 「94년 2월 장기본부를 통한 뇌사자 장기이식 수술뒤 장기본부직원이 찾아와 조화비와 장례비 등 50여 만원이 들었다며 병원측에 2백여 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2) 위 1. 라.의 (1)항과 같은 일자 제23면 우측 상단 부분에 “수혜자에 「뇌사자 장례비」도 거뒀다”라는 제목 하에 “장기(臟器)기증본부 병원비에 포함 불구 별도로 요구”라는 중제목과 「50대(代) 어머니 “딸의 신장 수술 뒤 2백만원 줬다”」, 「병원측 “장기본부 뇌사자 소개 뒤 돈 요구했다”」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장 박 []가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이식받은 수혜자에게서도 뇌사자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24일 드러났다. (중략) 장기본부는 수혜자 측이 병원에 장례비용을 지불한 것과는 별도로 또다시 비용을 요구해 왔다. 94년 12월 서울강동성심병원에서 뇌사자의 신장을 이식받은 김 [] 씨(44)는 수술비 3백80만원 외에 장기본부 직원 김모 씨의 요구에 따라 2백만원을 줬다. (중략) 서울대병원 장기이식 프로그램 담당자 이모 씨(35·여)는 「장기본부가 뇌사자를 병원에 소개시켜준 뒤 항상 돈을 요구해 병원측과 자주 다투었다며 91년 2월에는 병원측이 수혜자에게 장기본부에 돈을 내지 말라고 설득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마. (1) 국민일보 1995. 3. 25. 자 제23면 우측 상단부분에 “장기臟器기증비리(非理) 진 실향혀 「송고한 사업」 활성화해야」 라는 제목 하에 ‘골수 은행(銀行) 회장 옥 [] 목사 본지 인터뷰’ 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생략) 93년 12월부터 골수은행 회장을 맡고 있는 옥(玉)목사는 장기본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간 6천2백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것과 수혜자로부터 「보로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밝혔다. 옥(玉)목사는 「이전에는 박(朴)본부장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박본부장이 현혈관계 일을 하면서 현혈증서를 착복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중략) 옥(玉)목사는 22일 보도된 박본부장의 개인 신상에 관한 기사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며 「사실이나」고 되물으며 제차 확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2) 위 1. 마의 (1)항과 같은 면에 기증·수혜자 상대 “회유공작” 이라는 사이 제목 하에 「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에 유리한 증언(證言)요구” 전화(電話) 공세」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장 박 []가 지난 20일 본지에 비리관련 기사가 게재된 이후 기증자와 수혜자들을 필사적으로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이후 본사에 전화를 하거나 기자와 직접 만난 기증자와 수혜자들의 증언에 의해 확인됐다. 장기본부 박(朴)본부장 등 핵심 간부들은 보로금을 받지 못한 기증자들과 장기본부의 강요에 의해 후원금을 낸 수혜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장기본부에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중략) 장기본부는 21일 보건복지부 감사가 시작된 뒤에도 이같은 회유 설득작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장기본부가 의도적으로 비리를 감추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바. 국민일보 1995. 3. 27. 제23면 우측 상단부분에 「“돈 미리 내면 「이식」 바로 주선 2천만원 선불(先拂)강요」라는 대제목 하에 “박 [] 씨, 수혜자에 직접 요구”, 「“스

한 김 씨(45·여·가명·본보 27일자보도)는 27일밤 본사에 전화를 걸어 「박 본부장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국민일보 기자를 정말 만났느냐’고 묻는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2) 위 1. 사의 (1)항과 같은 일자 제22면 좌측 상단부분에 “검찰 「장기(臟器)비리」 수사 나서라 각계(各界) 목소리”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장 박 」와 관련한 비리의혹이 사직당국에 의해 규명되고 장기기증운동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계 학계 법조계 의료계 등 각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장기본부 비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충격을 표시했다. 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공신력을 갖춘 순수한 장기기증운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서울대교수(48·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 소장)는 「장기기증에 있어 금품수수, 특히 수혜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일은 윤리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 (중략) 「장기본부에 대한 신부전증환자들의 불평이 많아 몇 차례 주의를 촉구했으며 각종 성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장기기증과 관련한 비리의혹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인 목사(50·갈릴리교회)는 「신체 일부를 주고 받는 장기기증은 그 자체가 성스러운 사랑의 실천이니 만큼 금전적인 면에서 단 한치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중략) 김 변호사(55·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는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자원봉사인 장기기증 과정에서 금전수수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장기를 매매한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 당장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명 전남대교수(62·전국기독교수협의회회장)는 「장기기증과 관련해 정말로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면 이는 생명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검찰이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장기기증운동이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서울대교수(43·사회복지학)는 「장기기증이 깨끗한 도덕적 종교적 운동이므로 박 본부장은 기증자 등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면서 「장기본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보조받는 단체이므로 보건복지부나 검찰은 엄격한 감사와 수사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한양대 신장이식인회장(46)은 「장기기증운동이 올바르게 이뤄지려면 무엇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해야 한다. 이 운동이 어느 한 사람의 명예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한이식인연합회장(82년 신장이식)도 「장기본부비리의혹은 기증자나 수혜자에게 커다란 배신감을 안겨줬다. 장기본부는 이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 국민일보 1995. 3. 30자 제1면 우측 상단부분에 “「장기(臟器)나눔 기구」 연내 발족”

이라는 큰 제목 아래 “민간(民間)주도 부작용 방지책 기증 - 수혜자 연결 전산망(電算網) 설치”라는 소제목에 붙이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생략) 보건복지부는 30일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매매나 순위조작 등의 부작용을 막고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장기공여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가 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장기공여관리기구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략) 그러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는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에는 설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차. 국민일보 1995. 3. 31.자 제3면 사설란에는 “「장기(臟器)비리」 검찰이 나서라”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사설이 게재되었다.

『(생략) 이러한 숭고한 과정에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 혹은 저속한 명예욕 등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것은 나눔 본래의 인간애를 상처내는 악덕으로 단정해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 금전이 개재되어 상거래의 형식까지 취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반사회적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어떤 형태로든지 생명체를 상품화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사랑의 실천」이란 미명 아래 특정인의 사욕을 채우는 일은 일종의 기만행위에 속한다.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이같이 우려할 만한 현상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본지가 최근 중점 보도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비리는 장기기증이란 「사랑의 실천운동」이 영리적 차원에서 운영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비리의 내막은 수혜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아냈다는 사실이 초점이다. 장기본부측은 후원금을 강요한 바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제보는 속속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선불을 강요한 경우까지도 있었다고 한다. (중략) 이같은 비리의 의혹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정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차. 국민일보 1995. 4. 1.자 제22면 우측 상단 부분에 공여 이식 종합적 관리 급선무라는 큰 제목 아래 “장기기증운동 이렇게”이라는 중제목 아래 “체계없어 「매매」 등 부작용 많아”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중략) 국내에서는 현재 장기공여 및 이식이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와 일부 병원에서 체계없이 이루어져 효율적인 장기이식을 기대할 수 없고 장기 매매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2. 가. 위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장기기증운동본부의 본부장으로서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일간신문인 국민일보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에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

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반론문의 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실적으로 사회나 개인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언론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보도내용에 대하여 반론 내지 반박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그 보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서로 충돌하는 관계에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상충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므로 반론내용의 적정 여부는 위 각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화시키는 것인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1991. 11. 8. 장기 기증운동, 국민 서로간의 새생명 나눔의 사랑, 실천운동을 통하여 국민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장기 이식 필요자의 실태조사, 살아서 신장을 기증토록하는 사업, 심장 등 이식 가능한 장기기증에 대한 이해촉진사업 등을 수행하여 온 사실, 장기기증은 자신의 생명의 일부분을 아무런 보상없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장기기증운동을 수행한 결과 1995. 3. 20.까지 장기를 이식받은 수혜자가 168명에 이른 사실, 피신청인은 1995. 3. 20. 국민일보 제1면에 위 운동본부가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수혜자들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기사를 머릿기사로 상당한 분량으로 게재한 이후 10여 명에 이르는 기증자 및 수혜자의 진술을 토대로 같은 해 4. 1.까지 10일간에 걸쳐 연이어 또는 격일 간격으로 거의 유사한 내용을 발표기사나 그와 관련된 설명을 덧붙인 보도 또는 사설 등의 형식으로 한 면이나 두 면에 걸쳐 계속하여 상당한 분량으로 반복 보도한 사실, 보건복지부가 위 보도 이후인 1995. 3. 21.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장기기증운동본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3개 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1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2개 사항에 대하여 경고를 하였는데,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위 각 보도에 나타난 비리 부분에 대하여는 기증자 1인에게 보로금 85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점 이외 달리 지적사항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사 중 신청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서 그 횟수는 그 보도한 횟수와 동일하게 하면서 별지 제1 내지10 반론문의 내용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다만 신청인은 ① 별지 제3의 1 기재 정정보도문 제3,7항의 내용, ② 별지 제3의 2 기재 정정보도문 제1 내지 5항의 내용, ③ 별지 제5 기재 정정보도문 제2항의 내용 및 ④ 별지 제7의 1 기재 정정보도문 제1 내지 5항의 내용도 정정보도문으로 게재하여 달라고 구하나 ①②③항의 정정보도청구내용은 그 분량적인 면에서나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위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아주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

을 뿐이어서 반론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고, ④항의 정정보도청구내용은 그 대상이 사실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보도에 해당하여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모두 신청인의 반론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보도내용에 대하여 반론 내지 반박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반론 내지 반박은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는 것인데 신청인은 원문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다는 취지와 그와 같은 허위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위법한 내용을 포함시킨 별지 제11목록 기재의 반론문을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보도된 기사에 대한 본인의 사실주장을 담은 내용과 함께 이를 보충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반론문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법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신청인은 별지 정정보도문 게재방법표 기재 방법으로 별지 제1 내지 10 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구하나, 위 기사들의 제목, 각 게재 면의 위치 및 부위, 제목 및 본문 활자의 크기, 전체 기사의 내용, 반론문의 글자수 등을 고려하면 별지 제1 내지 10 목록 기재의 반론문은 별지 반론문게재방법표에 따라 같은 표 제2항의 위치에, 같은 표 제3항 크기로 하되 가로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50급 명조체활자로 게재하고, 별지 제1 내지 10 반론문 목록 기재의 각 소제목은 따로 붙여 정하는 외에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으로 제목을 따로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이고 그 중제목의 활자는 38급 명조체활자로, 반론문 내용 및 반론신청인 성명은 10급 명조체 본문활자로 함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신청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14.

재판장 판사 손 용 근
 판사 박 익 수
 판사 윤 현 주

반론문게재방법표

순위	(1) 반론문목록	(2) 위치	(3) 크기	(4) 방법
1	제1의 1 반론문	제1면 우측 상단부분	가로 18cm, 세로 3단	이 사건 판결송달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국민일보
	제1의 2 반론문	제22면 우측 상단부분	가로 18cm, 세로 3단	
2	제2의 1 반론문	제1면 우측 상단부분	가로 18cm, 세로 2단	제1순위 이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국민일보
	제2의 2 반론문	제3면 우측 상단부분	가로 18cm, 세로 2단	
3	제3 반론문	제3면 우측 상단부분	가로 18cm, 세로 2단	제2순위 이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국민일보
4	제4의 1 반론문	제23면 우측 상단부분	가로 9cm, 세로 4단	제3순위 이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국민일보
	제4의 2 반론문	제22면 좌측 상단부분	가로 15cm, 세로 3단	
5	제5 반론문	제23면 우측 상단부분	가로 18cm, 세로 2단	제4순위 이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국민일보
6	제6 반론문	제23면 우측 상단부분	가로 18cm, 세로 2단	제5순위 이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국민일보
7	제7 반론문	제21면 중간부분	가로 18cm, 세로 1단	제6순위 이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국민일보
8	제8 반론문	제1면 우측 상단부분	가로 9cm, 세로 3단	제7순위 이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국민일보
9	제9 반론문	제3면 좌측 상단부분	가로 15cm, 세로 2단	제8순위 이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국민일보
10	제10 반론문	제22면 우측 상단부분	가로 9cm, 세로 2단	제9순위 이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국민일보

제 1-1 반론문

소 제 목 : 장기기증운동본부 「보로금」 가로챘 사실없다.

본 문 : 국민일보는 1995. 3. 20.자 1면에 “장기기증운동본부 「보로금」 가로챘다”라는 큰 제목과 “수혜자들에 거액 후원금 받아” 및 “최고 수천만원 순위(順位, 이하 괄호 안의 한자는 반론문 게재시 한자에 상응한 한글과 괄호를 없애고 한자만으로 표기할 수 있다) 조작도”, “기증자엔 감사패, 행운의 열쇠만 전달” 이라는 소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장 박 」가 장기를 기증받은 수혜자들로부터 최고 수천만원까지의 후원금을 받았고 장기를 기증한 사람에게 주는 보로금을 가로챘으며 장기이식수술의 순위(順位)를 조작하는 등의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비리(非理)를 저질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장기기증운동본부측의 요구로 후원금을 냈다는 박 씨(41·가명)는 신장이식수술을 주선해 준 호의에 감사한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냈으며, 강

씨(37·가명)도 장기기증운동본부로부터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장을 기증받게 해 준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후원금을 냈던 것이며, “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해 이식수술을 받는 상당수 수혜자가 적게는 1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순위조작에 의해 1주일만에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고 보도된 김 씨는 장기기증운동본부에 등록한 지 10개월이 지나서 수혜자와 장기의 조직형이 맞아서 수술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며, 더욱이 그는 수천만원이 아닌 2백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등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는 보로금을 가로채거나 수혜자들로부터 최고 수천만원 등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혜자들의 수술에 관한 순위(順位)를 조작하지 않았으며,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고, 수혜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과 보로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명세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정기감사를 통하여 감독을 받고 있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1-2 반론문

소 제 목 : 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臟器)로 돈벌이 한 사실 없다”

본 문 : 국민일보는 1995. 3. 20.자 제22면에 “「사랑의 장기(臟器)」로 돈벌이”라는

큰 제목과 “보로금으로…”, “수혜자에 내부 규정 보이며 ‘내라’ 요구”, “기증자에게 거의 전달 안하고 가로채”라는 소재목 및 “후원금으로…”라는 중제목 및 “정부(政府) 보로금 등 불구하고 수혜자에게도 받아 유명인사(人士) 기증경우엔 「홍보」노려 ‘무료’”라는 소재목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장기를 기증받은 수혜자들로부터 최고 수천만원까지의 후원금을 받았고 장기를 기증한 사람에게 주는 보로금을 가로챘으며 장기이식수술 순위를 조작하였고, 장기기증운동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였던 등의 비리(非理)를 저질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장기기증운동본부에 2백만원의 후원금을 냈다고 보도된 김○○, 서○○씨는 가공인물로 밝혀졌고, 보로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도된 기증자 한○○, 황○○씨는 장기기증운동본부로부터 보로금과 감사패 등을 모두 받았으며, 후원금을 내고 순위에 비해 빨리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된 박○○씨는 순서에 따라 수술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냈고,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내고 순위보다 빨리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된 김○○씨는 기증자와 신장의 조직형이 잘 맞아 수술을 받게 된 것이며 수술 후 자발적으로 금 2백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이며,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해 10월 민주당총재부인인 이○○여사의 신장을 기증받은 이모 씨로부터 규정에 따라 사전검사비, 사후건강관리기금, 교통, 보로금 등을 받는 등 유명인사가 장기를 기증했을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장기수혜자로부터 소요비용 등을 수령하고 있으며, 약 1,350여 명의 후원자로부터 매달 2천~1만원씩의 후원금과 정부로부터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운영비가 아닌 골수기증 운동캠페인의 홍보비로 1994년 동안 금 6천2백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수혜자로부터 후원금을 강제로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수혜자로부터 받은 보로금을 기증자에게 전액 전달해 왔으며, 돈을 받고 수술대기자의 순위를 바꾼 사실이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2-1 반론문

소 제 목 : 장기기증자 보로금 못받은 사실 없다

본 문 : 국민일보는 1995. 3. 21.자 제 1면에 「“보로금 못받았다” 폭로 잇달아」라는 큰 제목과 “기증자들 「장기(臟器)본부」 비리(非理)의혹 확산”, 「“박(朴)본부장 해명은 거

짓' 분노」라는 중제목 및 “기증 수혜자 모녀 회견 5백만원 내고 감사패만 받아”라는 소 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가 장기를 기증한 사람에게 주는 보로금을 가로챘고 검찰 및 복지부에서 비리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장기기증자들이 장기기증운동본부로부터 보로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고, 94년 신장을 기증한 뒤 보로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김(金)모 씨는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신장을 기증한 사실조차 없었으며, 박 김 모녀의 경우 장기수혜자로서 장기기증운동본부에 후원금 30만원을 포함하여 사전검사비, 건강관리기금 등으로 510만원이 아닌 280만원을 냈고, 기증자로서 감사패를 받은 외 사무착오에 의해 현금 보로금을 받지 못한 것이며, 보로금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된 이 , 주 씨 모두 보로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며, 장기기증운동본부에 대한 검찰의 내사와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에서 부당한 금품 거래를 하였다거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비리가 밝혀지지 않았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2-2 반론문

소 제 목 : 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를 매매(賣買)한 사실없다.

본 문 : 국민일보는 1995. 3. 21.자 제3면에서 “생명의 「賣買化」라니...” 라는 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가 장기를 기증받은 수혜자들로부터 최고 수천만원까지의 후원금을 강요하여 받았고 장기기증운동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수혜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정부로부터는 장기기증운동본부의 운영비가 아닌 골수기증운동 캠페인의 홍보비로 1994년 한해에 금6천2백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약 1,350여 명의 후원인으로부터 2천원에서 2만원까지의 후원금을 받고 있고, 수혜자로부터 자발적으로 그들의 형편에 따라 후원금을 받아 왔으나 후원금 납부를 강요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장기를 매매한 사실이 없고, 그동안 생명사랑의 숭고한 뜻으로 장기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순수한 마음에서 장기기증운동을 펼쳐왔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3 반론문

소 제 목 : 장기기증운동본부 박 본부장, 혈액 팔아 착복한 사실없다.
본 문 : 국민일보는 1995. 3. 22.자 제3면에서 “70년대 혈액(血液) 팔아 「착복」 의
혹” 이라는 제목과 “「장기기증」 본부장 박 누구인가”, “당시 현혈협이사..., 증서·
알선료 챙겨 「물의」 빗자 84년 도미(渡美) 뒤 90년에 귀국이라는 소제목으로, 박 이
현혈증서나 알선료를 챙기고 혈액(血液)을 팔아 착복한 것으로 물의를 빗자 미국으로 도
피했고 사랑의 장기운동을 추진하면서 불법으로 거액의 금품을 착복하는 등 비리를 저질
러 왔으며, 장기를 기증한 사람에게 주는 보로금을 가로챘다고 보도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박 본부장은 민간현혈운동과 관련하여 혈액기증자들을 혈액원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알선료를 받거나 일부 현혈자의 혈액(血液)을 팔아 착복하지 않았고,
현혈자에게 현혈증서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현혈증서를 모아 현금으로 바꿔 착복하지
않았으며, 장기기증 수혜자로부터 보로금을 받아 착복하지 않았고, 후원금을 직접 받거나
유용한 사실이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4-1 반론문

소 제 목 : 장기기증운동본부, 「후원금」 없다는 이유로 수술 거부한 적 없다.
본 문 : 국민일보는 1995. 3. 24.자 제22면에 “「후원금 못낸다」하자 “수술 못함” 통
보」 라는 큰 제목과 ‘어느 수혜자의 증언(證言)’, ‘장기기증운동본부 이렇게 했다’ 라는 중
제목, “나중 다시 불러 「이식」 후 ‘2백만원 내라’”, “뇌사자 가족에 전달않고 영수증 안
줘” 라는 소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장기를 기증받은 수혜자들에게 후원금
을 요구하였고 이를 내지 않을 경우 수술을 거부하였으며, 규정과 달리 별도로 뇌사자 장
례비를 거두었다는 취지의 김 씨 등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장기기증본부는 김 씨에게 후원금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그에게
후원금을 못낸다고 하여 수술 못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없었으며, 뇌사자 장례비를 내라
고 요구하지 않았고, 김씨는 수술대기자 순서에 따라 신장이식수술을 할 예정이었으나 기
증자의 부인이 신장기증을 반대하여 수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가 수술 후 후원금 2백
만원을 내었고, 서울대 병원관계자가 장기기증운동본부직원이 병원측에 장례비 등을 요

구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4-2 반론문

소 제 목 : 장기기증운동본부, 수혜자에게 「뇌사자 장례비」 거둔 사실 없다.

본 문 : 국민일보는 1995. 3. 24.자 제23면에 “수혜자에 「뇌사자 장례비」도 거뒀다”라는 큰 제목과 “장기(臟器)기증본부 병원비에 포함 불구 별도로 요구”라는 중제목 및 「50대(代) 어머니 “딸의 신장수술 뒤 2백만원 줬다”, 「병원측 “장기기증운동본부 뇌사자 소개 뒤 돈 요구했다”」라는 소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장기이식 등과 관련하여 저질렀다는 각종 비리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장 박

가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기증받은 수혜자들로부터 소요비용 외에 별도로 장례비도 거두었고 뇌사자를 소개한 후 돈을 요구해 병원측과 자주 다투었다는 취지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뇌사자장례비로 금2백만원을 주었다고 보도된 김 씨는 장기를 기증받은 후 장례비가 아닌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냈고, 최 씨도 장례비로 금250만 원을 낸 것이 아니라 후원금 2백만원을 낸 것으로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장기수혜자에게 뇌사자 장례비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이를 받은 사실이 없고, 뇌사자를 병원에 소개시켜 준 뒤 항상 돈을 요구해 병원측과 자주 다투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서울대 병원의 이(李)모 씨(35·여)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5 반론문

소 제 목 : “장기기증사업에 비리 없었다”

본 문 : 국민일보는 1995. 3. 25.자 제23면에 「“장기(臟器)기증 비리(非理) 진실 밝혀 「승고한 사업 활성화 해야」」라는 제목과 ‘골수 은행회장 육 목사 본지 인터뷰’, 기증수혜자 상대 회유공작이라는 소제목으로 박 이 헌혈관계 일을 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

)가 장기기증자와 수혜자들을 상대로 비리(非理)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유리한 증언(證言)을 해달라는 취지의 회유 설득작업을 하였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박 본부장은 헌혈 관계와 관련된 비리(非理)가 없었고,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위 비리보도와 관련하여 기증자와 수혜자들을 회유하거나 본부에 유리한 증언(證言)을 요구하는 설득작업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6 반론문

소 제 목 : 박 본부장, 장기수혜자에게 2천만원 선불(先拂) 강요한 사실 없다.

본 문 : 국민일보는 1995. 3. 27.자 제23면에 「돈 미리 내면 「이식」 바로 주선 2천만원 선拂강요」라는 큰 제목과 “박 씨, 수혜자에 직접요구”, 「“스스로 냈다” 주장 거짓드러나」라는 중제목 및 「40대(代) 여인(女人)폭로, “분노 느꼈으나 위독 상황에 응대”」, “기증자 조직과 달라 포기 … 끝내 동생 것 이식받아”라는 소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가 장기를 기증받은 수혜자인 김 씨(45·여·가명)에게 후원금을 강요하여 2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김 씨에게 후원금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박 본부장이 그녀가 다니던 구리시 아천동 교회의 담임목사를 통해 장기이식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을 뿐 김(金)씨에게 한양대학병원을 소개해준 적이 없으며, 후원금에 관하여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고, 김(金)씨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7 반론문

소 제 목 : 본지에 알려진 장기기증운동본부에 대한 비리(非理) 제보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본 문 : 국민일보는 1995. 3. 28.자 제21면에 「용기 있는 제보」라는 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장기이식 등과 관련하여 저질렀다는 각종 비리에 관하여 보도하

면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가 장기를 기증받은 수혜자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강요하여 받았고 장기이식수술의 순위(順位)를 조작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박 본부장은 장기기증을 받은 수혜자들에 대하여 거액의 후원금을 강요하여 선불로 받거나 장기이식수술의 순위(順位)를 조작하지 않았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8 반론문

소 제 목 : 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를 매매하거나 수술 순위를 조작한 사실없다.

본 문 : 국민일보는 1995. 3. 30.자 제1면에 “「장기(臟器)나눔 기구」 연내 발족”이라는 제목과 “민간(民間)주도 부작용 방지책 기증 - 수혜자 연결 전산망(電算網) 설치”라는 소제목으로 보건복지부는 30일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매매나 순위조작 등의 부작용을 막고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장기공여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가 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장기공여관리기구를 설치키로 했고,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는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에는 설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장기를 매매하거나 장기이식수술을 받을 사람들의 수술순위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그동안 장기기증운동본부의 활동에 있어 어떠한 불법행위와 부작용도 없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 왔고, 보건복지부는 1995년 3월 30일 현재 장기공여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장기공여관리기구를 설치키로 했다거나 설치키로 했다고 밝힌 사실이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9 반론문

소 제 목 : 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기증운동과 관련한 비리없다

본 문 : 국민일보는 1995. 3. 31.자 제3면 사설란에서 “「장기(臟器) 비리」 검찰이 나

서라” 라는 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가 장기를 기증받은 수혜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후원금을 강요하여 받았고 장기기증운동을 이용해 돈 벌이를 하였다 등의 장기이식과 관련한 형사처벌이 되기에 충분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주무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 이후 현재까지 영리활동을 하거나 장기수혜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거나 선불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박 본부장 역시 장기기증운동과 관련하여 장기를 매매하거나 또는 생명체를 상품화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은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없었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10 반론문

소 제 목 : 장기기증운동본부의 운영에 장기매매 등 부작용 없다.

본 문 : 국민일보는 1995. 4. 1.자 제22면에 “공여이식 종합적 관리 급선무”라는 큰 제목과 “장기기증운동 이렇게”, “체계없어 「매매」 등 부작용 많아” 라는 소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장기 매매하는 등 그 운영에 부작용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장기를 매매한 사실이 없고 그 운영에 어떠한 부작용도 없었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1-1 정정보도문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것, 이하 같다)

대 제 목 : 장기기증본부 「보로금」 가로챌 사실 없다.

중 제 목 : 수혜자들로부터 최고 수천만원 등 거액 사례금을 받은 사실없다.

장기기증본부, 수술 「순위(順位, 신청인이 한자표기를 구하나 판결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괄호안에 한자로 표기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조작성한 사실도 없다.

기증자에겐 감사패와 행운의 열쇠를 비롯한 보로금을 지급하였음이 밝혀져

소 제 목 : “금품(金品) 수수 위법(違法)”이라는 복지부 발표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져
 본 문 : 본지는 1995년 3월 20일자 1면에서 “장기기증본부 「보로금」 가로챘다” 라는 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가 장기이식 수술을 주선하면서 이식을 받는 사람들(수혜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사례비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또 장기기증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전달하겠다고 수혜자로부터 받은 「보로금」도 상당부분 전해주지 않고 중간에 가로챘음이 20일 본사 취재진에 의해 확인됐다. 지난 2월 장기본부를 통해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박 씨(41·가명)는 장기본부측의 요구에 따라 수술비 외에 1천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93년 4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강 씨(37·여·가명)도 장기본부로부터 「수술받는 대가」를 요구받고 8백만원을 냈다. 강(姜)씨는 「장기본부를 통해 이식수술을 받는 상당수 수혜자가 적게는 1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본부는 이처럼 거액의 후원금을 거둬들이면서 수술대기자의 순위까지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기본부에 수술대기자 등록을 한 뒤 2년 6개월을 기다린 김

씨(43·가명)는 가족이 장기본부 관계자를 만난지 1주일만에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김씨의 수술을 지켜본 병원관계자는 「김씨가 장기본부에 최소 1천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기본부는 또 수혜자로부터 「기증자의 보약과 휴식기금으로 주겠다」며 받은 보로금 1백20만원도 상당수 기증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본사 취재진이 지금까지 장기본부에 신장을 기증한 70여 명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보로금을 받지 못했으며 대신 장기본부에서 만들어준 감사패나 금10돈짜리 행운의 열쇠(50만원상당)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본부는 그러나 수혜자로부터 거둬들인 거액의 후원금과 가로챈 보로금의 규모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煥) 의정국장은 20일 「복지부 등록 재단법인인 장기본부가 수혜자로부터 기증자 수술비와 검사비용 외에 별도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운동본부 설립취지에 어긋난다」며 「더욱이 기증자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수혜자로부터 돈을 받아 중간에서 가로챘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제1면 왼쪽 상단에 적시된 후원금·보로금의 도표에 대한 설명에는 “본부측은 임의로 수혜자에게 후원금을 요구하고 기증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받은 보로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위 본지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로 밝혀졌다.

- (1)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가 「보로금」을 가로채거나 수혜자들로부터 최고 수천만원 등 거액의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 (2) 또 장기기증본부가 수혜자들의 수술에 관한 「순위(順位)」를 조작했다는 본 보도도

허위임이 밝혀졌다.

(3) 이와 관련하여 위 기사에서 언급된 박 씨(41·가명)의 경우 장기기증본부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장이식수술을 주선했던 장기기증본부의 호의에 감사한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장기기증본부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4) 또한 강 씨(37·가명)도 장기기증본부로부터 「수술받는 대가」를 요구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신장을 기증받게 해 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후원금을 낸 것이며 특히 강(姜)씨는 「장기본부를 통해 이식수술을 받는 상당수 수혜자가 적게는 1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5) 또 순위조작에 의해 1주일만에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고 보도한 김 씨(43·가명) 경우도 김(金)씨가 장기기증본부에 등록한 지 10개월이 지나서 수혜자와 장기 조직형이 잘 맞아서 수술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며 더욱이 김(金)씨는 수천만원이 아닌 2백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6)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수혜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과 보로금을 가로챈 사실이 없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명세는 이사회에 보고되어 처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정기감사를 통하여 감독을 받고 있어 돈과 관련한 의혹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7) 본지에서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낸 수혜자가 있다는 보도도 잘못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1-2 정정보도문

대 제 목 : 장기기증본부, “장기(臟器)로 돈벌이 한 사실없다.”

중 제 목 : 장기기증본부, 수혜자에게 후원금 강요한 사실없다.

장기기증본부, 기증자에게 주는 보로금 가로챈 사실없다.

장기기증본부가 수혜자로부터 받는 후원금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

유명인사 기증 때도 「홍보」노려 「무료」로 시술해 준 사실없다.

본 문 : 본지는 1995년 3월 20일자 22면에서 “사랑의 장기(臟器)로 돈벌이”라는

큰 제목하에 “보로금으로…”라는 증제목으로 “수혜자에 내부 규정 보이며 ‘내라’ 요구” “기증자에게 거의 전달 안하고 가로채”라는 소제목으로 하고 또 “후원금으로…” 라는 제목으로 “정부(政府) 보조금 등 불구하고 수혜자에게도 받아”, “유명 인사(人士) 기증 경우엔 「홍보」 노려 ‘무료’ ”라는 소제목을 달아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기증자가 돈이나 기타 보상을 전혀 바라지 않는 「순수한 심성의 소유자들」이라는 점과 기증자와 수혜자가 서로 만나서는 안된다는 불문율을 교묘히 이용해 보로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왔다. 장기본부는 수혜자로부터 보로금 1백20만원(93년까지는 90만원)을 일률적으로 받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 돈을 받아야 할 기증자에게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본부는 보로금으로 감사패와 금 10돈중짜리 행운의 열쇠를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상당수의 기증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93년 1월 신장을 기증한 이

씨(40·가명)는 「수술 후 장기본부로부터 감사패만 하나 달랑 받았다」며 「보로금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93년 2월 장기본부에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신장을 받아 딸의 이식 수술을 마친 김 씨

도 보로금을 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김(金)씨는 「딸이 신장을 이식받을 때 분명히 보로금을 냈으나 내가 신장 기증자가 되었을 때는 보로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고 감사패만 받았다」고 말했다. 92년 2월 신장을 기증한 김 씨(32·여·가명)는 수

혜자의 직장동료들이 모은 성금 1백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로금을 받지 못했다. 장기본부는 김씨에게 「이미 기증자측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았으니 보로금을 줄 수 없다」며 전해주지 않았다. 92년 10월 신장을 기증한 한

씨(45·여·가명)는 「보로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장기본부가 감사패 제작비를 내라고 권유해 10만원을 냈다」고 말했다. 한씨도 「기증자들이 모두 그렇게 제작비를 내는 것으로 알았다」며 「보로금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어이없어 했다. 장기본부는 그러나 내부사정을 잘 아는 기증자나 뒤늦게 보로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분개해 강력히 항의하는 기증자에게는 뒤늦게 보로금을 전달했다. 93년 신장을 기증한 황

씨(45·여·가명)는 수술 후 보로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장기본부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끝에 결국 보로금을 받아냈다. 장기본부가 「달라고 조르는 이들에게만 주겠다」는 식으로 보로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소문으로만 나돌던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각종 비리가 표면화됨에 따라 장기본부는 그동안 수많은 생명을 구한 「선행」에도 불구하고 기증자가 순수한 뜻으로 내놓는 장기로 돈벌이를 해 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장기본부는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반면 생사의 기로에 선 채 장기를 필요로 하는 수혜자가 많은 현실적인

상황을 이용, 대소 후원금을 받아온 것이다. 순수생명운동단체임을 표방하는 장기본부는 2천여 명의 일반후원자들이 매달 5천~1만원씩 내는 후원금을 받는 한편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보조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측은 수혜자들에게 「장기본부의 운영이 어렵다」며 사례금조로 별도의 후원금을 낼 것을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본부는 조직검사 등을 통해 수혜자가 결정되면 자체적으로 책정한 기증자 검사비용(조직검사비 96만원, 건강관리기금 80만원, 보로금 1백20만원) 용지에 후원금 항목을 끼워 넣어 수혜자가 이 돈을 내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 93년 신장이식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8백만원의 후원금을 낸 강

씨(여)는 「기본적으로 장기본부에 내야하는 기증자검사비용 항목에 후원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수혜자들이 수술 전 이 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강(姜)씨는 그해 11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연말정산을 위해 장기본부에 후원금 영수증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때문에 장기본부가 후원금을 정식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1천만원의 후원금을 내고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박

씨는 「수술대기자 중 최우선순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0월 장기본부와 연락을 취한 김

씨도 단 1주일 만에 신장이식수술을 받아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주변에서는 「김(金)씨가 최소한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냈을 것」이라는 말이 설득력있게 떠돌고 있다. 김(金)씨는 자신이 낸 후원금액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수술대기자 순위는 중요하지 않고 돈만 있으면 언제나 신장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털어 놓았다. 이들과는 달리 수혜를 위해 몇년째 기다리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기(長期)대기자들은 「언제 차례가 돌아올지 모른 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93년 5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최

씨(36·여·가명)는 남편이 막노동을 하는 등 생활이 어려웠지만 수술 전 후원금을 내기로 약속하고 그 해 10월 계를 탄 뒤 이 돈을 납부하기도 했다. 장기본부는 또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이식받은 수혜자의 경우 병원까지 찾아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3년 8월과 94년 8월 각각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은 김

씨(27·가명)와 서

군(18·가명)은 병원에서 장기본부에 2백만원씩의 후원금을 냈다. 장기본부는 그러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장기를 기증했을 경우 「홍보효과」를 노려 일절 금품을 받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수혜자로부터 받는 각종 비용은 물론 후원금에 대해 말도 꺼내지 않고 무상으로 「혜택」을 준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기택(李基澤) 민주당총재 부인 이

여사가 신장을 기증한 뒤 수혜자로 선정된 이(李)모 씨(48·여)는 장기본부측에 일체의 돈을 내지 않고도 이식수술을 마쳤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지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로 밝혀졌다.

(1)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보로금을 강제로 징수하거나 또 이를 중간에 가로챈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장기기증본부는 수혜자로부터 보로금을 받아 이를 기증자에게 전액 전달해 왔다. 보로금은 장기기증인이 수술 후 약 1달간 일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위로금이므로 장기를 이식받은 수혜자가 전액 부담하여 왔다.

(2) 92년 10월 신장을 기증한 한 씨(45·여·가명)의 경우 장기기증본부로부터 보로금과 감사패 등을 모두 받았으며 93년 신장을 기증한 황 씨(45·여·가명)의 경우도 감사패와 행운의 열쇠, 보로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3) 장기운동본부가 장기로 돈벌이를 해왔다는 보도는 허위다. 장기운동본부는 약 1,350여 명의 후원자로부터 매달 2천~1만원씩의 후원금을 받아 왔으며 정부로부터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운영비」가 아닌 골수기증운동 캠페인의 「홍보비」로 1994년 한 해에 한해 금 6천2백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4) 장기기증본부는 돈을 받고 수술대기자의 순위를 바꾼 사실이 없다. 순위조작에 의해 빨리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된 박 씨의 경우 정당한 순서에 따라 신장을 기증받았고 박(朴)씨가 낸 후원금은 자발적으로 낸 것이다.

(5)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내고 순위보다 빨리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된 김 씨의 경우 기증자와 신장의 조직형이 잘 맞아 수술을 받게 된 것이며 수술후 자발적으로 금 2백만원의 후원금을 장기기증본부에 보냈음이 밝혀졌다.

(6) 장기본부에 2백만원의 후원금을 냈다고 보도된 김 씨(27·가명) 서군(18·가명)은 허위의 가공인물임이 밝혀졌다.

(7) 장기본부는 유명인사가 장기를 기증했을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장기수혜자로부터 장기기증자의 검사비용, 보로금 등을 받았으며 홍보효과를 노려 수혜자로부터 일절 금품을 받지 않은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이 여사의 신장을 기증받은 이(李)모 씨(48·여)는 장기본부의 규정에 따라 사전검사비, 사후건강관리기금, 교통비, 보로금 등을 냈으며 다만 이 여사가 보로금의 수령을 사양하여 지급치 못한 것임이 밝혀졌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가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보로금과 거액의 사례비를 받아 가로챘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 정밀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은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특별감사와 별도로 이 단체의 비리 여부에 대한 방증수집과 법률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라고 보도하고 또 위 기사의 하단 부분에 ‘관련법 제정키로’ 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는 20일 감사관실 직원 5명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지원하는 연간 6천2백만원의 사용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감사결과 후원금이나 보로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이 법인체의 이사진도 개편키로 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지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로 밝혀졌다.

(1) 장기기증자들이 장기기증본부로부터 소정의 보로금을 못받았다는 기사는 허위로 밝혀졌다.

(2) 94년 신장을 기증한 뒤 보로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김(金)모(40) 씨의 경우 장기기증본부에 신장을 기증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 모녀의 경우 장기본부에 후원금으로 50만원이 아닌 30만원을 포함하여 사전검사비, 건강관리기금 등으로 510만원이 아닌 280만원을 냈고 장기본부로부터 보로금의 일부인 감사패를 받았으나 나머지 현금 보로금은 사무착오에 의해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4) 또 보로금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된 이 씨(48·여)도 수술직후 통장을 통해 보로금이 지급되었고 주 씨(41·여)도 보로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5) 장기기증본부에 대한 검찰의 내사와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에서도 장기기증본부나 박 본부장이 부당한 금품거래를 하였다거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비리가 없음이 밝혀졌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2-2 정정보도문

대 제 목 : 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를 이용해 돈벌이 한 사실없다.

중 제 목 : 장기기증운동본부, 그동안 깨끗한 장기기증운동을 해 왔다.

본 문 : 본지는 1995년 3월 21일자 제3면에서 “생명의 「매매화(賣買化)」라니 …”라

는 제목 하에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이처럼 생명사랑의 숭고한 뜻이 담긴 장기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회봉사단체임을 표방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기본부의 운영은 투명해야 한다. 한치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된다.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런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장기본부는 신장을 이식받은 환자 당사자로부터 수술직전 후원금을 받았다. 1천만원을 낸 의사도 있고 8백만원을 낸 주부도 있다. 1천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낸 수혜자도 상당수 있다고 들린다. 본인들은 드러내 놓고 말할 꺼린다. 장기본부는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또 2천여 명의 일반 후원자들이 내는 후원금을 매달 받는다. 가난한 사람은 5천원을 내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2만원도 낸다. 교회나 기업들도 적지않은 특별후원금을 낸다. 자원봉사자도 있다. 무슨 보상을 바라서가 아닐 것이다. 생명을 사랑하고 이 운동의 「순수성」을 믿기 때문이다. 장기본부와 같은 순수 사회봉사단체는 이런 깨끗한 돈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래야 장기기증운동의 미래가 보장된다. 장기본부는 장기 수혜자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장기기증운동은 이제 특정인이 주도하는 사회단체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나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지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로 밝혀졌다.

(1) 장기기증본부가 장기를 이용해 돈벌이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또 장기기증본부의 운영에 있어 어떠한 의혹도 없음이 밝혀졌다.

(2) 장기기증본부는 수혜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정부로부터는 장기기증본부의 「운영비」가 아닌 골수기증운동 캠페인의 「홍보비」로 1994년 한 해에 한해 금6천2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3) 장기기증본부에 대한 후원금은 약 1,350여 명의 후원인이 2천원에서 2만원까지 내고 있다.

(4) 장기기증본부는 장기를 이식받은 수혜자로부터 자발적으로 그들의 형편에 따라 후원금을 받아왔으나 후원금 납부를 강요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다.

(5) 장기기증본부는 장기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없으며 그 동안 생명사랑의 숭고한 뜻으로 장기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순수한 마음에서 장기기증운동을 펼쳐왔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3-1 정정보도문

대 제 목 : 장기기증본부 박 본부장, 혈액 팔아 착복한 사실없다.
 중 제 목 : 박(朴)본부장, 헌혈증서나 알선료 챙긴 사실없다.
 박(朴)본부장, 「물의」빛자 도미(渡美)한 것이 아니다.
 본 문 : 본지는 1995년 3월 22일자 제3면에서 “「장기(臟器)기증」본부장 박
 누구인가” 라는 제목 하에 “70년대 혈액(血液) 팔아 「착복」 의혹” 이라는 대제목과
 “당시 헌혈협 이사… 증서·알선료 챙겨”, “「물의」 빛자 84년 도미(渡美) 뒤 90년에 귀국”
 이라는 중제목으로, 게다가 「헌혈증서 착복의혹 체계도」 라는 도면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박 본부장의 진면목은 무엇일
 까. 박(朴)본부장이 70년대초 벌었던 민간헌혈운동과 관련된 의혹은 아직도 그의 뒤를 그
 림자처럼 따라 다닌다. 매혈이 성행하던 60년대말 그는 민간차원의 헌혈운동조직이었던
 「피주는 운동」의 간사로 근무했다. 이어 69년에는 헌혈활동과 헌혈계몽운동을 주도한 사
 회단체인 한국 헌혈협회 이사직을 맡았다. 당시 그는 「헌혈운동의 선구자」라는 평가를 받
 기도 했다. 그러나 그와 활동했던 헌혈협회 초대이사장 김 씨와 전(前) 혈액
 학회 회장 이 씨 등이 공동 집필한 「한국헌혈운동사」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
 리고 있다. 이 단체의 재정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박(朴)본부장이 벌인 행적들이 오히려 우
 리 나라 헌혈운동에 깊은 상처를 안겨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朴)본부장이 개별적으
 로 교섭을 해 헌혈자를 확보했기 때문에 실제 헌혈자 수와 혈액원에 기록된 헌혈자 수가
 달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가 혈액기증자들을 혈액원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알
 선료를 받거나 일부 헌혈자의 혈액을 팔아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동안 움츠리고
 있던 박(朴)본부장은 80년 7월 서울에 「헌혈의 집」을 마련, 다시 헌혈활동에 나섰다. 그러
 나 이번에는 헌혈자들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또다시 물의를 일으켰다. 수혜자들
 로부터 장기이식수술을 받는 대가로 후원금을 요구했으며 수혜자들로부터 장기수술치료
 비와 별도로 기증자에게 지급하는 보로금을 받아 이를 중간에서 착복했다는 소문이 흘러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일보 취재팀의 취재결과 이는 사실로 드러났고 마침내 보건복지부
 의 특감과 검찰의 내사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63년부터 우석대학에서 원목(병원목사)을
 맡았다고 약력에서 쓰고 있다. 신학대를 졸업하지 않은 그가 어떻게 목사안수를 받고 더
 욱이 대학병원에서 있었는지에 대해 고개를 가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박(朴)본부장은 숙
 소도 두 군데에 마련했다. 장기본부가 공식으로 밝히는 그의 주소는
 호. 그러나 확인 결과 그는 서울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로 드러났다. 남들에게는 오피스텔의 좁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처럼 알리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기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또한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그렇다면 그의 약력은 홍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남는 의문은 결국 하나로 집결되고 만다. 박(朴) , 그는 진정 누구인가.”

그러나 본지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로 밝혀졌다.

(1) 장기기증본부 박(朴) 본부장이 민간헌혈운동과 관련하여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2) 박(朴)본부장이 혈액기증자들을 혈액원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알선료를 받거나 일부 헌혈자의 혈액을 팔아 착복했다는 의혹은 허위로 드러났다.

(3) 혈액은 생명과 직결되고 헌혈시 반드시 각종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헌혈자 수와 혈액원에 기록된 헌혈자 수가 다를 수 없다.

(4) 또 박(朴)본부장이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헌혈증서를 모아 현금으로 바꿔 착복했다는 의혹도 허위로 밝혀졌다.

(5) 박(朴)본부장이 장기기증 수혜자로부터 보로금을 받아 착복한 사실이 없다.

(6) 박(朴)본부장이 장기기증받은 수혜자로부터 후원금을 직접 받거나 유용한 사실이 없다.

(7) 박(朴)본부장이 63년부터 우석대학에서 원목활동을 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으며 박(朴)본부장의 숙소는 2곳이 아니라 1994년 10월전까지는 1곳이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2곳이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론보도신청인 박(朴)

제 3-2 정정보도문

대 제 목 : 장기기증운동본부, 운영·재정 위법사실 없다.

중 제 목 : 장기기증본부, 매년 보건복지부 감사받아
장기기증본부, 이사회가 운영 주도

본 문 : 본지는 1995년 3월 22일 제3면 하단에서 “「장기본부」 어떻게 운영되나” 라는 제목 하에 “정부(政府) 보조·후원금 사용내역 ‘베일’”, “朴씨 91년 설립·절대적 권한”, “서울본부·8개 지부 등 규모 커져”, “정관엔 이식관련 「금전거래」 금지” 라는 소재 목 하에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91년 1월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장기기증운동

이 국민의 관심과 마스크의 캠페인성 보도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운동본부 관계자들도 놀랄 만큼 빠른 성장을 해 왔다. 80년대만 해도 국내에선 장기기증이 드물었으나 최근 수년 사이에 급증해 지난해 말 현재 장기본부에 등록된 수혜자와 기증자 수는 신장과 골수각막 사후 시신 기증을 포함, 3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본부도 서울 이외에 8개지역본부를 둘 만큼 규모가 커졌으나 운영실태가 공개리에 제대로 밝혀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장기본부는 일반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회장과 이사 감사 이사회 등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는 법인체로서의 형식적인 모양새를 갖춘 것일 뿐 실제로는 창립 때부터 박 본부장의 절대적인 권한에 의해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장기본부의 각종 업무는 배일에 가려져 있었다. 장기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체임에도 불구하고 수혜자들이 낸 후원금과 복지부로부터 매년 6천2백만원씩 받는 보조금이 쓰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 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지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로 밝혀졌다.

- (1) 장기기증본부의 운영상이나 재정상 위법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2) 장기기증본부는 매년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정기감사를 받아왔는 바, 지금까지 한 번도 특별히 위법사실을 지적받은 바 없다.
- (3) 장기기증본부는 정관에 따라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되어 왔고 그 운영실태나 재정상황은 법인 내에서 완전 공개되어 왔다.
- (4) 장기기증본부는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승인하에 장기이식을 받은 수혜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왔다.
- (5) 장기기증본부는 1994년 한 해에 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운영비가 아닌 골수기증운동의 캠페인 홍보비로 금6천2백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돈은 홍보비로 전액 집행되었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4-1 정정보도문

대 제 목 : 장기기증본부, 수혜자에게 「뇌사자 장례비」 거둔 사실없다.

중 제 목 : 장기기증본부, 수혜자에게 「뇌사자장례비」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 없다.

본 문 : 본지는 1995년 3월 24일자 제23면 첫머리에서 “수혜자에 「뇌사자 장례비」

도 거뒀다” 라는 대제목 하에, “장기(臟器)기증본부 병원비에 포함 불구 별도로 요구”라는 중제목으로, 「50대(代) 어머니 “딸의 신장수술 뒤 2백만원 줬다」, 「병원측 “장기본부 뇌사자 소개된 돈 요구했다”」라는 소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

)가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이식받은 수혜자에게서도 뇌사자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24일 드러났다.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할 경우 병원측은 자체규정에 따라 수혜자 측으로부터 장례비 명목으로 1백만원 정도를 병원비에 포함시켜 이를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기본부는 수혜자 측이 병원에 장례비용을 지불한 것과는 별도로 또다시 비용을 요구해 왔다. 94년 12월 서울강동성심병원에서 뇌사자의 신장을 이식받은 김 씨(44)는 수술비 3백80만원 외에 장기본부 직원 김모 씨의 요구에 따라 2백만원을 줬다. 서울대병원 장기이식 프로그램 담당자 이모 씨(35·여)는 「장기본부가 뇌사자를 병원에 소개시켜 준 뒤 항상 돈을 요구해 병원측과 자주 다투었으며 91년 2월에는 병원측이 수혜자에게 장기본부에 돈을 내지 말라고 설득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지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로 밝혀졌다.

(1) 장기본부가 장기수혜자에게 「뇌사자 장례비」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이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 뇌사자장례비로 금2백만원을 주었다고 보도된 김 씨(44)의 경우 장기를 기증받은 후 한참 뒤에 「장례비」가 아닌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낸 것으로 밝혀졌다.

(3) 최 씨(33)도 장례비로 금250만원을 낸 것이 아니라 후원금으로 2백만원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4) 또 ‘장기본부가 뇌사자를 병원에 소개시켜 준 뒤 항상 돈을 요구해 병원측과 자주 다투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서울대병원의 이(李)모 씨(35·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4-2 정정보도문

대 제 목 : 장기기증본부, 「후원금」 없다는 이유로 수술거부한 적 없다.

중 제 목 : 장기기증본부, 후원금 강요한 적 없다.

본 문 : 본지는 1995년 3월 24일자 제22면에서 ‘어느 수혜자의 증언(證言)’, 장기

본부 이렇게 했다' 라는 제하로 「“후원금 못낸다” 하자 “수술 못함” 통보”라는 대제목 하에 “나중 다시 불러 「이식」 후 ‘2백만원 내라’”, “뇌사자 가족에 전달않고 영수증 안 줘” 라는 소제목으로 “후원금과 보로금에 이어 뇌사자의 장례비용까지도 사랑의 장기기증본부”가 생체이식과 더불어 추진하고 있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수술 생명을 되살리는 숭고한 「작업」에 부당한 돈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개입된 것이다. 94년 12월 22일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아 수술한 김 씨(44·대구) 영세민보호 1종으로 신장병을 앓아오던 김(金)씨가 도움을 받기 위해 장기본부의 문을 두드린 것은 94년 11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서울의 장기본부를 찾은 김씨는 장기본부가 제시한 검사비 80만원, 보로금 1백20만원 등 3백여 만원의 수술비 내역을 설명받았다. 장기본부관계자는 이어 「후원금으로 3백만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김씨는 「후원금으로 낼 돈이 없다」고 말했다. 며칠 뒤 장기본부는 「신장기증을 하려했던 사람의 부인이 기증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술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 그러나 김씨는 12월 21일 갑자기 장기본부 이(李)모 간사로부터 서울에 와서 수술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급히 상경한 김(金)씨는 다음날인 22일 누구인지도 모르는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아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 병실에 누워 몸조리를 하는 김씨에게 장기본부 직원 김(金)모 씨가 찾아왔다. 기증한 뇌사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던 김(金)씨는 먼저 「뇌사자 장례비를 내가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본부직원 김씨는 「우리가 다 해결했으니 장기본부에 2백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 보조금을 전달하는 조출한 자리에 본부직원 김(金)씨도 나타났다. 그는 부친 김(金)씨를 바로 건물 화장실로 불러 2백만원을 받은 뒤 그 자리를 떴다. 부친 김(金)씨는 「장례비라면 뇌사자 가족에게 전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장기이식프로그램 관계자는 「94년 2월 장기본부를 통한 뇌사자 장기이식수술 뒤 장기본부직원 이 찾아와 조화비와 장례비 등 50여 만원이 들었다며 병원측에 2백여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로 밝혀졌다.

(1) 장기기증본부는 수혜자에게 후원금을 강요하거나 후원금이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2) 장기기증본부는 김 씨(44·대구)에게 수술하기 전 후원금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또 그가 후원금을 못낸다고 하여 수술 못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김(金)씨는 수술대기자 순서에 따라 대구 거주 정 씨의 신장을 기증받게 되어 대구 동산의료원에서 수술을 할 예정이었으나 기증자인 정씨의 부인이 신장기증을 반대

하여 수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3) 장기기증본부는 김(金)씨에게 뇌사자 장례비를 내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김(金)씨는 수술 후 한참 뒤에 성결교단으로부터 받은 성금 3백만원 중에서 후원금으로 2백만원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4) “장기본부직원이 병원 측에 장례비 등으로 금2백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라고 보도된 서울대병원 관계자의 말은 본지가 허위로 만들어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정보도신청인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제 5 정정보도문

대 제 목 : “장기기증사업에 비리 없었다.”

중 제 목 : 장기기증본부, 박(朴)본부장에 대한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장기기증본부, 기증·수혜자 상대로 “회유공작”한 사실없다.

소 제 목 : 박본부장의 현혈증서착복비리는 사실과 달라
장기기증본부, “본부에 유리한 증언(證言)”을 요구한 사실없다.

본 문 : 본지는 1995년 3월 25일자 23면 머릿기사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산하기구의 대표자인 ‘골수 銀行회장 옥 목사 본지 인터뷰’ 기사를 “장기기증 非理 진실 밝혀 「송고한 사업, 활성화해야」”라는 제목으로

“93년 12월부터 골수은행회장을 맡고 있는 옥(玉)목사는 장기본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간 6천2백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것과 수혜자로부터 「보로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밝혔다. 옥(玉)목사는 「이전에는 박본부장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박본부장이 현혈관계 일을 하면서 현혈증서를 착복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에 대해 박본부장은 분명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玉)목사는 22일 보도된 박본부장의 개인 신상에 관한 기사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며 「사실이나」고 되물으며 재차 확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옥(玉)목사는 「기자들이 근거없이 기사를 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전제, 「어차피 국민일보가 보도한 것인 만큼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보도하였고 또 같은 면에서 「기증·수혜자 상대 “회유 공작” 이라는 대제목 하에 「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에 유리한 증언(證言) 요구” 전화(電話) 공세」라는 소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

증운동본부」(본부장 박)가 지난 20일 본지에 비리관련기사가 게재된 이후 기증자와 수혜자들을 필사적으로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이후 본사에 전화를 하거나 기자와 직접 만난 기증자와 수혜자들의 증언에 의해 확인됐다. 장기본부 박(朴)본부장 등 핵심 간부들은 보로금을 받지 못한 기증자들과 장기본부의 강요에 의해 후원금을 낸 수혜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장기본부에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장기본부는 21일 보건복지부 감사가 시작된 뒤에도 이같은 회유 설득작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장기본부가 의도적으로 비리를 감추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지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로 밝혀졌다.

(1) 장기기증본부는 장기기증사업에 있어 비리가 없었고 또 장기기증본부 박 본부장의 비리의혹 보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 장기기증본부 산하 골수은행회장인 옥 목사가 '장기본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간 6천2백만원의 보로금을 받고 있다는 것과 수혜자로부터 「보로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 알았다.' 고 말한 보도는 잘못된 것이며 옥(玉)목사는 위 사실을 골수은행의 회의 때 수차 서면보고를 받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국민일보 기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3) 장기기증본부는 국민일보 보도와 관련하여 기증자와 수혜자들을 회유하거나 본부에 유리한 증언을 요구하는 전화공세를 한 사실이 없음이 판명되었다.

(4) 장기기증본부는 그동안 비리를 감추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한 사실이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6 정정보도문

대 제 목 : 박 본부장, 장기수혜자에게 2천만원 선불(先拂) 강요한 사실 없다.

중 제 목 : 박(朴)본부장, 2천만원 미리 내면 「이식」 수술 바로 주선 말한 사실없다.

소 제 목 : 40대(代) 여인(女人), 장기기증본부에 후원금을 낸 사실도 없다.

본 문 : 본지는 1995년 3월 27일자 23면 첫머리에서 『돈 미리 내면 「이식」 바로 주선 2천만원 선불(先拂)강요』라는 대제목 하에 “박 씨, 수혜자에 직접 요구”,

「“스스로 냈다” 주장 거짓 드러나」라는 중제목으로, 「40대(代) 여인(女人)폭로, “분노 느꼈으나 위독상황에 응대”」, “기증자 조직과 달라 포기… 끝내 동생 것 이식받아” 라는 소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가 일부 장기수혜자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선불로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93년 초 장기본부에 수혜자등록을 한 김

씨(45·여·가명)는 26일 국민일보기자과 만나 「장기본부에 등록하자마자 박

본부장이 2천만원의 후원금을 선불로 내면 신장을 곧바로 이식받게 해 주겠다고 제의했다」고 폭로했다. 김(金)씨는 「장기본부의 비도덕적인 처사에 분노를 느꼈으나 당시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라 박(朴)본부장의 제의에 응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후원금을 1천만원씩 두 차례 내기로 하고 한달 뒤 한양대병원에서 수술하려 했으나 「장기본부에서 연결해 준 기증자와의 조직이 너무 달라 수술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담당의사의 설명을 듣고 수술을 포기했다.” 라고 보도하였고 같은 면 중간 윗부분에서 「어느 40대(代) 여인(女人)이 고발하는 ‘장기비리(非理)’ 라면서 “돈만 내면 조직 안 맞아도 주선” 이라는 제목 하에 “장기기증운동본부의 후원금 강요를 폭로한 김 씨는 「생명을 담보로 돈을 챙기려는 박 본부장의 비도덕적 행동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린다」고 말했다. 김(金)씨는 93년 3월 중순 친정부모와 함께 이식수술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공덕동 풍림오피스텔 내 장기본부 사무실로 찾아갔다. 박(朴)본부장은 김(金)씨의 친정아버지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2천만원을 내면 기증자를 물색해 빨리 수술을 받게 해 주겠다.」고 제의했다. 김(金)씨 가족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 우선 1천만원을 내고 기증자가 정해지면 나머지 1천만원을 내겠다고 결정한 뒤 이를 장기본부측에 알렸다. 얼마되지 않아 장기본부는 김(金)씨에게 「조직이 잘 맞는 기증자가 있다」는 연락을 해왔다. 이어 김(金)씨는 장기본부의 소개에 따라 한양대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김(金)씨는 담당의사로부터 어이없는 반응을 들었다. 담당의사는 김(金)씨의 조직검사내용을 검토한 뒤 「기증자와 조직이 잘 맞지 않아 수술성공률이 높지 않다」면서 그 자리에서 박(朴)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조직이 맞지 않는 사람을 보내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결국 김(金)씨는 장기본부를 통한 이식수술을 포기하고 94년 8월 동생의 신장을 이식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지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임이 밝혀졌다.

(1) ‘장기기증본부가 일부 장기 수혜자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선불로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는 허위임이 밝혀졌다.

(2) 박 본부장으로부터 2천만원의 후원금을 선불로 내라는 제의를 받았다고 보

도된 김 씨(45·여·가명)의 경우 그녀가 다니던 구리시 아천동 교회의 담임 목사를 통해 차본부장에게 장기이식을 요청하였으나 박(朴)본부장은 이 요청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을 뿐, 후원금에 관하여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3) 또 장기기증본부는 김(金)씨에게 한양대학병원을 소개해 준 사실이 없으며 김(金)씨가 장기기증본부에 후원금을 낸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7-1 정정보도문

대 제 목 : 장기기증운동본부 비리없어 수사받은 사실없다.

중 제 목 : 장기기증본부, 장기기증운동과 관련 의혹 없다.

장기기증본부, 장기기증운동과 관련 규정 외 금품수수한 적 없다.

소 제 목 : 장기기증본부, 장기를 매매한 사실없다.

본 문 : 본지는 1995년 3월 28일자 21면 첫머리에서 “검찰 「장기(臟器)비리」 수사 나서라”라는 제목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와 관련된 비리의혹이 사직당국에 의해 규명되고 장기기증운동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계 학계 법조계 의료계 등 각계 전문가들은 그 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장기본부 비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충격을 표시했다. 장기기증과 관련된 비리의혹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인 목사(50·갈릴리교회)는 「신체일부를 주고받는 장기기증은 그 자체가 성스러운 사랑의 실천이니 만큼 금전적인 면에서 단 한치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면서 「엄정한 수사로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이제 막 싹튼 장기기증운동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한이식인연합회장(82년 신장이식)도 「장기본부 비리의혹은 기증자나 수혜자에게 커다란 배신감을 안겨줬다. 장기본부는 이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지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임이 밝혀졌다.

(1)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와 관련된 비리의혹은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2) 장기기증본부의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엄정한 수사로 신속히 마무리 하는 것이 이

제 막 싹튼 장기기증운동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인
목사(50·갈릴리교회)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알려졌다.

(3) 또 장기본부 비리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권
대한이식인연합회장(82년 신장이식)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
다.

(4) 장기기증본부에 대하여 검찰은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

(5) 장기기증본부는 장기기증운동과 관련하여 규정 외 금품을 수수하거나 또 장기를 매
매하거나 그 외 어떠한 위법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7-2 정정보도문

제 목 : 본지에 알려진 장기기증본부에 대한 비리제보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본 문 : 본지는 1995년 3월 28일 22면에서 현장기자의 “용기 있는 제보”라는 제목
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박 본부장의 비리가 속속 밝혀지면서
국민일보에는 제보자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신문보도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수혜자들은 「거액·선불·순위조작」 등 순수생명운동단체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실들
이 장기본부에 현존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후원금이나 그에 따른 순위조작이 사라지고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장
기본부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조건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선불」로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김 씨(45·여·가명·본보 27일자 보도)는 27일 밤 본사에 전화를 걸어 「박
본부장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국민일보 기사를 정말 만났느냐’고 묻는 전화
가 왔다」고 말했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지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임이 밝혀졌다.

(1)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박 본부장의 비리의혹은 사실과 다른 허위
의 내용이며 또 이들에 대한 비리제보전화의 내용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2) 장기기증을 받은 수혜자들이 「거액·선불·순위조작」 등 사실들이 장기본부에 현존
하고 있다는 고백은 사실과 다르며 장기기증본부에는 이러한 비리가 있지 아니함이 밝혀
졌다.

반론보도신청인 박진탁

제 8 정정보도문

대 제 목 : 장기기증본부, 장기를 매매하거나 수술순위를 조작한 사실없다.

중 제 목 : 장기기증본부, 장기이식과 관련, 불법사실 없다.

본 문 : 본지는 1995년 3월 30일자 제 1면에서 “「장기(臟器)나눔기구」 연내 발족”이라는 대제목 하에 “민간(民間)주도 부작용 방지책 기증 - 수혜자 연결 전산망(電算網)” 설치라는 중제목으로

“보건복지부는 30일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매매나 순위 조작 등의 부작용을 막고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장기공여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가 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장기공여관리기구를 설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는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 단체에는 설치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지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임이 밝혀졌다.

(1) 장기기증본부는 장기기증운동을 전개하면서 장기를 매매하거나 장기이식수술을 받을 사람들의 수술순위를 조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 그동안 장기기증본부의 활동에 있어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 온 것으로 판명됐다.

(3) 장기기증본부의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4) 보건복지부는 1995년 3월 30일 현재 정부가 장기공여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장기공여관리기구를 설치기로 했다거나 설치기로 했다고 밝힌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9 정정보도문

제 목 : 「장기(臟器)비리」 의혹 혐의 없음이 밝혀져

본 문 : 본지는 1995년 3월 31일자 3면 사설란에서 “「장기(臟器)비리」 검찰이 나서

라” 라는 제목으로 “여기에 금전이 게재되어 상거래의 형식까지 취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반사회적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어떤 형태로든지 생명체를 상품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사랑의 실천」이란 미명 아래 특정인의 사욕을 채우는 일은 기만행위에 속한다.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이같이 우려할 만한 현상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본지가 최근 중점 보도한 「사랑의 장기기증본부」의 비리는 장기기증이란 「사랑의 실천 운동」이 영리적 차원에서 운영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비리의 내막은 수혜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아냈다는 사실이 초점이다. 장기본부측은 후원금을 강요한 바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제보는 속속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선불을 강요한 경우까지도 있었다고 한다. 이같은 비리의 의혹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정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은 어찌된 까닭인지 아직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생명을 담보로 사회사업을 위장한 기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사정당국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더욱 투명하게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는 검찰이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지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임이 밝혀졌다.

(1) 장기본부나 박 본부장이 장기기증운동과 관련하여 장기를 매매하거나 또는 생명체를 상품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장기기증본부는 1991년 설립이후 국민 서로간의 새생명 나눔의 사랑, 실천운동을 통하여 국민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왔으며 본지가 보도한 사랑의 실천이란 미명 아래 사욕을 채우는 일은 일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사랑의 장기운동본부」는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설립 이후 현재까지 영리활동을 해오거나 장기수혜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거나 선불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이 밝혀졌다.

(4) 장기기증본부에 대한 비리의혹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제 10 정정보도문

대 제 목 : 장기기증본부, 장기를 매매한 사실없다.

중 제 목 : 장기기증본부의 활동에 있어 장기매매나 순위조작 등 부작용 없음이 밝혀져

본 문 : 본지는 1995년 4월 1일자 22면에서 “장기기증운동 이렇게”, “체계없어 「매매」 등 부작용 많아”라는 제목으로

“국내에서는 현재 장기공여 및 이식이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와 일부병원에서 체계없이 이루어져 효율적인 장기이식을 기대할 수 없고 장기매매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지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임이 밝혀졌다.

(1) 장기기증본부가 장기기증운동과 관련하여 장기를 매매하거나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들의 수술 순위를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이 밝혀졌다.

(2) 「사랑의 장기기증본부」는 1991년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 이후 현재까지 설립목적인 살아서 신장을 기증토록 하거나 각막기증에 대한 제도 등 사업을 충실히 하여 왔으며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비리나 부작용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론보도신청인 박

〈별지〉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1. 가.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송달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국민일보」 제1면 우측최상단 부분에 별지 제1-1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활자로, 대제목 부분은 검은 색 바탕의 흰 글씨의 140급 고딕체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각 80급 명조체활자로, 소제목 부분은 50급 명조체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활자로 가로로, 대제목 부분 바로 좌측 부분에 별지 제1 사진목록을, 사진부분은 가로 5센티미터, 세로 7센티미터의 크기로, 본문 부분은 위 사진의 바로 밑 부분에 20급 명조체활자로 각 게재하여야 하고,

나. 같은 날 제22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 제1-2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활자로, 대제목 부분은 검은 색 바탕의 흰 글씨의 140급 고딕체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각 80급 명조체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가. 피신청인은 제1항 이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국민일보」 제1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 제2-1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활자로, 대제목 부분은 검은

색 바탕의 흰 글씨의 140급 고딕체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각 80급 명조체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하고,

나. 같은 날 제3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 제2-2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활자로, 대제목 부분은 검은 색 바탕의 흰 글씨의 140급 고딕체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80급 명조체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각 50급 고딕체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3. 가. 피신청인은 제2항 이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국민일보」 제3면 우측 최상단부분에 별지 제3-1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활자로, 대제목 부분은 검은 색 바탕의 흰 글씨의 140호 고딕체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각 80급 명조체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활자로 가로로, 대제목 부분의 바로 좌측 부분에 별지 제2사진목록을, 사진부분은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7센티미터의 크기로, 본문부분은 위 사진의 바로 밑 부분에 20급 명조체활자로 각 게재하여야 하고,

나. 같은 면 우측 제 7, 8, 9단 부분에 별지 제3-2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활자로, 대제목 부분은 검은 색 바탕의 흰 글씨로 100급 고딕체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각 70급 명조체활자로, 본문은 본문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4. 가. 피신청인은 제3항 이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국민일보」 제23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 제 4-1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활자로, 대제목 부분은 검은 색 바탕의 흰 글씨의 140급 고딕체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80급 명조체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하고,

나. 같은날 제22면 좌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 제4-2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활자로, 대제목 부분은 100급 고딕체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70급 명조체활자로, 본문은 본문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5. 피신청인은 제4항 이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국민일보」 제23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 제5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활자로, 대제목 부분은 검은 색 바탕의 흰 글씨의 140급 고딕체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각 80급 명조체활자로, 소제목 부분은 각 50급 명조체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

체할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6. 피신청인은 제5항 이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국민일보」 제23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 제6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할자로, 대제목 부분은 검은 색 바탕의 흰 글씨의 100급 고딕체할자로, 중제목 부분은 70급 명조체할자로, 소제목 부분은 50급 명조체할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할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할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7. 가. 피신청인은 제6항 이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국민일보」 제21면 좌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 제7-1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할자로, 대제목 부분은 검은 색 바탕의 흰 글씨의 140급 고딕체할자로, 중제목 부분은 각 80급 명조체할자로, 소제목 부분은 50급 명조체할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할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할자로 게재하여야 하고,

나. 같은 날 제22면 가운데 최상단 부분에 별지 제7-2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할자로, 제목 부분은 검은 색 바탕의 흰 글씨의 100급 고딕체할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할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할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8. 피신청인은 제7항 이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국민일보」 제1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 제8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할자로, 대제목 부분은 검은 색 바탕의 흰 글씨의 140급 고딕체할자로, 중제목 부분은 80급 명조체할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할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할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9. 피신청인은 제8항 이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국민일보」 제3면 좌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 제9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할자로, 제목 부분은 100급 고딕체할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할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할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10. 피신청인은 제9항 이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국민일보」 제22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 제10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할자로, 대제목 부분은 검은 색 바탕의 흰 글씨의 100급 고딕체할자로, 중제목 부분은 70급 명조체할자로, 소제목 부분은 50급 명조체할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할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할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사진목록

사진

본문 :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차 장기기증본부장은 보로금을 가로채거나 장기수혜자들로부터 거액의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별지〉 제2사진목록

사진

본문 :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차 장기기증본부장은 보로금을 가로채거나 장기수혜자들로부터 거액의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決定文

사 건 : 95카기609 강제집행정지

신 청 인 : 주식회사 국민일보사

서울 마포구 신수동 371의 16

대표이사 차일석

위 신청인 대리인 변호사 최명부

피신청인 : 박

서울

주 문 :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 법원 95카합1256 정정보도게재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신청인이 이 법원에 담보로 금 10,000,000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위 판결 중 별지 반론문 목록 제1의 1, 제2의 2, 제6

및 제8 반론문 부분에 한하여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 본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주문에서 인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있음으로 인함.

1995. 8. 1.

재판장 판사 정 은 환
판사 김 대 응
판사 고 재 민

決定文

사 건 : 95타기2543 간접강제

신청인 : 박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신청인 : 주식회사 국민일보

서울 마포구 신수동 371의 16

대표이사 차일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부

주 문 :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국민일보에 별지 제1 반론문게재방법표 기재 제4항 방법에 따라 별지 제1반론문목록 기재 제1내지 제8반론문을 같은 제1반론문게재방법표 제2항 기재 위치에 같은 표 제3항 기재 크기로 게재하되, 반론문이라는 제목은 가로로 50급 명조체활자로 게재하고, 그 제목 아래쪽에 같은 제1 반론문목록 기재 제1 내지 제 8 반론문의 각 소재목을 가로로 38급 명조체 활자로 각 게재하며, 같은 제1반론문목록 기재 제1내지 제8반론문 본문 및 반론신청인 성명을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위 소재목의 아래부분에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각 기간 내에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같은 제1반론문목록 기재 제1 내지 제8반론문을 게재하여야 할 기간 만료의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시까지 같은 제1반론문

목록 기재 제1반론문에 대하여는 매일 금 8,000,000원, 제2반론문에 대하여는 매일 금 12,000,000원, 제3반론문에 대하여는 매일 금 5,000,000원, 제4의 1 반론문에 대하여는 매일 6,000,000원, 제4의 2반론문에 대하여는 매일 6,500,000원, 제5반론문에 대하여는 매일 금 4,000,000원, 제6반론문에 대하여는 매일 2,000,000원, 제7반론문에 대하여는 매일 4,500,000원, 제8반론문 대하여는 매일 2,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1. 주문 제1항과 같은 결정 및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국민일보에 별지 제2반론문게재방법표 제4항 기재 방법에 따라 별지 제2반론문목록 기재 제1 내지 제4 반론문을 같은 제2반론문게재방법표 제2항의 위치에 같은 표 제3항 기재의 크기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50급 명조체활자로 게재하고, 그 제목 아래에 같은 제2반론문목록 기재 제1 내지 제4반론문의 소제목은 가로로 38급 명조체활자로 게재하며, 같은 제2반론문목록 기재 제1 내지 제4반론문 본문 및 반론신청인 성명을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위 소제목의 아래쪽에 가로로 게재하라.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제1항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각 위 이행기간 경과일로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각 1일 금 20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위 당사자 사이의 당원 95카합1256 정정보도게재신청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93조, 제694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당원 제1민사부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음)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4.

□

재판장 판사 손 용 근
판사 박 익 수
판사 윤 현 주

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의 게재와 함께 사과문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나, 정간물법 소정의 반론보도청구에 사과문의 게재를 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5. 8. 16.자 판결 (95카기74)

事實概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1995년 8월 16일 (주)예술인주택(대표이사: 이)이 (주)한서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게재 소송에서 「신청인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쌍방향의에 의해 위 분할 토지의 문제를 종료하였고, 위 토지분할 경위와 관련 안산시 지적계장 등 관련 공무원들의 위법 사항이 없음이 밝혀졌다」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이 당초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부지가 도시계획의 변경에 의하여 그 면적이 증가되고, 그 증가된 부분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분양될 수 없어 이를 적법하게 분양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이를 분할하였음에도 마치 신청인이 위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의 토지를 관계공무원들과 결탁하여 위법하게 분할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인 양 오해하게끔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인이 요구한 사과문 게재에 대해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가 보도된 내용에 대해 반론 내지 반박을 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어서 그 내용에 그 보도 담당자의 사과문의 게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면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예술인주택은 한서일보 1995. 1. 12.자 11면 『(주)예술인주택 아파트 설계도면 이중작성, 시가 1백30억 不動産 도둑질』 제하의 기사에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아파트단지 내 공용대지가 특정 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분할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으며, 시에 접수된 설계도면이 서로 상이한 두 개의 도면으로 작성되어 있어 도면변조 및 단지 내 필지 분

양을 둘러싸고 당시 공무원들의 개입의혹이 짙게 대두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 했다(95경기중재3 참조).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장 일부에 대해서는 수공하나 앞으로 있을 입주민 대표와 회사측의 공청회를 지켜본 후에나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정정보도요구를 거부, 중재불성립 되자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判決文

사 건 : 95카기74 정정보도계재

신 청 인 : 주식회사 예술인주택

서울 강남구

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1의 3(한일은행3층)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서일보사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259의 6 터미널 빌딩 5, 6층

대표이사 김학인

변론종결 : 1995. 5. 26.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일자 전체의 한서일보 제11면의 기사란 중 우측 상단부분에 가로 4cm, 세로 7단의 크기로, 1단 중앙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40급 명조체활자로 게재하고, 그밖의 여백에는 별지 기재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을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문 제1항 및 피신청인의 발행인 및 담당기자는 사과문을 게재하라.

이 유 : 1. 소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한서일보의 1995. 1. 12. 제857호 11면 우측 상단 부분에 『시가 1백30억 부동산 도둑질』이라는 큰 제목을 붙이고 그 위에 『(주) 예술인주택, 아파트 설계도면 이중 작성』이라는 큰 제목을, 기사 우측에 『주차장 등 공용부지 훔쳐 들어 위장』, 『시에 필지분할 신청 후 소유권 이전』, 『주민 공무원 관련 여부 조사 촉구』라는 작은 제목을 각 붙이고 「토지분할이 불가한 아파트단지 내 공용대지가 특정회사로 소유권 이전 분할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매매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시가 이를 불법적으로 매매 승인해… 시로 접

수된 설계도면이 서로 상이한 두 개의 도면으로 작성돼 있어 도면 변조 및 단지 내 필지분할을 둘러싸고 당시 공무원들의 개입 의혹이 질게 대두…」, 「준공 당시 설계도면상에 있던 단지 내 테니스장 2천2백 77m 와 스타프라자 상가 옆 진입로 일대(주차장 부지 등) 2천여㎡가 흙으로 교묘히 매립, 잔디로 씩워진 채 당시 개발주체인 (주)예술인주택으로 불법분할, 소유권 이전됐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갑제1호층, 소갑제2호층, 소갑제6호층, 소갑제7호층, 소갑제8호층, 소갑제9호층, 소갑제10호층, 소갑제11호층의 4내지 20, 24, 27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은 1983. 12. 28.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현,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반월 신도시 191가구(아파트 용지)67,500㎡를 대금 3,792,015,000원에 대수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1984. 9. 3. 위와 같은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한 사실, 신청인은 1984. 7. 11. 위 지상에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 예술인 회원에게는 1984. 6.부터, 일반인에게는 1985. 4. 16. 주택공급공고를 하여 입주자 모집을 마치고 위 사업을 시행하여 1985. 12. 경에는 상가를 제외한 아파트 부분에 관하여는 준공검사까지 마친 사실, 그런데 건설부 장관이 1985. 11. 9. 위 사업부지 인근 도로 폭을 70미터에서 50미터로 축소하는 도시계획변경을 함에 따라 위 반월 신도시 91가구의 확정면적이 71,852㎡로 당초 신청인이 매수한 면적보다 4,352.5㎡ 가 늘어나게 되자 위 산업기지개발공사가 1986. 1. 23. 위 추가부지 4,352.5㎡를 신청인에게 추가분양하니 그 추가대금 244,514,745원을 정산할 것을 통보한 사실, 이에 신청인이 이미 아파트에 입주한 분양자들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나 계약상 「가감증산」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이와 같은 추가대금 부담은 부당하다는 거부회신을 받고 부득이 신청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고 분양받게 되었고 따라서 신청인은 당초 분양면적인 500㎡만을 위 아파트 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면 되므로 이를 위하여 1986. 4. 21. 분양받은 총 면적 71,582.㎡에 관하여 신청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24. 당시 지적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지적사무처리지침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그 중 4,352.5㎡를 분할신청하였고, 주거지역 내에서의 토지분할은 분할 당시 건축법 제39조의 2규정(대지의 초소한도, 대지와 도로와 관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에 적법하여 분할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관할 안산시청 주택과로부터 적법 여부에 관한 심의를 거쳐 분할처리된 사실, 한편 이 사건 주택사업의 설계도면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시행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준공 당시의 도면이 최후 확정 도면이어서 도면이 변조되지도 아니한 사실, 게다가 주민들이 위 토지분할을 문제삼기 때문에 안산시청에서 청문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들이 1990. 12. 28. 위 분할토지의 소유권은 신청인에게 있음이 명백하다

고 인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10개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위 분할토지의 문제를 사용승인결의를 하였고 신청인이 1991. 2. 이를 받아들여 쌍방향의 하에 위 분할토지의 문제를 종료하였고 또한 안산시 지적계장 및 지적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이 위 토지분할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감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위법사항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한편 연성신문 등 일부 언론이 1994.경 피신청인이 게재한 기사와 유사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었으나 모두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정정보도한 바도 있는 사실, 또한 테니스장 및 주차장 부지 등을 흙으로 덮어 위장하였다는 것은 공연장(잔디광장)을 만들면서 대지정리작업으로 인하여 부토된 것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아파트 부지의 분할 경위에 관한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당초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 부지가 도시계획의 변경에 의하여 그 면적이 증가되고 그 증가된 부분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분양될 수 없어 이를 적법하게 분양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이를 분할하였음에도 마치 신청인이 위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의 토지를 관계공무원들과 결탁하여 위법하게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인 양 오해하게끔 만들었다 할 것이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한서일보에 공표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명예와 신용 등의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부지의 분할이 불법이고 그 분할과정에 관련 공무원과의 결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서일보에 별지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정보도문의 게재와 함께 피신청인 발행인 및 담당기자의 사과문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보도내용에 대하여 반론 내지 반박(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됨)을 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어서 그 내용에 그 보도 담당자의 사과문의 게재를 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달리 신청인이 이를 구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신청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8. 16.

재판장 판사 최 세 모
판사 노 소 라
판사 최 영 현

〈별지〉 정정보도문

한서일보 1995. 1. 12.자 11면 『시가 1백30억 부동산 도둑질 (주)예술인주택 아파트 설 계도면 이중작성』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기사내용 중,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아파트단지 내 공용대지가 특정회사로 소유권이 이전 분할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로 보도된 내용은 본 건 토지의 분할은 분할 당시 지적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지적사무처리지침 제33조 및 건축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해 본 건 토지에 관하여 1986. 4. 25. 소유권 이전등기한 (주)예술인주 택이 토지분할을 신청하여 안산시청에서 분할에 관한 적법 여부를 관계과(주택과)의 검토 를 거쳐 적법하게 분할처리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며, 「매매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 수 자원개발공사와 시가 이를 불법적으로 매매승인해 주었다」는 내용은,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추가부지 4,352.5㎡의 소유자인 수자원 개발공사가 (주)예술인주택에 정산 및 소유권 이전할 것을 통고하여 이에 의해 정산 추가분양한 것이므로 잘못 보도된 것이 며, 「안산시에 접수된 설계도면이 서로 상이한 두 개의 도면으로 작성되어 있어 도면 변 조 및 단지 내 필지분할을 둘러싸고 당시 공무원들의 개입 의혹이 짙게 대두되고 있다」는 내용도 설계도면을 적법한 범위 안에서 시행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준공 당 시 도면이 최종 확정도면이므로 사실과 다르다.

또한 「준공 당시 설계도면에 테니스장과 상가 옆 진입로 일대(주차장 부지)를 흙으로 교 묘히 매립, (주)예술인주택이 불법분할 소유권 이전, 반환요구」 내용은 늘어난 면적 1천3 백여평이 주민이 땅값을 부담하여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수개공과 대지 정산 과정에서 증가된 면적으로서 (주)예술인주택에서 매입한 추가면적이며, 사업 승인시 사업 부지면적 67,500㎡를 지적분할하였기 때문에 주민의 권리가 아니라 (주)예술인주택의 재산으로 정 당하게 취득한 것이며, 진입로 일대를 교묘히 흙으로 매립했다는 내용도 대지정리작업으 로 인하여 부토된 것이므로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

한국통신 勞組의 성당, 사찰 농성이
北의 조종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들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반론, 반박할 권리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5. 9. 30.자 결정 (95카기3524)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5년 9월 30일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과 조합원 도 씨 등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측에게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들은 위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반론할 권리가 있다」며 정정보도게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신청인들은 중앙일보가 1995년 6월 15일자 『「노조원들의 성당 - 사찰 농성, 북한에서 조종했다」 박 총장』제하의 기사에서 「노조원들이 성당과 사찰에 들어간 것은 북한이 조종한 것」이라는 서강대 박 총장의 발언을 인용보도하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문을 1면에 게재해줄 것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했다. 그러나 중재 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수용할 수는 있으나 1면에 게재할 수는 없다하여 불성립되자 (95서울중재 169) 신청인들은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定文

사 건 : 95카기3524 정정보도

신 청 인 : 1. 한국전기통신공사노동조합

서울 종로구

대표자 조합장 유

2. 도

안양시

3. 이

서울 동대문구

4. 박

경기 화성군

5. 박

군포시

6. 정

서울 노원구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안상운, 이상경, 김기중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홍 석 현

대리인 변호사 이 경 훈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행되는 일간신문 「중앙일보」의 제1면 제3, 4, 5단의 중앙좌측부분에 세로 3단 가로 5cm의 크기로, 그 우측에는 세로로 『「北韓의 조종에 따라 勞組員들 농성」 기사에 대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24급 고딕체활자로 2줄에 걸쳐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목록 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청구인을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위 기간만료 익일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각 금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같은 신청인들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일간 중앙일보에 별지목록 제2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목록 제3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제1항의 이행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금20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1995. 6. 15.자 제1면 제3 내지 7단의 중앙좌측부분에 『「노조원들의 성당 - 사찰농성, 북한에서 조종했다」 박 총장』이라는 제목으로, 「서강대 박 총장은 '이번에 노조원들이 성당과 사찰에 들어간 것은 북한이 조종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박총장은 14일 한림대 수요세미나에 참석해 <세계화 대비 인성 및 사상교육>이란 주제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공산세력이 이미 남한내 학생, 노동, 재야, 언론에 깊숙이 침투해 각종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고 말했다. 박총장은 또 '나는 북한의 정보를 구하는 루트를 가지고 있다' 고 밝힌 후 '북한이 이번에는 정치를 잡기 위해 6.27선거를 기점으로 본격화되는 지자체를 목표로 6월27일 전에 남한내 동조세력을 규합해 연대 총파업을 주도하고 오는 8월 15일에는 요인암살 및 중요 기물파괴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고 말했다. 박총장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며 '대학내 주사파들이 지난해에 비해 양적으로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각계 각층에 더 깊숙이 침투해 각종 파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전국 대학 학생회장의 90%가 주사파' 라고 주장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신청인 한국전기통신공사노동조합(이하 신청인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1982. 1. 6. 설립되어 위 공사 소속 근로자 약 62,000여명 중 신청인 도 , 이 , 박 , 박 , 정 (이하 「위 신청인들」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약 52,000여명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인 사실, 신청인 도 는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육홍보국장, 신청인 이 은 여성국장, 신청인 박 는 교섭국장, 신청인 박 은 임금국장, 신청인 정 은 서울지방본부 사무국장으로서 「위 신청인들」은 모두 신청인 노동조합의 핵심간부들인 사실, 신청인 노동조합은 정부의 통신정책에 반대하고 정부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일련의 행위가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응하여 투쟁하던 중, 조합장인 유 과 「위 신청인들」 및 다수 조합원들은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 곤란한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일부 조합원들을 보내 그곳에서 농성

을 전개하며 투쟁하기로 결정한 후 「위 신청인들」과 신청인 노동조합의 간부 등 총 13명이 1995. 5. 22.부터 1995. 6. 6.까지 명동 성당과 조계사에 들어가 농성을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신청인들은 위 성당, 사찰에서의 농성은 북한의 조종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들의 위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들은 위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사에 대하여 반론, 반박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정정보도의 내용으로서는 위 기사 중 신청인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서 별지 목록 제1기재 내용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들이 게재를 구하는 별지 목록 제3기재의 정정보도문 중 위 인정한 반론문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신청인들의 반론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정정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방법에 관하여는 위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 부분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간접강제신청부분에 관하여는 주문 제1항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30.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김 형 두
판사 신 광 렬

〈별지목록 제1〉 「北韓의 조종에 따라 勞組員들 농성」 기사에 대한 반론문

지난 1995. 6. 15.자 중앙일보 제1면 제3단 중간부분에 『「노조원들의 성당 - 사찰농성 북한에서 조종했다」 박 총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한국전기통신공사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성당과 사찰에서 농성한 것은 검찰과 경찰이 조합간부들을 구속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노사간 원만한 단체교섭을 위하여 한

것일 뿐 북한의 조종을 받아 한 것이 아니다.

정정보도청구인 한국전기통신공사노동조합,
도 , 이 , 박 , 박 , 정

〈별지목록 제2〉 신청인들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송달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중앙일보」 제1면 중간 부분에 별지 목록 제3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 활자로, 제목 부분은 80급 명조체활자로, 소재목 부분은 50급 명조체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딕체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목록 제3〉 신청인들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제 목 : 한국통신노동조합, 북한과 무관함 밝혀져

소 제 목 : 한국통신 조합원, 북한으로부터 조종받은 사실 없다.

본지 6월 15일자 1면에 실린 『노조원들의 성당 - 사찰농성, 북한에서 조종했다』는 제목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한국통신의 노사협상 과정에서 한국통신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출입한 것이 북한의 사전조종에 의한 것이라는 박 서강대 총장의 최근 발언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임이 밝혀졌다.

한국통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출입을 한 이유는 검찰과 경찰이 정의 행위와 무관한 사유로 조합간부들을 대량 구속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노사간 원만한 단체교섭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된 것이며, 조합원들이 북한의 조종을 받아 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한국통신노동조합은 그동안 헌법과 노동법에 따라 민주적인 조합운영과 자주적인 조합 활동을 하여 왔으며 조합의 운영이나 활동과 관련하여 북한이나 그 외 어떤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조종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본지의 미확인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한국통신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함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

정정보도신청인 한국전기통신공사노동조합,

도 , 이 , 박 , 박 , 정

□

국가전복의 底意가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의견에 불과하고,
노조 간부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는
신청인의 정정보도 요구는 이유없다

서울지방법원 1995. 9. 30.자 결정 (95카기3525)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5년 9월 30일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이 경향신문사 등 7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조선일보사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경향신문사 등 6개 언론사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신청인은 경향신문이 1995년 6월 15일자 11면 『한통 분규 안보차원 엄단』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국제언론인협회 한국위원장 등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밝힌 내용 중 「한국통신노조가 불법적인 노조행위를 계속해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전복의 의지가 있다」고 인용보도하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 왔고 국가전복의 저의를 갖거나 국가 안정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며 1995년 6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문제의 보도는 대통령의 담화를 그대로 보도한 것이고, 발언내용 또한 대통령 통치행위로 생각되어 정정보도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가 불성립되자(95서울중재155~162)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내용 중 사실적 주장은 “김 대통령은 ‘한국통신 노조가 지난해 5월부터 정부의 통신 정책에 대한 반대 주장을 전개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해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부분과, 경향신문의 '홍부총리는... 일부 불순 노조원을 중심으로... 한국통신에서 불법폭력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이라는 부분으로, 이에 대해서는 노조간부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나머지 보도내용은 대통령의 의견이나 논평 내지 비평에 관한 기사일 뿐 사실적 주장이라 볼 수 없다」며 위와 같이 결정했다.

決定文

사 건 : 95카기3525 정정보도

신 청 인 : 한국전기통신공사노동조합

서울 종로구

대표자 조합장 유

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안상운, 이상경, 김기중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최 종 료, 안 신 배

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 서정우, 백운재, 김 철

2.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병 관, 권 오 기

대리인 변호사 차 형 근

복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3.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종로구 태평로 1가 25

대표이사 손 주 환

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환

복대리인 변호사 김 시 현

4. 주식회사 세계일보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3의 1

대표이사 황 환 채

5.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우영, 방상훈

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장원찬, 최승인

6.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홍석현

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7.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장재근, 장재국

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 주 문 :**
1. 신청인의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2. 신청인의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주식회사 세계일보,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신청취지 :**
1. 신청인에 대하여
 -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그가 발행하는 일간 경향신문에 별지 목록 제1-1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 목록 제 1-2 기재 정정보도문을,
 - 나. 피신청인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그가 발행하는 일간 동아일보에 별지 목록 제2-1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 목록 제2-2 기재 정정보도문을,
 - 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는 그가 발행하는 일간 서울신문에 별지 목록 제3-1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 목록 제3-2 기재 정정보도문을,
 - 라. 피신청인 주식회사 세계일보는 그가 발행하는 일간 세계일보에 별지 목록 제4-1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 목록 제4-2 기재 정정보도문을,

마.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그가 발행하는 일간 조선일보에 별지 목록 제5-1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 목록 제5-2 기재 정정보도문을,

바.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그가 발행하는 일간 중앙일보에 별지 목록 제6-1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 목록 제6-2 기재 정정보도문을,

사.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그가 발행하는 일간 한국일보에 별지 목록 제7-1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 목록 제7-2 정정보도문을 각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약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신청인들은 제1항의 이행기간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각 매일 금 20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제1 내지7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신청인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위 공사라고만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1982. 1. 6. 설립된 노동조합인데, 위 공사 소속 근로자 약 62,000여명 중 약 52,000여명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

(2) 피신청인들은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일간 「경향신문」을,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일간 「동아일보」를, 주식회사 서울신문사는 일간 「서울신문」을, 주식회사 세계일보는 일간 「세계일보」를,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일간 「조선일보」를,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일간 「중앙일보」를,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일간 「한국일보」를 각 발행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들의 각 보도내용

(1)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경향신문」 1995. 5. 20.자 1면 머릿기사로 『한통분규 안보차원 엄단』이라는 대제목하에, 『김 대통령 「통신망 파업은 국가전복 저의」』라는 중제목으로, 『불법분규엔 즉각 공권력 3부 장관 회견』이라는 소제목으로 별지 목록 제1-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동아일보」 1995. 5. 20.자 1면 머릿기사로 『한통파업 위협 국가전복 저의』라는 대제목하에, 『「분규 차원」 넘어... 단호 대처』라는 중제목으로

로 별지 목록 제2-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3) 피신청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는 「서울신문」 1995. 5. 20.자 1면 머릿기사로 『한통 파업 위협 국가전복 저의』라는 대제목 하에, 『김대통령 노사분규 차원 이탈… 엄중 대처』라는 중제목으로 별지 목록 제3-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4) 피신청인 주식회사 세계일보는 「세계일보」 1995. 5. 20.자 1면 머릿기사로 『한통 분규 국가전복 저의』라는 대제목하에, 『김대통령 파업강행 땀 안보차원 조치』라는 중제목으로, 『군 통신요원 2천명 대기』, 『정부 통신망 장애발생하면 즉각 투입』이라는 소제목으로 별지 목록 제4-4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5)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조선일보」 1995. 5. 20.자 1면 왼쪽 상단부분에 『한통 파업 땀 국가위협 간주』라는 대제목 하에, 『김대통령 불법분규 엄벌 경고』라는 중제목으로, 『통신비상대책 마련 흥부총리』, 『3자 개입 단호대처 박통상』이라는 소제목으로 별지 목록 제5-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6)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중앙일보」 1995. 5. 20.자 1면 머릿기사로 『한통 사태 안보차원 대처』라는 대제목 하에, 『김대통령 「통신방해는 국가안전 위협」』이라는 중제목으로, 『국민생활 등 혼란 엄중 처리』, 라는 소제목으로 별지 목록 제6-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7)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한국일보」 1995. 5. 20.자 1면 머릿기사로 『한통 사태 국가안전 위협』이라는 대제목 하에, 『김대통령 파업강행 땀 법따라 엄단』이라는 중제목으로, 『향후 불법분규도 강력대처』, 『통신마비 없게 근로원 투입』이라는 소제목으로 별지 목록 제7-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2. 신청인의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위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별지 목록 제5-2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는 바, 우선 직권으로 이 부분 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18조 제4항, 제5항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율마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위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보도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제2회 중재기일(1995. 7. 3. 09 : 30)에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위 중재신청은 철회한 것

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신청인이 위와 같은 보도내용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정정보도심판의 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신청인의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주식회사 세계일보,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이하 위 피신청인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위 피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 2, 3, 4, 6, 7의 각 2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펴건대, 정정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인정될 뿐 그 기사의 내용이 가치판단 내지는 의견이나, 비평, 평가에 불과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위 피신청인들의 위 보도내용 중 신청인에 관한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위 피신청인들이 공통적으로 보도한 「김대통령은 ‘한국통신노조가 지난해 5월부터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해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부분과 피신청인 경향신문사의 보도내용 중 「홍부총리는… 일부 불순 노조원을 중심으로…한국통신공사에서 불법·폭력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이라는 부분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내용 부분은 김대통령이 국제언론인협회(IPJ) 한국위원회 임원들과의 오찬에서 당시 전개된 한국통신공사의 일련의 사태에 관하여 발언한 내용, 즉 국가의 통신망을 관장하는 위 공사가 파업을 하게 되면 국가의 통신망 마비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줌은 물론 입법, 행정,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의 업무가 마비되고 그에 따라 일대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현재 전개되는 위 공사의 일련의 행위들에 비추어 위 공사가 파업할 경우 이는 국가전복의 저의를 의심케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음을 피력하면서 정부는 위 공사의 향후 파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김대통령의 발언내용을 보도한 기사인 바, 위와 같은 보도내용은 김대통령의 위 공사의 현 사태 및 향후 파업을 할 경우에 대한 의견이나 논평 내지는 비평에 관한 기사에 불과할 뿐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그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은 국가의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함에 대하여 위 피신청인들은 위 보도내용은 김대통령과 홍부총리의 발언 내용 내지는 브리핑 자료를 보고 이를 그대로 인용게재한 것에 불과하여 위 피신청인들의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신청인이 게재를 요구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문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다룬다.

그러므로 살펴건대, 위 피신청인들이 타인의 발언 내용이나 정부의 브리핑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사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적 주장이라면 위 피신청인들 발행의 각 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위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는 이에 대하여 반박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고, 한편 소갑제9호증의 1, 2, 소을가제1호증, 소을바제1, 2호증, 소을사제2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조합의 노조위원장 유 외 노조간부 34명과 지방대의원, 지방간부 등 500여명은 1994. 7. 26. 대전 소재 위 공사 중앙연수원에 모여 정부의 통신구조개편사업에 반대하기 위하여 본사 및 정보통신부에서 집단농성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다음, 위 유, 노조지도위원 양, 노조조직처장 유 등을 포함한 노조 간부 및 일부 노조원들은 1994. 7.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공사 본사 1층 현관 통로와 승강기 입구 등을 점거하고,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 등의 구호와 노동가를 부르며 북, 팽과리 등을 시끄럽게 두들기면서 정보통신부 및 위 공사 임직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외부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며, 위 공사 본사 12층 내지 14층의 정보통신부 사무실 복도를 점거하여 농성을 하였고, 1994. 12. 19. 위 공사 본사 11층 회의실에서 한국이동통신 주식매각 특별이익금 처리 등의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한 위 공사 이사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 회의실로 통하는 복도를 점거하여 위 공사 이사들의 출입을 막고, 위 공사 본사 9층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되는 이사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그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였으며, 성명불상 대의원 1명이 출입문이 아닌 옆방 천장 환기통을 통하여 이사회장에 들어가 잠긴 출입문을 열어주어 노조원들이 침입, 이사들을 둘러싸고 고함을 지르며 이사회의 개최를 위력으로 방해하였으며, 1994. 12. 20.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이사회에서 노조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조원 200여명을 동원하여 위 공사 본사 사장실 앞 복도를 완전 점거한 다음 임직원들의 출입을 막아 업무 집행을 방해하였으며, 1994. 12. 21. 정보통신부 소속 직원인 천 이 장관 퇴진과 관련된 불법부착물을 철거하자 노조간부들이 위 천 의 팔을 쥐고 욕설을 퍼부으며 현관바닥에 넘어뜨려 동인에게 흉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1995. 4. 13. 노조에서 위 공사 본사 외벽에 부착한 현수막이 철거되자 노조 간부들이 정보통신부 장관실

부속실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 위 공사측은 1995. 4. 25. 위와 같은 여러 사유들을 들어 노조 간부 6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여 그 중 위 양 등 일부노조 간부들에게 1심에서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과 그 조합원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정부의 통신정책에 반대하고 그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내지는 불법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신청인의 이 부분 정정보도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 조선일보사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신청인의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주식회사 세계일보,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30.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김 형 두
 판사 신 광 렬

〈별지 목록 제1-1〉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송달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경향신문」 제1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 목록 제1-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 목록 제8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 목록 제1-2〉 정정보도문

대 제 목 : 한국통신노동조합, 국가전복 저의 없다.

중 제 목 : 한국통신노동조합, 불법파업을 하거나 불법파업을 결의한 사실 없다.

소 제 목 : 한국통신노동조합,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실 없다.

본지는 지난 5. 20.자 1면 머릿기사로 『한통분규, 안보차원 엄단/통신망 파업은 국가전

복 저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별지 목록 제9기재와 같이 정정합니다.

〈별지 목록 제1-3〉 보도내용

김영삼 대통령은 19일 「한국통신노조의 불법행위를 단순히 노사분규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한국통신노조가 지난해 5월부터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해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위원장 등 이사진 21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국가의 중추신경인 한국통신이 파업할 경우 국민생활에 주는 불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국가기관의 업무가 마비되며 신문 방송의 제작도 중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등 일대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대통령은 특히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어떤 경우든 법을 어기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파업과 같은 극한상황에 대비해 즉각 대체할 수 있는 요원을 훈련시켜 놓았으므로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불법적인 노사분규에 대해 신속히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9일 오후 이형구 노동부 장관, 경상현 정보통신부장관 등 3부 장관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불법행위관련자는 법에 따라 처리하며 노조원이 아닌 제3자가 개입할 경우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공사 사태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때에 일부 불순 노조원을 중심으로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공사에서 불법·폭력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전제, 앞으로 정부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은 공권력 투입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직장에 복귀하도록 여러 차례 권유했으나 소용없었다」면서 「이런 권유로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대답했다.

경장관은 현대자동차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한국통신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현대와 한국통신 사태는 다른 사안이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별지 목록 제2 내지 제7은 별지목록 제1-1, 1-2, 1-3 참조〉

〈별지목록 제8〉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덕채활자로, 대제목 부분은 검은색 바탕의 흰글씨의 140급 고덕채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각 80급 명조채활자로, 소제목 부분은 50급 명조채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덕채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목록 제9〉

한국통신노동조합이 불법으로 파업을 하거나 불법파업을 결의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또한 한국통신노동조합이 불법파업을 하거나 국가의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노동조합에 대하여 국가전복 저의가 있다고 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은 과장된 허위내용임이 드러났다.

한국통신노동조합은 그동안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였을 뿐 국가를 전복하려 하였거나, 노조의 활동으로 국가안전이 위협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통신노동조합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바에 따라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결정에 의하여 설립된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소속 조합원들의 지위와 권익에 직결되는 정부의 통신개방정책과 대미 통상협상 자세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서 통신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시해 왔다.

한국통신 노사는 지난 5월 중순경 3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절차 등의 논의를 마치고 5월 19일부터 임금과 단체교섭에 임할 예정이었다.

한국통신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상에 임하는 조합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5월 19일 전남대학교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노조는 쟁의에 돌입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쟁의를 유보하며, 5월 21일부터 10일간 냉각기간을 갖기로 하는 등 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유보하면서까지 국가통신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등 적법절차를 지켜 왔다.

또한 한국통신 노사간의 단체협상 과정에서 한국통신노동조합을 위하여 제3자가 개입 하거나 조종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정정보도신청인 한국전기통신공사노동조합

□

문제의 기사에 原告의 反論이 충분히 표현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1995. 10. 24.자 판결 (95가합41982)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는 1995년 10월 24일 전 보사부 약정국장 신 씨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문제의 기사 속에서 원고의 반론이 차지하는 위치, 그 게재된 양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반론이 충분히 표현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며 반론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신씨는 조선일보 1995년 4월 6일자 39면 「한-약 분쟁 유발 약사법 개정 담당국장에 속아 결재」 제하의 기사에서 전 보사부 장관 안필준 씨의 「당시 신 약정국장에 속아 93년 2월 한-약 분쟁을 유발시켰던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결재했다」는 편지내용을 보도하자, 신씨는 서신 내용에 「속아서 결재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 전 장관의 서신을 그대로 따온 것처럼 표현하여 자신이 장관을 속이고 결재를 받아낸 것으로 보도했다며 1995년 4월 1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했다(95서울중재88).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반론을 수용할 의사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중재대상기사에 잘못이 없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여 중재가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判決文

사 건 : 95가합41982 정정보도 등

원 고 : 신

과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 운 영

피 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 광 루, 장 원 찬, 최 승 인

변론종결 : 1995. 10. 10.

- 주 문 :**
1.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조선일보의 모든 판 제 39면(제1사회면) 기사란에 세로 4단 크기로 별지 1 기재 반론문을, 『반론문』이라는 제목은 32급 고딕체 활자로 위쪽에 가로로, 『약사법 개정안 결재 속 고 속인 일 없다』란 부제목은 16급 명조체 활자로 제목말에 가로로 각 기재 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1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문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을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별지 제2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는 판결.

이 유 :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 1995. 4. 6.자 제39면 기사란 중 우측 상단에 신청외 안필준의 사진과 그가 보냈다는 편지 사본과 함께 『한-약 분쟁 유발 약사법 개정 담당국장에 속아 결재』라는 제목과 『안필준 전 보사 일(日)서 편지 보내 주장』이란 소제목을 가로로 달고, 다시 그 아래에 『약국서 한약 완제품 판매 강조 당시 약정국장 강력허용 요청』, 『신 전 국장 「거짓보고 한 적 없다」』란 소제목을 세로로 달고 그 옆에 별지 기사문 기재와 같은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위 「조선일보」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 「조선일보」에 원고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위 기사는 피고의 사회부 기자 소외 김 , 김 이 1995. 3. 말경 한의사인

1995. 10. 24.

재판장 판사 박 장 우
판사 이 회 기
판사 김 주 형

기사문

93년 2월 한-약 분쟁을 유발시켰던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대해 당시 보사부 장관이던 안필준 씨(63·체일 중)가 「당시 신 약정국장에 속아 개정안에 결재했다」는 장문의 편지를 한 한의사 앞으로 보내와 파문이 일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 11조 1항 7호는 「약국내 한약장 설치 금지」 조항. 약사들은 10여년 전부터 「이 조항이 조제권은 약사에게 있다고 규정한 모법인 약사법과 배치된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으며, 이 조항의 삭제로 인해 약사들의 한약조제가 본격화 된 것.

5일 대한한의사협회 안 홍보이사가 공개한 편지에서 안 前 장관은 「보사부의 시행규칙개정 움직임을 안 당시 한의사협회장으로부터 처음 들었으며 그 후 신 前 국장에게 그런 기안을 하지 말도록 강력히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安씨는 그러나 신 前 국장이 「현재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황청심환 등) 공장제품을 팔도록 하는 이외 아무것도 없다」 「현재 수출까지 되고 있는 생약을 약국에서 판매한다는 것 뿐」이라며 강력히 결재를 요청했으며, 그는 이 말을 믿고 결재했다는 것이다. 그는 「오랜 將軍생활에서 감히 부하가 상관을 속이는 일은 상상치도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한의사에게 피해를 주었고, 부탁 한 번 받은 일도 없는 약사회의 로비를 받았다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신 前 국장은 「安 前 장관이 약사법을 개정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며 「安씨가 주장하는 대로 거짓보고를 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 安 전 장관은 93년 5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이 시행규칙 개정 시비와 관련, 경희대 한의대 학부형의 고소로 검찰에 소환될 형편에 처하자 귀국하지 않은 채 작년 7월부터 일본에 머물고 있다. 그는 본사 기자와의 국제전화통화에서 「매일 일지를 쓰는 습관이 있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다」며 「부하에게 속았다는 분하고 억울한 심정 때문에 체중이 50kg으로 줄었고 당뇨병까지 생겼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기소중지 상태인데 공부가 끝나면 들어가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정 수석부회장은 「문제된 시행규칙의 삭제가 약사회의 숙원과제로 여러번 보사부에 건의한 일은 있으나 安 前 장관이나 申 前 국장을 상대로 로비를 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별지 1〉 반론문

「약사법 개정안 결재 속고 속인 일 없다」

본보는 1995. 4. 6.자 39면 우측 상단부분에 『한-약 분쟁 약사법 개정 담당국장에 속아 결재』라는 제목 아래 「93년 2월 한-약 분쟁을 유발시켰던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대해 당시 보사부 장관이던 안필준 씨(63 ·)가 ‘당시 신 약정국장에 속아 개정안에 결재했다’는 장문의 편지를 한 한의사 앞으로 보내와 파문이 일고 있다. 安씨는 ‘오랜 將軍생활에서 감히 부하가 상관을 속이는 일은 상상지도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한의사에게 피해를 주었고, 부탁 한번 받은 일도 없는 약사회의 로비를 받았다는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주장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前 보사부 국장 신 씨는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은 13년간 사문화된 법조항을 법령정비 차원에서 정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약사의 한약조제판매 위험 여부심판청구에 대한 ‘약사는 한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다’는 1991. 9. 16.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었고, 부하직원이 상사를 속이거나 상사가 속아서 결재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안 前 장관의 편지는 한쪽의 이야기일 뿐이며 결코 안 前 장관을 속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정보도신청인 신

〈별지 2〉 반론문

「약사법 개정 담당국장에 속아 결재 사실과 달라」

전 보사부 약정국장 신 씨는 『한-약 분쟁유발 약사법 개정 담당국장에 속아 결재』 기사(본보 1995. 4. 6. 39면)와 관련 안필준 前 장관이 보냈다는 서신을 확인한 결과 담당국장에 속고 속아서 결재했다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신내용을 그대로 따온 것처럼 기사화한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1993. 3. 5.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7호 재래식 한약장 조항은 13년간 사문화된 조항을 법령정비차원에서 정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약사의 한약조제 판매 위험여부 심판청구에 대한 「약사는 한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다」는 1991. 9. 16.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었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결재받기까지 관련단체와의 협의조정내용을 안필준 당시 보사부 장관에게 상세히 보고하였으며, 정부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여러 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을 주무장관이 어느 특정단체의 부탁을 받았다고 하여 부하에게 그 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하라는 지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본인은 상사를 속인 일이 없고, 안 前 장관도 부하에게 속아서 결재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정보도신청인 신

□

반론 내지 반박보도문의 게재는 원래의 보도가 있었던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폐간된 경우에는 그 피신청인 적격을 상실하였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12. 14.자 결정 (93카합1011)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1995년 12월 14일 이 씨가 주간신문 '크리스천 한국' 발행인인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정보도의 신청은 원래의 보도가 있었던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기업을 피신청인으로 하고 그 반론 내지 반박보도문의 게재도 원래의 보도가 있었던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원래의 보도가 있었던 정기간행물인 '크리스천 한국' 신문이 폐간된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더 이상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 될 수 없어 그 피신청인 적격을 상실하였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피신청인이 발행했던 '크리스천 한국' 은 1993년 4월 28일자 18면과 19면에 걸쳐 『기하성 교단총합 왜 시비가 되나?』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밀린 봉급을 받아내기 위해 재단 이사장과 서로 짜고 원·피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하였으나(93서울중재105)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위 '크리스천 한국' 은 1994년 1월 1일부터 1995년 11월 16일까지 전혀 발행하지 아니하다가 1995년 11월 17일 폐간되었고

이후 신청인은 '크리스천 한국' 신문이 폐간되었으므로 그 신문이 아닌 '목양신문'에 정정보도를 하여줄 것을 요구했다.

決定文

사 건 : 93카합1011 정정보도

신청인 : 이
서울 종로구

피신청인 : 이
서울 영등포구

주 문 :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목양신문 1면 1단에 12포인트 활자로 2회에 걸쳐 게재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1 내지 3, 5, 각 호증, 소갑6호증의 1 내지 8, 소갑7호증의 1, 2, 3, 4, 소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참고인 이 의 진술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순복음교회는 '예수교대한하나님의 성회'와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의 양 교단이 분열되어 있다가 1991.경 통합을 추진하면서 양교단 내에 각기 통합을 주장하는 파와 잔류를 주장하는 파로 나뉘어 양교단 내에서 통합을 주장하던 파들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로 통합교단을 만들어 잔류측과 상호 대립하게 되었는데, 신청인은 위 통합 전의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에서 목사로 임직받아 1987. 4. 16. 부산순복음중앙교회에 담임목사로 있던 자로서 1989. 6. 1.부터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간사로 있는 자이다.

(2) 피신청인은 1992. 12. 14. 서울 영등포구 에
서 정기간행물인 '크리스천 한국' 신문을 창간하여 그 발행인으로서 공보처 장관에게 등록을 하였는 바, 위 '크리스천 한국' 신문은 대판 24면으로 매주 수요일에 발행되었고 전국의 기독교 신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수주간신문이다.

나. 피신청인의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1993. 4. 28. 자 위 '크리스천 한국' 신문 7호의 19면에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시리즈 2 교단·교권주의' 라는 제목 아래 신청인과 관련하여 "박 전 재단이 사장이 교회 재산을 재단에서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재단간사였던 이 목사를 부산순복음교회에 파송시켰다. 그러나 재단간사의 명분으로 당회장을 지내오던 이 목사는 교회 건물을 임의로 용도 변경하는 문제를 빚어 교인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는 내용과 "박, 이 목사는 교인 상대로는 불가능한 교회의 돈을 타내기 위한 일환으로 자기들끼리 짜고 원고와 피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나의 제스처지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하였다.

다. 신청인의 중재신청과 위 '크리스천 한국' 신문의 폐간

신청인은 위 기사가 게재된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1993. 6. 16. 이 사건 신청을 하였던 바, 위 '크리스천 한국' 신문은 1994. 1. 1부터 1995. 11. 16. 까지 전혀 발행, 납본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가 피신청인의 폐간신청에 따라 1995. 11. 17. 공보처 장관에 의하여 폐간수리되었다.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크리스천 한국' 신문이 폐간되었으므로 그 신문이 아닌 목양신문에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나. 정정보도청구권의 내용 및 본질

(1)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로 하여금 위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같은 법 제19조는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피해자의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법원에 그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3항은 발행인 등이 정정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등과 그 정정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같은 정기간행물에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위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그 발행인 등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반론 내지 반박권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판결 참조).

(3) 그렇다면, 위 정정보도청구권의 내용 및 정정보도의 절차에 관한 법규정, 그리고 위 정정보도청구권의 본질에 비추어 정정보도심판의 신청은 원래의 보도가 있었던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기업을 피신청인으로 하고, 그 반론 내지 반박 보도문의 게재도 원래의 보도가 있었던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원래의 보도가 있었던 정기간행물인 위 '크리스천 한국' 신문이 폐간된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더이상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 될 수 없어 그 피신청인 적격을 상실하였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14.

재판장 판사 김 태 훈
 판사 박 성 하
 판사 김 은 미

정정보도문

(1) 피신청인은 크리스천 한국 1993. 4. 28.자 18면 19면에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시리즈 2 『기하성 교단통합 왜 시비가 되나?』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박 전 재단이사장이 교회 재산을 재단에서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재단간사였던 이 목사를 부산순복음교회에 파송시켰다. 그러나 재단간사의 명분으로 당회장을 지내오던 이목사는 교회건물을 임의로 용도 변경하는 문제를 빚어 교인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는 내용 및 김 목사의 말을 인용 “박 , 이 목사는 교인 상대로는 불가능한 교회의 돈을 타내기 위한 일환으로 자기들끼리 짜고 원고와 피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나의 제스처지요”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본보의 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정정보도합니다.

(3) 이 목사는 재단간사 재임시 위 교회 담임목사로 파송된 것이 아니고 위 교회 담임목사로 파송된 2년 후 재단간사로 임명되었고, 위 교회당이 재단법인 소유로 되어 있어 박 이사장과 교회 재무, 회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신청인회사가 요구르트 광고를 하면서
의약품으로 혼동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기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인격적, 재산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신청인은
반박할 권리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6. 1. 3.자 결정 (95카기5706)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6년 1월 3일 신청인 파스퇴르 유업주식회사가 서울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심판소송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일간지인 서울신문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재산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신청인에게는 위 기사에 대하여 반론, 반박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며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사제품과 경쟁회사의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교묘한 표현을 사용하여 분쟁을 야기하여 그러한 분쟁사실 자체가 보도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존재와 상품에 대한 광고효과를 거두는 등 교묘한 광고수법을 쓰고 있는 바 이 사건의 정정보도신청도 이와 같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학계에서 신청인의 위 광고내용에 대하여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정정보도신청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이유없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1995년 9월 30일자 제23면에 『파스퇴르에 행정처분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는 29일 파스퇴르유업이 엔토로 요구르트를 광고하면서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관할 강원도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지시했으며 학계에서는 위 광고가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요구르트 광고를 하면서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95서울중재256).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중재대상기사는 보건복지부의 공문에 근거해 관계공무원들에게 보충취재 후 기사화한 사실보도이며, 조만간 파스퇴르측에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불성립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定文

사 건 : 95카기5706 정정보도심판

신 청 인 :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

강원 황성균

대표이사 조

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신청인 :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대표이사 손주환

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행되는 서울신문 제23면(사회Ⅱ)의 기사란에 중 상단 우측부분에 세로 3단 가로 6.5cm의 크기로, 그 상단 우측부분에는 가로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세로 2cm, 가로 5cm 지문의 흑발 컷 속에 56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고, 그밖의 여백에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신청인의 성명을 10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이를 10분 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

답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서울신문 제23면(사회Ⅱ)의 기사란 중 상단 중앙 부분에 세로 4단, 가로 18cm의 크기로, 그 중앙 윗 부분에는 가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세로 5cm, 가로 18cm 지문의 흑발 컷 속에 세로 2cm, 가로 1.2cm의 명조체활자로 게재하고, 그밖의 여백에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신청인의 성명을 본문활자로 2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 1.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서울신문의 1995. 9. 30.자 제23면(사회Ⅱ)의 제1 내지 8단의 우측부분에 “ ‘콜레스테롤 저하’ 광고 의약품과 혼동우려, ‘파스퇴르’에 행정처분명령”이라는 제목과 “복지부, 강원도에 지시, 엔토로 요구르트 판촉에 의약품어 사용 식품위생법규 위반”이라는 부제하에, “보건복지부는 29일 파스퇴르유업의 요구르트 광고가 식품위생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아울러 광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하라고 시달했다. 복지부는 파스퇴르유업이 최근 일부 언론매체에 엔토로 요구르트를 광고하면서 「질병을 갖지 않은 성인을 상대로 실시한 임상적 연구결과 유해콜레스테롤이 11.9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등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식품위생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엔토로 요구르트는 식품인만큼 의약품의 약효 등에만 사용하는 콜레스테롤 수치라든가 임상적 연구결과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파스퇴르유업이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엔토로 요구르트는 물론 사과, 파인애플 등 요구르트류는 모두 품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쟁업체와 학계에서는 파스퇴르유업의 광고가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신청인은 시유가공업, 버터, 치즈가공업, 분유제조업, 특수영양식제조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은 보건복지부가 1995. 9. 15. 강원도지사에게 대하여 파스퇴르유업의 엔토로 요구르트 광고 중 “세계적인 발명품”, “유해콜레스테롤이 11.96% 떨어집니다.” “임상연구결과”, “정상콜레스테롤치가 된다”라는 표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행정처분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직접 위 광고내용이 식품위생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 강원도지사에게 행정처분을 할 것을 지시한 것은 아니며, 한편 학계에서 엔토로 요구르트의 광고가 새로울 것이 없다고 반응을 보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일간지인 서울신문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재산

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신청인에게는 위 기사에 대하여 반론, 반박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는 위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서 별지 1 반론문의 내용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보건복지부가 위 광고내용이 엔토로 요구르트를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판단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소정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로 인정하여 15일의 품목류제조정지처분을 하라고 시달한 것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는 내용도 정정보도문으로 게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원래의 기사에는 15일의 품목류제조정지처분을 하라고 시달하였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위 정정보도내용은 반론권의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피신청인은, ① 신청인은 자사제품과 경쟁회사의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교묘한 표현을 사용하여 분쟁을 야기하여 그러한 분쟁사실 자체가 보도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존재와 상품에 대한 광고효과를 거두는 등 교묘한 광고수법을 쓰고 있는 바 이 사건의 정정보도신청도 이와 같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② 학계에서 신청인의 위 광고내용에 대하여 새로운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정정보도신청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없다.

4.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방법에 관하여는 위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부분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 수 등을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김 형 두
 판사 신 광 렬

〈별지 1〉 반 론 문

서울신문은 1995. 9. 30.자 제23면 상단 우측부분에 『파스퇴르에 행정처분명령』이라는 제목 아래 ‘보건복지부는 29일 파스퇴르유업이 엔토로 요구르트를 광고하면서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관할 강원도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한편 학계에서는 위 광고가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1995. 9. 15. 강원도지사에게 위 광고 중 “세계적인 발명품, 유해콜레스테롤이 11.96% 떨어집니다, 임상연구결과, 정상콜레스테롤치가 된다”라는 부분이 식품위생법 위반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하라고 한 것일 뿐 직접 위 광고가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식품위생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 행정처분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 한편 학계에서 위 광고가 새로울 것이 없다고 한 사실도 없다.

정정보도신청인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별지 2〉 정정보도문 (신청인들이 게재를 구하는 것)

1995. 9. 30.자 서울신문 제23면에 『“‘콜레스테롤저하’ 광고 의약품과 혼동우려” ‘파스퇴르’에 행정처분명령, 복지부, 강원도에 지시』라는 제목과 『‘엔토로 요구르트’ 판촉에 의약품어 사용 식품위생법규위반』이라는 부제로 보건복지부는 29일 파스퇴르유업의 요구르트 광고가 식품위생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관할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아울러 광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하라고 시달했다.

복지부는 파스퇴르유업이 최근 일부 언론매체에 엔토로 요구르트를 광고하면서 「질병을 갖지 않은 성인을 상대로 실시한 임상적 연구결과 유해콜레스테롤이 11.9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등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식품위생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엔토로 요구르트는 식품인만큼 의약품의 약효 등에만 사용하는 콜레스테롤 수치라든가 임상적 연구결과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11조는 「식품 등의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며,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로 인정된 때」는 1차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5일, 2차는 1개월, 3차는 3개월 동안 품목류제조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31일부터 이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종전에는 해당 품목에 대해서만 제조정지처분을 내리던 것을 같은 품목류는 모두 제조정지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파스퇴르유업이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엔토로 요구르트는 물론 사과, 파인애플 등 요구르트류는 모두 품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하나의 품목이 제조정지처분을 받더라도 같은 품목류는 그대로 제조할 수 있어 법규위반을 계속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쟁업체와 학계에서는 파스퇴르유업의 광고가 새로운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는 강원도에 대하여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의 “엔토로 요구르트” 광고 중 “세계적인 발명품”, “임상적 연구결과”, “유해콜레스테롤이 11.96% 떨어졌다”, “정상콜레스테롤치가 된다”라는 내용이 식품의 허위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확인하여 식품위생법 제11조 소정의 허위표시광고에 해당되면 행정처분을 하라고 한 것일 뿐 보건복지부가 위 광고내용이 엔토로 요구르트를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판단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4조 소정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로 인정하여 15일의 품목류제조정지처분을 하라고 시달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학계의 어느 누구에게도 파스퇴르유업의 엔토로 요구르트의 광고가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정정보도신청인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

단체와 구성원간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원에 대한 사실적 보도로 인하여 그 단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베뢰아 집단'이라는 표현은 피신청인측이 신청인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사용한 표현에 불과하다

서울지방법원 1996. 1. 8.자 결정 (95카기5440)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6년 1월 8일 교회(담임목사 김)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떤 단체와 구성원간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원에 대한 사실적 보도로 인하여 그 단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교회의 대표자 개인에 관한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교회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베뢰아 집단'이라는 표현은 독자들로 하여금 신청인교회가 신앙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마치 불순한 집단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는 바, 이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표현은 피신청인측이 신청인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사용한 표현으로서 위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기독신보'는 1995년 8월 19일과 26일, 9월 2일자 기사에서 『이단대책 이래도 되나』, 『베뢰아 집단 활개...기성교회 '충격』 등의 제목으로 신청인인 교회와 담임목사인 김 을 이단으로 보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신청인 교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95서울중재235).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교단이 신청인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데 근거한 보도'라며 정정보도를 거부,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定文

사 건 : 95카기5440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교회
서울 영등포구

대표자 담임목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한주, 한택근

피신청인 :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
서울 강남구 대치3동 1007의 3
대표자 이사 정석홍
대리인 변호사 김기열

주 문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신청인은, 피신청인 발행의 '기독신보'가 1995. 8. 19.자 제3면, 1995. 8. 26.자 제2, 3면, 1995. 9. 2.자 제2면의 각 기사에서 신청인교회의 광복50주년 기념 평화 통일희년대회 참석을 보도하면서 신청인교회의 대표자인 김 을 '김 목사' 라고 표기하지 아니하고 '김 씨' 라고 표기하고, 위 김 의 위 희년대회 공식직함이 희년대회 준비위원회 '부총재' 임에도 '부대회장' 이라고 표기하였으며, '기독만평' 이라는 삽화란에 '희괴한 일' 이라는 제목을 붙여 위 김 을 유령으로 그려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정정보도를 구하나, 어떤 단체와 구성원간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원에 대한 사실적 보도로 인하여 그 단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교회의 대표자 개인에 관한 위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교회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관한 정정보도청구는 신청인에게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이유없다.

신청인은 또한, 위 '기독신보'가 1995. 8. 26.자 제3면에 신청인교회 교인들의 위 희년대회 참석과 관련하여 '베뢰아 집단 활개...'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위 '베뢰아 집단' 이라는 표현은 독자들로 하여금 신청인교회가 신앙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마치 불순한 집단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는 바, 이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표현은 피신청인측이 신청인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사용한 표현으로서 위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8 □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김 형 두
판사 신 광 렬

속보기사가 게재되었으나 원래 보도에 대한 특정이 미흡하고 지면의 위치나 크기 등에 있어서 원래 보도와 균형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고, 속보기사의 내용이 원 보도내용 전부에 대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어, 이 속보기사만으로 이 사건 기사가 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 1996. 1. 10.자 판결 (95가합23258)

事實概要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1996년 1월 10일 타운 대표인 김 씨가 국제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국제신문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의 기사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 기사로 인하여 그의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비록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속보가 국제신문에 게재되었으나 그 기사는 원래의 보도인 이 사건 기사에 대한 특정이 미흡하고 지면의 위치나 크기 등에 있어서 원래의 보도와 균형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이 사건 기사내용 전부에 대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어, 이 속보기사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으로서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도 있다' 며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국제신문은 1995년 7월 17일자 27면 우측 상단부분에 『昌原 타운 붕괴위험』이라는 제목으로 타운은 불법 증축과 냉각탑 설치 및 용도변경을 하였고, 3 내지 5층 천장과 기둥 등에 심한 균열이 생겨 제2의 삼풍참사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건축물 안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95부산중재20).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1995년 7월 21자에 중재대상기사와 같은 크기로 『 타운 '안

전이상 없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으므로 정정보도에 응할 수 없다' 하여 불성립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決文

사 건 : 95가합 23258 정정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김

창원시 중앙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호

피신청인 : 주식회사 국제신문(國際新聞)

부산 연제구 거제동 76의 2

대표이사 남 정 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무근

변론종결 : 1995. 12. 13.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27면 이상의 지면으로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자의 국제신문 제27면의 기사란 중 우측 가장자리 최상단 부분에 세로 3단, 가로 8cm의 크기의 박스기사 형태로, 윗 부분에는 가로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1 호 고딕체활자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가로로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문 및 정정보도신청인 성명을 6호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 송달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국제신문 27면(사회면) 머릿기사로 2일간 연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 1.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국제신문의 1995. 7. 17.자 제27면 우측 상단 부분에 “昌原 타운 붕괴위험”이라는 큰 제목 하에, “慶南도 진상조사, 감리 건축기사가 진정서”라는 작은 제목과 “不法중추·냉각탑 설치 용도변경, 3~5층 천장기둥 등 심한 균열, ‘제2삼풍’ 慘事 우려”라는 작은 제목을 붙여서 별지 3.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기사’라고 부른다)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소갑제5호증 내지 소갑제8호증, 소갑제10호증, 소갑제12증, 소을제5호증의 1, 소을제 6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증인 김 , 강 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

면, 이 사건 기사에 게재된 타운은 창원시 지상에 건축된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지붕 지하 4층, 지상 18층 연건평 33,850.655㎡의 업무, 위락, 근린생활, 숙박(관광호텔)시설 등 복합용도의 건축물로서 그 건물의 약 65% 정도는 신청인이 대표인 타운 총괄관리단에서 직영하고 있고, 오피스텔 300호실은 분양되어 입주자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그 외 약 150명 정도의 소규모 상인들이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은 위 타운의 건축주이자 위 타운 총괄관리단의 대표자인 사실,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신청외 강 은 국제신문사 제2사회부 소속으로 창원에 주재하면서 경남도청에 출입하여 취재를 하는 기자인데,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 이틀 전인 1995. 7. 15.경 경남도청 기자실에 들러 그 내용이 “위 타운이 무단증축,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이 되어 그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그 건축주인 신청인을 고발한다”는 취지인 신청외 김 명의의 같은 해 6. 5. 자로 된 진정서(소갑제5호증)을 본 다음, 위 김 에 대한 확인 또는 위 타운 현장조사 등 위 진정서 내용에 관한 확인절차도 없이 위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실, 위 진정서에는 작성명의자가 타운의 현장시공감리를 담당한 건축기사 김 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타운의 현장시공감리를 담당한 건축기사 중에는 김 라는 사람이 없는 사실, 이 사건 기사가 국제신문에 보도된 다음 위 타운 입주상인들이 피신청인에게 거센 항의를 하자 피신청인은 같은 해 7. 21.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속보의 형식으로, 큰 제목을 “ 타운 안전 이상 없다”로 하고 작은 제목을 “설계감리사·건축사 등 합동 1차조사 건물구조 등 균열없어”로 하여 별지4.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소명된다.

2. 위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국제신문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 기사로 인하여 그의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비록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속보가 국제신문에 게재되었으나 그 기사는 원래의 보도인 이 사건 기사에 대한 특정이 미흡하고 지면의 위치나 크기 등에 있어서 원래의 보도와 균형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이 사건 기사내용 전부에 대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어, 이 속보기사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으로서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국제신문에 별지 1. 과 같은 반론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 보도내용이 위 강 이 위 김 및 경남도청에 직접 알

아보는 등 기사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다음 게재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상 신청외 김의 진술서 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신청인 자신의 사실주장에 관한 기사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한 소명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기사의 게재경위가 설사 피신청인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할 수 없고, 나아가 피신청인이 위 진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내용이 국제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는 이미 국제신문의 사실에 관한 보도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없다.

4. 위와 같은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게 된 경위 및 그 후의 사정,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부분의 크기, 비록 미흡하나마 같은 해 7. 21.자로 다시 이를 해명하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된 점, 정정보도문의 글자 수 등을 종합하면, 정정보도문의 크기에 관하여는 세로 3단, 가로 8cm의 크기로 하되, 윗부분에는 가로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1호 고딕체로, 그 나머지 여백에 가로로 반론문 및 정정보도신청인 성명은 6호 명조체 본문활자로 게재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신청인은 정정보도의 내용에, 이 사건 기사는 취재원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타운에 대한 현장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잘못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달라고 구하나,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보도내용에 대하여 반론 내지 반박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반론 내지 반박은 원래 보도된 기사를 반박하기 위한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한 그 정정보도문 게재횟수에 관하여 2회로 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에 있어 미흡하나마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속보기사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반론문게재횟수는 1회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 10.

재판장 판사 서 현 석
판사 장 흥 선
판사 이 규 홍

닥과 건물전면 기둥에 심하게 금이 가 붕괴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따르면 타운은 신축 당시 창원시로부터 지하 4층 지상 17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종합건설에서 건물골조공사 완료 후 건축주가 공사를 직영하면서 18층으로 증축했으며 설계사무소에서는 구조계산을 17층으로 했다는 것.

또 지난 89년 착공시에는 건물용도가 오피스텔 건물이었으나 분양이 되지 않자 판매시설과 관광호텔로 변경, 건축주 임의로 지상 6~11층까지 무단 불법공사를 해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탁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 복합건물로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특히 “지하 2층의 볼링장은 레인을 추가하기 위해 기둥 5개의 일부를 절단,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위험천만”이라면서 “지상1층 출구는 설계 당시 건물하중을 줄이기 위해 유리벽으로 설치, 좌우측 상가매장이 보이도록 설계되었으나 건축주가 공사마감시 임의로 호텔출입문을 만들기 위해 조적마감을 한 후 외부를 대리석으로 변경 시공해 건물의 중앙하중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호텔부분인 6, 7, 17, 18층은 인테리어 공사시 건물골조인 철골보에 구멍을 뚫어 배관이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 천장높이를 높였으므로 원상복구 후 보강공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별지 4〉 국제신문 1995. 7. 21. 자 기사내용

창원시내 최대 복합건물인 창원시 ‘ 타운’ 은 건축물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경남도의 조사결과 나타났다.

21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 건물의 설계감리자인 부산 ‘ 라인’ 의 유 차 장(43)과 변경설계자인 서울의 종합건축사사무소인 ‘ 그룹’ 의 건축사 황 소장(45), 그리고 시공자인 그룹계열사인 (주) 의 박 건축대리(44)를 불러 건물안전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건물구조가 일반건축공법인 철근콘크리트와는 달리 H빔 철골철근콘크리트공법을 사용해 건물자체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도는 이와 함께 현장점검을 통해서도 타운의 건축물구조와 기초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건축물안전에 이상이 있다는 진정을 받았으나 △ 당초 지하 5층 지상 17층 구조를 지하 4층 지상 18층으로 변경한 것은 공사하던 중 암반이 나와 지하를 4층으로 하는 대신 지상을 18층으로 한 것이며 △ 지하 3층 지상 5층 천장바닥과 건물전면기둥의 균열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 건축주인 측도 건축물 신축 당시 기초공사를 특별히 보강한데다 지하 암반층이 두터워 건축물 안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 사건 방송은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원보도의 내용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는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그 정당한 이익이 없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6. 1. 11.자 결정 (94카합1017)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 1민사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1996년 1월 11일 기도원 목사 강 씨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PD수첩」에서는 가 의 실명 경위를 설명하는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신청인의 주장(가 이 자해하여 오른쪽 눈을 실명하였다는 취지)이 방송되었으므로, 방송을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방송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가 이 병원에서 투신하여 나머지 눈마저 실명하였다'는 취지의 정정보도 요구는 원보도의 내용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어서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MBC-TV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의 수용시설인 기도원의 실태를 다루면서 1994년 3월 15일 『충격보고, 정신질환자 기도원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이 기도원에서 요양 중인 을 치료한다면서 눈을 누르고 폭행하며 안수하여 실명케 하였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고, 같은 달 22일 『충격보고Ⅱ 난립하는 기도원, 그 실상은』 제하의 방송에서는 기도원에서 요양 중인 환자가 사망

하였는데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매장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고(94서울중재80)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보도내용에는 신청인측의 해명도 포함되어 있으며 차후 요양원 실태를 좀 더 깊이 있게 취재하여 이를 방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때 가서 신청인측의 반론도 함께 방송해 줄 수 있다'고 주장, 불성립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定文

사 건 : 94카합1017 정정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강

현재주소 소재불명

최후주소 충남 태안읍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강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경

주 문 :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서를 송달 받은 후 처음 방송되는 “피디(PD)수첩”의 방영 시작 전 별지 정정보도문을 그 기재와 같이 보도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1, 8 각 호증, 소을3, 8, 9 각 호증의 각 기재 및 참고인 노 의 진술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에 속한 목사로 충남 태안군 소재 산 속에 기도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피디(PD)수첩”이라는 프로를 방송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방송내용

피신청인은 1994. 3. 15. 및 같은 달 22.에 “피디(PD)수첩”이라는 프로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수용시설인 기도원의 실태와 만행을 다루면서, 1994. 3. 15. “충격보고, 정신질환자

기도원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이 위 기도원에서 요양 중인 신청외 가 을 치료한다면서 위 가 의 눈을 누르고 폭행하며 안수하여 실명케 하였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고, 같은 달 22.자 “충격보고(Ⅱ) 난립하는 기도원, 그 실상은”이라는 제목으로 위 3. 15.에 방송된 위 가 에 대한 화면을 다시 비추면서 ‘가 이 기도원에서 안수 도중 오른쪽 눈을 실명하였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고, ‘위 기도원에서 요양 중인 신청외 김 이 사망하였는데, 기도원 측은 환자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리해서 공동묘지에 묻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다. 신청인의 중재신청

신청인은 위 방송이 보도된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1994. 5. 10.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정정보도를 하여줄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 살펴본다.

나. 위 가천을 관련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신청인은, 위 가 은 동인이 자해를 하여 오른쪽 눈을 실명케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위 가 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허위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의대, 소을 3호증의 기재 및 참고인 노 의 진술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3. 22.자 방송은 위 3. 15.자 방송의 후속 프로로서 위 가 에 대하여 동인 주장의 실명 경위를 간략히 설명하고, ‘위 3. 15.자 방송이 나간 뒤 원장(신청인)은 지난 주 방송 중 기도원에서 눈이 멀었다는 위 가씨 관련 방송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해명 기회를 달라고 요구한다’는 사실을 방송하고 신청인이 직접 ‘위 가 이 자해하여 자기 눈을 멀게 하였다, 증인이 100명도 넘는다’고 말하는 것을 방송하고, ‘목사님(신청인) 말씀은 가씨가 자해한 것이다’ 등의 방송을 한 뒤 다시 신청인의 말을 종합하여 신청외 노 이 ‘원장(신청인)의 말로는 가씨가 스스로 멀쩡한 눈과 이를 뽑았는데, 방송이 일방적으로 정신질환자 이야기만 방송하였다는 주장’을 한다는 취지로 방송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위 3. 22.자 “피디(PD)수첩”에서는 위 가 의 실명 경위를 설명하는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신청인의 주장(가 이 자해하여 오른쪽 눈을 실명하였다는 취지)이 방송되었으므로, 위 3. 22.자 방송을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방송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가 이 병원에서 투신하여 나머지 눈마저 실명하였다’는 취

지의 정정보도 요구는 원보도의 내용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어서 결국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그 정당한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 망 김 관련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1) 다시 신청인은, 위 망 김 이 사망하자 기도원 측은 그 가족을 찾기 위하여 입원시의 주소지인 '성남시 '로 연락하였으나 이사하고 없어 다시 '서울 성동구 '로 찾아갔으나 다시 부산으로 이사하여 주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별지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장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소갑3, 11, 각 호증, 소갑1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참고인 최 의 진술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소갑2, 11, 13 각 호증의 각 기재 및 소갑10호증의 일부기재(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고, 오히려 소을5호증의 기재와 소갑10호증의 일부 기재 및 참고인 노 의 진술,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위 망 김 의 처는 1988. 8. 27.경 위 망 김 을 기도원에 맡긴 후 같은 해 9. 8. 기도원으로 면회를 갔을 때, 그 무렵 자신이 성남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간다면서 신청인에게 위 성남의 주소와 함께 위 망 김 의 아버지인 신청외 김 이 거주하는 서울 하왕십리 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고, 위 전화번호는 신청인이 보관하는 주소록에 기재된 사실, 위 김 은 1982. 10. 13. 이후 사망시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위 망 김 의 모인 신청외 남 이 위 주소지에 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렇다면, 위 망 김 의 가족이 이사하여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위 망인을 변사자로 처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위 망 김 에 대하여 '1988. 10. 9. 11:30경 대전지방 검찰청 서산지청 2호 검사의 지휘하에 서산경찰서 경찰관의 입회하에 부검하였고, 장암으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후 태안군청의 허가를 받아 이장한 것으로 정정보도하라'는 부분은, 원 방송 내용이 위 망 김 의 가족에게 위 김 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동인을 매장하였다는 것에 그 주안점이 있고, 그 후 처리과정은 원 방송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신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그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결국 신청인의 위 정정보도신청도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11.

재판장 판사 김 태 훈
판사 박 성 하
판사 김 은 미

정정보도문

(1) 피신청인은 1994. 3. 22. “MBC PD수첩”에서 강 의 기도원에서 요양 중인 환자가 사망하였는데 환자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리해서 공동묘지에 묻었다는 취지의 방송은 사실과 다르고, 위 기도원에서 요양 중인 환자는 김 이고 위 환자가 사망 후 기도원에서 가족 주소지로 연락하였으나, 가족들이 이사하여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경찰에 변사자로 신고하였고, 1988. 10. 9. 11:30경 대전지방 검찰청 서산시청 2호 검사의 지휘하에 서산경찰서 경찰관의 입회하에 부검하였고, 장암으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후 태안군청의 허가를 받아 이장한 것으로 정정보도하고,

(2) 피신청인이 1994. 3. 22. “MBC PD수첩”에서 강 가 강 의 기도원에서 요양 중인 가 의 두 눈을 누르고 폭행하며 안수하여 실명하였다는 취지의 방송은 사실과 다르고, 위 기도원에서 가 이 정신착란 증세로 소리를 질러 모두 놀라 일어나 보니 가해자의 손에 피가 묻어 있어 천안 병원에 후송하였는데 며칠 후 다시 발작 증세가 일어나 3층 병동에서 뛰어 내려 완전실명된 것임을 정정보도합니다. □

종로구의회 의원 해외연수를
비밀리에 진행한 적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할 소명자료를 피신청인이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1996. 1. 15.자 결정 (95카기6604)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6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의장 김)가 종로저널(발행인 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심판 소송에서 「신청인의 정정보도신청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소명 자료가 없다」며 정정보도인용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은 종로저널 1995. 10. 30.자 3면 『모두들 제 발이 저리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종로구의원들의 해외 연수 계획이 아무도 모르게 구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만 알면서 진행되어 의아심을 갖게 한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자, 의회에서 3차에 걸쳐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전 의원 모두에게 설명회를 갖고 공개적으로 신청을 접수했다며, 1995년 11월 2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5서울중재282). 그러나 피신청인측이 의원들의 해외 연수결과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도해 줄 용의는 있으나 신청인이 요구하는 사과성 정정보도를 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중재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決定文

사 건 : 95카기6604 정정보도심판

원 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

대표자 의장 김

피신청인 : 이

서울 종로구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주간 이내에 발행되는 종로저널 제3면 기사란 중 우측 상단 부분에 가로 7cm, 세로 11cm의 크기로, 위 쪽에는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50급 고딕체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신청인의 이름을 12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 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종로저널 제3면 우측 상단에 별지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3단에 걸쳐 제목은 본문 기사 제목 활자 크기로, 내용은 본문 활자 크기로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 1.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신문인 종로저널의 1995. 10. 30.자 제3면의 우측 부분에 『모두들 제 발이 저리는 모양이다』라는 제목 하에 「종로구 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 차원으로 유럽 시찰을 다녀온다. 오는 11월 1일부터 약 10일간의 일정으로 유럽 여러 나라의 도시 행정 및 지방자치 실태를 파악 및 견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의원들의 이러한 해외 연수 계획은 그 동안 아무도 모르게 구의원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만이 알고 진행되어 의아심을 갖게 한다. 모 구의원에게 해외 연수 내용을 묻자 모 구의원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철저히 보안 유지를 했는데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라는 반응을 보였다. 연수 내용은 고사하고 오히려 보안(?)이 새나간 원인처가 어디냐고 추궁을 당했다. 또 모 구의원 역시 '모른 척 하라. 좋게 생각해 주고 내버려둬라' 하는 식의 부탁성 조언도 들었다. 구의회 사무국도 마찬가지이다. 구의원들의 나중 질책이 두렵기만 한 듯

‘우리 공무원들이 무얼 아느냐? 구의원들이 시키는 대로만 할 뿐 할 말이 없다. 의원들이나 의장에게 물어보라’는 식으로 답변을 피한다. 모두들 제 발이 저리는 모양이다」라는 내용의 칼럼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종로저널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는 위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서 별지 1. 반론문의 내용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종로저널이 ‘모두들 제 발이 저리는 모양이다’ 라고 하여 종로구 의회 의원 모두가 마치 잘못이 있는 것처럼 비취지게 표현을 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여 잘못된 보도를 한 것임을 밝힌다」라는 내용도 정정보도문으로 게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모두들 제 발이 저리는 모양이다」라는 기사 부분은 칼럼 필자가 자기의 의견을 나타낸 주관적인 가치판단 부분에 불과하고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는 신청인의 반론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피신청인은, 위 기사의 내용은 확인된 사실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 신청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소명 자료가 없다.

4.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 방법에 관하여는 위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 부분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 수 등을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15.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김 형 두
 판사 신 광 렬

〈별지 1〉 반론문

종로저널은 1995. 10. 30.자 제3면 우측 부분에 『모두들 제 발이 저리는 모양이다』라는 제목 하에 「종로구 의원들의 해외 연수 계획이 아무도 모르게 구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만 알면서 진행되어 의아심을 갖게 한다. 모 구의원에게 묻자 ‘어떻게 알았느냐. 보안유지를 했는데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의 칼럼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종로구 의회는 구의원의 해외 연수를 비밀리에 진행한 적이 없고 공개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하였으며, 구의원들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다.

정정보도신청인 종로구 의회

〈별지 2〉 정정보도

서울시 종로구 의회는 종로저널이 1995. 10. 30.자 3면 저널 칼럼에서 『모두들 제 발이 저리는 모양이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당 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종로저널은 위 보도에서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구의원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만이 알고 진행되어 의아심을 갖게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타지역 신문(종로 신문)과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된 사실을 종로저널에서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며, 「모 구의원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철저히 보안 유지를 했는데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 종로구 의회 의원들이나 사무국 직원들 등 누구도 종로저널에게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었으며, 또한 「모두들 제 발이 저리는 모양이다」라고 하여 종로구 의회의원 모두가 마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비취지게 표현을 하는 등 종로저널은 사실을 왜곡하여 잘못된 보도를 한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

기사에서 신청인들이 직접 지명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일간신문들에는 구속자 명단이 실명으로 보도되었으므로, 신청인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구속자 13명 중에 신청인들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들은 기사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서울지방법원 1996. 1. 25.자 결정 (95카기5816)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6년 1월 25일 '5·1 동맹사건'으로 구속된 국외 5인이 조선일보와 세계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각 기사에서 신청인들이 직접 지명되지는 않았으나, 신청인들은 각 기사에서 말하는 '5·1 동맹'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13명 중에 포함되고, 위 '5·1 동맹' 사건과 관련한 경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라 다른 일간신문들에는 신청인들을 포함한 13명의 구속자 명단이 실명으로 보도되었으므로, 신청인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위 각 기사에 보도된 구속자 13명 중에 신청인들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들은 기사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또한 각 기사로 인하여 그 인격적 법익도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들에게는 각 기사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인정한 반론 이외에 신청인들이 구하는 나머지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거나, 원문기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 또는 원문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는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조선일보와 세계일보는 각각 1995년 9월 5일자에 『'5·1 동맹' 13명 구속』과 『主思派 조직 '5·1 동맹' 적발』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들이 노동현장에 위장취업해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들은 위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고(95 서울중재248, 249), 중재결과 피신청인측은 신청인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발표내용에 근거한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불성립되었다. 신청인들은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定文

사 건 : 95카기5816 정정보도

신청인 : 1. 국

서울 금천구

2. 김

인천 남구

3. 김

서울 구로구

4. 이

서울 노원구

5. 조

서울 종로구

6. 한

서울 강서구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우영, 방상훈
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장원찬, 최승인
2. 주식회사 세계일보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3의 1
대표이사 황환채
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신필중

- 주 문 :**
1. 피신청인 조선일보사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행되는 일간신문 '조선일보'의 제39면(또는 사회면) 제8, 9단의 중앙좌측부분에 세로 2단, 가로 6cm의 크기로, 그 우측 윗부분에는 세로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20급 고딕체활자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목록 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청구인을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세계일보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행되는 일간신문 '세계일보'의 제31면(또는 사회면) 제 8, 9단의 중앙좌측부분에 세로 2단, 가로 6cm의 크기로, 그 우측 윗부분에는 가로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32급 고딕체활자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목록 제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청구인을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3.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신청인들의, 나머지는 피신청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발행하는 '조선일보' 1995. 9. 5.자 제39면(사회면) 6단 내지 10단의 왼쪽부분에 "5·1 동맹 13명 구속"이라는 대제목과 "간첩 이 남로당 잔존조직"이라는 소제목으로 "거물급 간첩 이 (70·북한 정치국후보위원·월북)이 구축했던 '남한조선노동당'의 전위단체 '5·1 동맹'이 남한조선노동당의 와해 직후 지하로 잠적한 뒤 2년 11개월만에 실체가 드러나 핵심 조직원 14명이 검거됐다. 서울 경찰청 보안부는 4일 '남한조선노동당의 지령 아래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의 편지 및 3천8백여만원의 정성금 전달, 한민전 문건의 수도권 배포, 군사기밀탐지 등의 활동을 해왔고 92년 10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직후 지하로 잠입해 노사분규 개입, 범민련 개입을 통한 사

회불안 조장 등의 이적행위를 해온 반국가단체 '5·1 동맹' 조직원 14명을 붙잡아 이 중 조 씨(28·여·고려대 지리학과 제적) 등 1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구속된 13명 전원이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은 J실업 택시기사, H유리 회사원, S수산 직원, 모방송 편송국 사원 등으로 위장취업한 후 활동을 벌여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피신청인 주식회사 세계일보가 발행하는 '세계일보' 1995. 9. 5.자 제31면(사회면) 8단과 9단의 좌측부분에 "주사파 조직 '5·1 동맹' 적발"이라는 대제목과 "경찰, 북지령청취-분규조종...13명 구속"이라는 소제목으로 "서울경찰청은 4일 주사파지하조직 '5·1 동맹'을 적발, 조직책 조 씨(가명·27·여·고려대졸) 등 13명을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구성 및 가입 등)혐의로 구속하고 서울 강서구 염창동 S사 노조사무국장 김모 씨(2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기관지 '새날의 주인'과 강령-규약을 담은 문건 등 2백 33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이 단체의 나머지 조직원 20여명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91년 10월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국가건설을 지향하는 '5·1 동맹'을 결성, 김일성부자에 대한 '충성의 편지'와 '정성금' 및 '농업통계 연감' 등 국가기밀자료를 최 씨(39·간첩혐의로 복역 중)에게 넘겨주고 북한지령청취 등 반국가활동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92년 남한조선노동당이 당국에 적발되자 노동현장에 침투, '남한조선노동당 구속자후원회'를 조직해 자금모금과 노조활동개입을 통해 S사 등의 노사분규를 조종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북한 정치국후보위원인 이 (70·여·월북)이 총책으로 활동했던 '남한조선노동당'의 중부지역당 총책인 황 (39·구속)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단체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구속자 조 , 한 (32·여·고려대졸), 권 (27·고려대 4년 제적), 신 (31·인천대졸), 김 (31·서울시립대졸), 정 (26·여·충신대졸), 현 (29·고려대졸), 이 (30·인천대 4년 제적), 국 (26·서울대졸), 이 (31·인천대졸), 이 (28·서울대졸), 정 (27·인천대졸), 김 (29·여·인천대졸)"이라는 기사가 게재된 사실, 피신청인들은 경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라 구속자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보도하거나 직업만을 사용하여 보도하였는데, 신청인들은 모두 위 '5·1 동맹'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13명 중에 포함되고, 위 '5·1 동맹' 사건과 관련한 경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라 1995. 9. 5. 자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에는 신청인들을 포함한 13명의 구속자 명단이 실명으로 보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신청인들이 위 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주체로서의 피해자인지 여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주체로서의 피해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었거나 그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 위 각 기사에서 신청인들이 직접 지명되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위 각 기사에서 말하는 위 '5·1 동맹'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13명 중에 포함되고, 위 '5·1 동맹' 사건과 관련한 경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라 1995. 9. 5.자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에는 신청인들을 포함한 13명의 구속자 명단이 실명으로 보도되었으므로, 신청인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위 각 기사에 보도된 구속자 13명 중에 신청인들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들은 위 각 기사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되고, 또한 위 각 기사로 인하여 그 인격적 법익도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법 소정의 피해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들에게는 위 각 기사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는 위 각 기사 중 신청인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서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하여는 별지목록 제1. 반론문의, 피신청인 주식회사 세계일보에 대하여는 별지목록 제2. 반론문의 각 내용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신청인들은 위 인정된 반론 이외에도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이 구하는 나머지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거나, 원문기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 또는 원문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신청인들은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것이어서, 신청인들의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정정보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5.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방법에 관하여는 위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 부분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 수 등을 종합하면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25.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김 형 두
판사 신 광 렬

〈별지 제1〉 반론문

지난 1995. 9. 5. 자 조선일보 제39면에 “5·1 동맹 13명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은 남한조선노동당의 잔존조직인 5·1 동맹의 조직원 13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1992년 10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직후에 지하로 잠입하여 노사분규에 개입하고 위장취업을 해 왔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정정보도청구인들은 ‘5·1 동맹’ 사건으로 구속된 것은 사실이나 생계를 위하여 직장에 취직하여 근무하였을 뿐이지 위장취업을 하거나 노사분규에 개입하지 않았다.

정정보도청구인 국 , 김 , 김 , 이 , 조 , 한

〈별지 제2〉 반론문

지난 1995. 9. 5. 자 세계일보 제31면에 “주사파 조직 ‘5·1 동맹’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은 주사파 지하조직 5·1 동맹을 적발, 조직원 13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1992년 남한조선노동당이 당국에 적발되자 노동현장에 침투, 노조활동개입을 통해 노사분규를 조종해 왔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정정보도청구인들은 ‘5·1 동맹’ 사건으로 구속된 것은 사실이나 생계를 위하여 직장에 취직하여 근무하였을 뿐이지 노동현장에 침투하거나, 노조활동개입을 통해 노사분규를 조종하지 않았다.

정정보도청구인 국 , 김 , 김 , 이 , 조 , 한

□

피신청인이 서울지방경찰청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뉴스 기사를 작성하여 방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6. 5. 9.자 결정 (95카합4287)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심명수 부장판사)는 1996년 5월 9일 '5·1 동맹사건'으로 구속된 국외 8인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를 방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내용은 서울지방경찰청의 보도자료의 범위 내에서 요약 보도한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정정보도신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정보도청구권은 피해자가 원문보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위 보도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뉴스 기사를 작성하여 방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공사가 1995년 9월 4일자 KBS-TV 9시뉴스 프로그램에서 신청인들이 노동 현장에 위장취업해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신청인들은 위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하였다(95서울중재252). 중재결과 중재 불성립 되어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定文

사 건 : 95카합4287 정정보도

신청인 : 1. 국
서울 금천구
2. 김
인천 남구
3. 김
서울 구로구
4. 이
서울 노원구
5. 이
서울 중구
6. 정
서울 중랑구
7. 조
서울 종로구
8. 한
서울 강서구
9. 현
대전 대덕구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홍두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은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방송되는 KBS 제1텔레비전 9시 뉴스 프로그램의 중간 부분에 텔레비전 화면 오른쪽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신청인들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KBS 제1텔레비전의 1995. 9. 4. 9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소위 ‘5·1 동맹’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 반국가활동을 벌여온 13명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92년 간첩단 사건으로 적발된 남한조선노동당의 전위조직으로 그동안 북한의 지령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5·1 동맹이 지난 90년 북한의 거물급 남파간첩 이 기 결성한 남한조선 노동당의 전위조직으로 조직원을 북한에 몰래 보내 그들의 지령에 따라 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결과 5·1 동맹은 김일성의 빨치산 등지의 이름을 딴 들격소조를 만들어 결정적 시기에 무장활동을 위해 준비하는 등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혁명의 주력군인 노동자, 농민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해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하여 투쟁한다는 목표와 강령, 규약을 채택하고...’ 이들은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의 편지와 정성금을 전달하고 북한방송을 청취, 유인물을 만들어 수도권지역에 배포해 온 것으로 경찰은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92년 남한조선노동당 간첩단 사건 이후에는 학원과 공단지역에 위장침투해 농업과 군사분야 기밀자료를 빼돌리고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하는 등 이적활동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보안법 위반 구속자에게 후원금을 지원하고 간첩단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언론매체에 기고하는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하여 대담하게 활동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14명 외에도 10여명의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5·1동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한 사실, 신청인들은 모두 위 ‘5·1동맹’ 사건과 관련하여 13명 중에 포함되고, 위 ‘5·1동맹’ 사건과 관련한 경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라 1995. 9. 5.자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에는 신청인들을 포함한 13명의 구속자 명단이 실명으로 보도되었는 바, 위와 같이 위 보도와 다음날 보도된 위 각 신문 기사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위 보도내용이 신청인들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에 의하여 각 인정되는 사실이다.

2. 판단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방송프로그램에서 공표된 위 보도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내용은 서울지방경찰청의 보도자료의 범위 내에서 요약 보도한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정정보도신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정정보도청구권은 피해자가 원문보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위 보도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뉴스 기사를 작성하여 방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별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방송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기로 한다.

신청인들은 위 인정된 반론 외에도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이 구하는 나머지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거나, 원 보도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신청인들은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정정보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9.

재판장 판사 심 명 수
 판사 최 종 길
 판사 윤 태 호

반론보도문

한국방송공사는 1995. 9. 4. KBS 9시 뉴스에서 “5·1동맹”이라는 제목하에, 경찰이 남한조선노동당의 잔존조직인 5·1 동맹의 조직원 13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들은 1992. 남한조선노동당 간첩단 사건 이후 학원과 공단지역에 위장침투해 노사분규를 배후 조정하는 등의 이적활동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국 , 김 , 김 , 이 , 이 , 정 , 조 , 한 , 현 씨는 그들이 모두 5·1 동맹사건으로 구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생계를 위하여 직장에 취직하여 근무하였을 뿐이지 위장취업을 하거나 노사분규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밝혀 드립니다. □

제목을 보면 신청인 회사가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제주지방법원 1996. 1. 25.자 결정 (95카기351)

事實概要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996년 1월 25일 제민일보사가 제주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 제주신문사측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제주신문은 1995년 8월 22일자 신문에 『미화부도 3백39억』이라는 대제목 아래, 『제민일보도 25억 3천만원』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경찰의 수사결과 부도 규모는 3백39억여 원으로 드러났다. 제민일보 명의로도 당좌와 어음 25억 3천만원을 발행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제민일보측은 제민일보 명의로 발행된 수표 및 어음의 액면합계금에 대해서는 모두 결제, 지급됨으로써 부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담당재판부는 「본문기사에는 신청인의 부도사실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제목 내용에 의하여 마치 신청인 회사 또한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오인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문제의 보도 이후 10월 25일자 제주신문에서 미화사건과 관련된 부도내역을 밝히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신청인 회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타 일간지들을 통해서도 신청인 회사가 미화부도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으므로 정정보도청구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이미 달성한 신청인으로서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피신청인측의 주장에 대해서 「이 사건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다시 25일자 기사를 읽었다 하여도 신청인 회사에 부도가 발생한 것은 아님을 알기는 어렵다」며 피신청인측의 주장을 물리쳤다.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자 지난 1995년 9월 20일 신청인 제민일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 제주일보측에서 「신문의 속성상 제목은 간략히 표현할 수 밖에 없고, 기사내용을 보면 독자들에게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정정요구를 거절, 사건이 불성립되자(95제주중재8), 신청인은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決定文

사 건 : 95카기351 정정보도게재

신청인 : 주식회사 제민일보
제주시 연동 290의 64
공동대표이사 홍 ,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진

피신청인 : 주식회사 제주신문사
제주시 연동 2036
대표이사 김대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자의 제주신문 제19면의 기사란 중 좌측 중단부에 세로는 3단의 크기로, 가로는 10cm 범위 내의 크기로 한 사각 테두리 내에 우측 부분에는 세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2포인트 명조체활자로, 그밖의 여백에는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신청인의 성명을 본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이 제주지역 일원을 중심으로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제주신문의 1995. 8. 22. 자 제19면의 오른쪽 상단부에 머릿기사로 『미화부도 3백39억』이라는 제목과, 그 우측 하단에 『제민일보도 25억 3천만원』이라는 소제목 아래 「속보=경찰의 미화부도사건 수사결과 부도 규모는 모두 3백39억 5천3백99만원으로 드러났다. 김 제주경찰서장은 21일 미화부도사건과 관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6월 17일 미화주택과 부도 이후 경찰의 미화관련업체 자금추적 결과 미화주택과 미화개발, 제민일보 등에서 발행된 당좌수

표 및 어음 등은 모두 3백39억여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18일 검거된 미화주택 사장 강 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 날 김 서장이 밝힌 부도 규모 내역을 보면 미화주택이 2백2억 6천1백20만원, 미화개발이 48억 6천1백 60만원으로 나타났고 미화주택의 직원 개인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린 것은 모두 14억 18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도내 모기업으로부터 무수천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20억원을 빌려 다른 용도로 사용됐고 제민일보 명의로도 당좌와 어음 25억 3천1백만원을 발행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소갑제3호증(거래상황확인서), 소갑제4호증(경찰수사발표문), 소을제4호증(1995. 8. 22.자 제민일보)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5. 6.경 미화주택 및 신청인회사의 전(前) 회장인 신청외 안 등이 미화주택 및 미화개발 등의 명의로 발행한 막대한 액수의 당좌수표 및 어음이 부도처리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제주경찰서장은 1995. 8. 21. 이와 관련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배임 등 사건의 수사발표를 하면서 위 안 등이 신청인 명의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액면 합계 금25억 3,100만원을 발행, 제2금융권 및 사채업자 등에 할인 후 미화주택의 자금으로 이를 유용하였다는 내용도 아울러 발표한 사실, 그러나 신청인 명의로 발행된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액면 합계금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이를 모두 결제, 지급함으로써 부도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는데, 피신청인은 1995. 8. 22. 위 경찰수사발표에 기하여 이 사건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미화부도 3백 39억』이라는 제목하에 『미화주택 개발 2백51억원, 제민일보도 25억 3천만원』이라는 소제목을 덧붙이고, 본문에 「제민일보 명의로도 당좌와 어음 25억 3천1백만원을 발행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를 게재한 사실, 위 안 가 미화주택 및 신청인 회사의 전(前)회장인 점은 제주지역에서는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 각 소명되고 반증은 없다.

위 각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본문기사에는 신청인의 부도사실은 명시되지 않고 다만 위 안 가 신청인 명의의 당좌수표 및 어음을 유용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위와 같이 『미화부도 3백39억』이라는 제목과 함께 『제민일보도 25억 3천만원』이라는 소제목이 게재됨으로써 제주지역에서는 위 소제목 내용에 의하여 마치 신청인 회사 또한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오인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제주신문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명예나 사회적 신용도 등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

주신문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첫째 이 사건 기사는 제주경찰서장의 발표내용이 그대로 기사화된 것일 뿐 피신청인이 이를 왜곡하여 보도한 바가 없으므로 신청인은 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소정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둘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의 본문에서 소제목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위 인정과 같이 「제민일보 명의로도 당좌와 어음 25억3천1백만원을 발행해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신청인 회사에 부도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직접적으로 보도하였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은 그 이후인 1995. 10. 25.자 제주신문에서 미화사건과 관련된 부도내역을 밝히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신청인 회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후 일자의 한라일보 등 타 일간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면서 신청인 회사에 대한 언급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이 미화부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제주지역에서는 간접적으로 보도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을 이미 달성한 신청인으로서는 더이상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피신청인이 제주경찰서장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내용이 제주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는 이미 제주신문의 사실에 관한 보도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첫째 주장은 이유가 없고 다음으로 소를 제21호증(1995. 10. 25.자 제주신문, 소갑제5호증의 4와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1995. 10. 25. 미화부도와 관련된 기사를 마무리 형식으로 게재하면서 부도내역 중 신청인 관련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그 기사내용은 미화부도내역을 개괄적으로 밝힌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기사를 읽은 사람들 다시 위 1995. 10. 25.자 기사를 읽었다 하여도 과연 신청인 회사에 부도가 발생한 것은 아님을 알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다른 신문기사에 의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충분히 알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의 위 1995. 10. 25.자 기사나 타 일간지의 기사 등으로 이 사건 기사가 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으로서도 여전히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둘째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정정보도문의 내용

한편, 정정보도의 내용은 위 기사 중 신청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서 별지 제1목록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 이외에 『제민일보측에 사과』라는 내용의 가로

20cm, 세로 6.5cm의 표제컷을 그 상단에, 그리고 0호 고딕활자(제민일보 기준)의 『부도 오해 소지 5단 제목 사건내용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내용의 세로 5단 크기의 부제를 그 우측 하단에 각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고, 또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 내에 『본지 1995. 8. 22. 미화부도에 관한 보도 중 제민일보가 부도발생한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라는 4호 고딕활자(제민일보 기준)의 소제목도 아울러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나, 이 사건 기사의 제목, 게재부위 및 본문활자의 크기, 전체기사의 내용, 그리고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 등을 참작하면 위 정정보도문 이외에 신청인 주장의 위 표제컷이나 부제를 게재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정정보도문 자체의 내용 중에서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 외에 따로 소제목을 게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외에 신청인은 정정보도의 내용으로서 피신청인의 보도가 '잘못된' 보도임을 나타내는 내용을 포함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보도내용에 대하여 반론 내지 반박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러한 반론 내지 반박은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가치판단적 내용은 이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반론권 내지 반박권의 범위를 벗어난 이 부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정정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부위

이 사건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부분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 수 등을 종합하면, 정정보도문은 제19면의 기사란 중 좌측 중단부에 세로는 3단의 크기로, 가로는 10cm 범위 내의 크기로 한 사각 테두리를 만들어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우측 부분에 세로로 22포인트 명조체활자로,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신청인의 성명은 그 밖의 여백에 본문활자로 게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신청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25.

재판장 판사 정 장 오
 판사 홍 지 옥
 판사 이 규 진

〈별지 1〉 정정보도문

본지는 1995. 8. 22. 제19면에 『미화부도 339억』이라는 제목과 『미화주택 개발 2백51억원, 제민일보도 25억 3천만원』이라는 소제목 아래 미화개발 등 부도사건에 관한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수사발표에 의하더라도 위 25억 3천만원은 미화주택 전 회장 안 가 제민일보명으로 발행하여 사용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액면 합계금일 뿐이고 주식회사 제민일보의 부도액수는 아님이 명백한 바, 본지는 기사본분에 같은 취지의 내용을 게재하였으나, 청산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된 위 액수에 관하여 기사본문의 내용과는 다소 다른 표현의 소제목을 게재함으로써 마치 주식회사 제민일보에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될 조치가 있는 표현의 소제목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제민일보의 정정보도심판청구에 따른 제주지방법원 95카기351호 결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밝히는 바이다.

정정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제민일보

〈별지 2〉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본지 1995. 8. 22. 미화부도에 관한 보도 중 제민일보가 부도발생한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본지는 1995. 8. 22. 자 사회면 머릿기사에서 『미화부도 3백39억』이라는 것과 『미화주택 개발 2백51억원, 제민일보도 25억 3천만원』이라는 제목으로 미화개발 등 부도사건에 관한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수사발표 자료를 보면 미화주택이 제민일보 명의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등 합계 25억 3천1백만원을 발행, 유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 25억 3천만원은 미화주택 안 회장이 제민일보에 진 부채로서 현재 청산절차가 종료된 것인 바, 이상과 같은 보도로써 마치 제민일보가 발행한 당좌 및 어음이 부도가 난 것으로 일반의 오해를 받는 등 물의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민일보는 지금까지 전혀 부도가 발생한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지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주식회사 제민일보의 명예와 신용도가 손상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정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제민일보

□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또는 사실적 진술 및 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벗어난 것이어서
그 게재를 허용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1996. 3. 14.자 결정 (95라216)
서울지방법원 1995. 11. 16.자 결정 (95카기5283)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 16민사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1996년 3월 14일 미전향 장기수였던 김 씨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심판 항소심에서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공산주의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며 당국의 전향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향제도 자체의 논리적 전제상의 오류와 수단상의 폭력성으로부터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남로당에 가입한 것은 해방 후 친일파들이 오히려 득세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신청인은 적화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기록상 신청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신청인이 남로당원으로서 6·25 전쟁 당시 인민군 병사로 철원지구를 정찰하다가 포로가 되어 간첩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복역하면서 오랜 세월동안 전향을 거부하였고 가석방 직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사실 등과는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히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의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 또한 사실상의 진술 및 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이 아니라 전향제도

에 대한 신청인의 일방적 이해와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관적인 주장 및 비판에 불과하므로, 결국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또는 사실적 진술 및 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벗어난 것이어서 그 게재를 허용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기사를 논평으로 볼 수 있으나 논평에 있어 전제로 삼거나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사실에 관한 서술임이 분명하고 또 그 중 신청인이 적화통일을 꿈꾼다는 부분은 필자의 추측처럼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적 주장에 있어서의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직접적인 것에 한하지 아니하고 가능성의 추측 또는 암시와 의문의 제기도 사심없는 독자의 입장에서 이를 사실상의 시인적(是認的)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위 표현 역시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파악하면 이를 사실상의 시인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며 기사 중 일부는 신청인에 대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995년 8월 17일자 2면 '기자수첩'란에 『'공산주의자' 사면』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세계최장기수로 특별사면된 신청인이 '골수 공산주의자'이며 신청인이 꿈꾸는 조국통일은 '적화통일'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고(95서울중재228) 중재결과 피신청인 측이 " '신청인이 공산주의자' 라는 용어와 '적화통일의 꿈'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정법상 전향하지 않은 사람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므로 보도에는 문제가 없다며 정정보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불성립됐다.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문제된 기사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고 하여 기각됐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2심 決定文

사 건 : 95라216 정정보도심판

신청인, 항고인 : 김

서울 관악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피신청인, 피항고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우영, 방상훈

원심결정 : 서울지방법원 1995. 11. 16.자 95카기5283 결정

주 문 : 1.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일간 조선일보에 별지 제 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 1. 피신청인의 신문기사 게재

피신청인은 일간신문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로서 그 발행 1995. 8. 17.자 조간 2면 오른쪽 하단부분의 ‘기자수첩’이라는 란에 “「공산주의자」사면”이라는 제목으로, “「세계최장기수」라는 김 가 특별사면으로 광복절에 43년 10월의 형기를 끝내고 대전교도소 문을 나섰다. 26세 때 철창에 들어갔다가 고회가 돼서야 푸른 수의를 벗게 된 그의 삶은 새삼 분단조국의 아픔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김씨의 출소를 감상적으로만 바라보기에는 뭔가 쓸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씨는 「전향」을 거부, 스스로 「가시밭길」을 선택한 골수 공산주의자이다. 남로당원이던 그는 9·28 수복 후 인민군과 함께 월북한 뒤 51년 10월 인민군 31사단 정찰대 소속으로 철원지구를 정찰하다 포로가 됐다. 이후 간첩죄가 추가돼 53년 4월 사형을 선고받았고, 다음해 2월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인물이다. 그의 말대로 『73년 박정희정권이 폭력배와 한 방에 몰아넣은 뒤 그들로 하여금 폭력을 사용케 하면서 전향을 요구했을 때도 이를 거부했다』고 할 만큼 그는 철저한 공산주의자로 남기를 고집했다. 하지만 그가 애타계 그리고 있을 북한에는 아직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수십년째 강제 억류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숱하게 있다. 가까이는 순복음교회 안 목사와 동진27호 납북선원부터 69년 KAL기 납치사건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가족과 조국을 그리며 피눈물을 삼키는 억류인사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발표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사실이 알려진 전 수도여고 교사 고 씨 가족의 애절한 사연이 온 국민의 가슴을 울린 게 바로 1년 전의 일이다. 우리 정부는 유엔과 노르웨이를 통해 고씨의 송환 협조를 요청했지만 북은 여전히 꿀먹은 벙어리일 뿐이다. 정부가 끝내 전향을 거부하는 이 공산주의자를 광복 50주년의 대화합 정신에 맞춰 석방했을 때 북한은 과연 어떤 조치를 내렸는가. 출소한 김씨는 꽃다발을 목에 건 채 『여생을 조국통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해 힘쓰는 젊은이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에도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가 꿈에도 그리는 「조국통일」은 과연 어떤 것일까. 자신이 44년

간 0.7평 독방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적화통일」이 그의 꿈이 아닐까. 그런 그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심지어 남아프리카의 만델라와 비교하면서 「민주화의 영웅」인 양 치켜세우는 분위기다. 오늘밤에도 납북자들의 생사여부조차 모른 채 베갯잇을 적시는 수많은 가족들이 있다. 이들의 아픔에 대해 김씨는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지...”라는 내용의 신청인의 가석방에 관련한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권의 존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995. 12. 30. 법 제 5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 16조 제1항에 의하면 정기간행물 등에 의한 보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적 주장의 공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고 논평 등의 주관적인 의견표명에 대하여는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기사가 과연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위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기사는 ① 그 첫머리에 신청인의 가석방을 보는 필자의 느낌을 대체적으로 표현한 부분과 ② 이른바 ‘미전향 장기수’ 였던 신청인의 과거 사상 및 행적을 열거한 부분, ③ 신청인을 가석방한 우리정부의 조치와 대조하여 북한당국의 납북자에 대한 태도를 소개한 부분, ④ 신청인이 가석방 후 표명한 조국통일 및 보안법폐지에 관한 결의와 신청인의 석방을 환영하는 사회일각의 분위기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 및 ⑤ 마지막으로 납북자 가족과 신청인의 처지를 대비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 중 ① 글 첫머리의 신청인의 가석방을 보는 필자의 느낌을 표현한 부분, ③ 북한당국의 납북자에 대한 태도를 소개한 부분, ④의 신청인의 석방을 환영하는 사회일각의 분위기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 및 ⑤ 납북자 가족과 신청인의 처지를 대비한 부분 등은 그 대체적인 내용이 신청인의 가석방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미전향 장기수에 대한 정책과 북한당국의 납북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신청인의 가석방에 대한 우리 사회 일각의 분위기 등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와 의견을 피력한 것이어서 이를 논평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 신청인의 과거 사상 및 행적을 열거한 부분과 신청인의 가석방 후 통일 및 국가보안법폐지에 관한 결의를 표명하였다고 언급한 부분, 즉 “김씨는 「전향」을 거부 스스로 「가시밭길」을 선택한 골수 공산주의자이다. 남로당원이던 그는 9·28 수복 후 인민군과 함께 월북한 뒤 51년 10월 인민군 31사단 정찰대 소속으로 철원지구를 정찰하다가 포로가 됐다. 이후 간첩죄가 추가돼 53년 4월 사형을 선고받았고 다음해 2월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인물이다. 그의 말대로 『73년 박정희정권이 폭력배와 한 방에 몰아넣은 뒤 그들로 하여금 폭력을 사용케 하면서 전향을 요구했을 때도 이를 거부했다』고 할 만큼 그는 철저한 공산주의자로 남기를 고집했다” 및 “전향을 거부하는 이 공산주의자”라

는 부분과 “출소한 김씨는 꽃다발을 목에 건 채 『여생을 조국통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해 힘쓰는 젊은이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에도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가 꿈에도 그리는 「조국통일」은 과연 어떤 것일까. 자신이 44년간 0.7평 독방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적화통일」이 그의 꿈이 아닐까.”라는 부분은 비록 위와 같은 논평에 있어 전제로 삼거나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사실에 관한 서술임이 분명하고 또 그 중 신청인이 적화통일을 꿈꾼다는 부분은 필자의 추측처럼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적 주장에 있어서의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직접적인 것에 한하지 아니하고 가능성의 추측 또는 암시와 의문의 제기도 사심없는 독자의 입장에서 이를 사실상의 시인적(是認的)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위 표현 역시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파악하면 이를 사실상의 시인적 주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기사 중 위와 같은 내용은 신청인에 대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 법률 제16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정기간행물 등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과 개별적 관련성이 있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정보도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 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며, 한편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함은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면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신청인은, 신청인이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공산주의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며 당국의 전향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향제도 자체의 논리적 전제상의 오류와 수단상의 폭력성으로부터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남로당에 가입한 것은 해방 후 친일파들이 오히려 득세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신청인은 적화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나, 우선 신청인이 위 기사 내용에 대응하여 게재를 구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의 전제 또는 그 내용의 골격을 이루는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기록상 신청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신청인이 남로당원으로 6·25전쟁 당시 인민군 병사로 철원지구를 정찰하다가 포로가 되어 간첩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복역하면서 오랜 세월동안 전향을 거부하였고 가석방 직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사실 등과는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히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 외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 또한 사실상의 진술 및 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이 아니라 전향제도에 대한 신청인의 일방적

이해와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관적인 주장 및 비판에 불과하므로, 결국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또는 사실적 진술 및 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벗어난 것이어서 그 게재를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에 의한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이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14.

재판장 판사 황 인 행
 판사 허 근 녕
 판사 조 해 현

〈별지 제1목록〉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송달 후 처음으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조선일보 제2면 오른쪽 하단, 광고지면 바로 위에 별지 제2목록 “정정보도문”을 게재한다. 정정보도문은 이중의 검은색 사각형 테두리를 하고,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공산주의자 사면 관련 정정보도문”으로 하되 3급 고딕활자로, 나머지 본문은 본문활자로 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2목록〉 (정정보도문)

제 목 : 공산주의자 사면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1995. 8. 17.자 1년 기자수첩에 『공산주의자 사면』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이 「골수 공산주의자」이며, 신청인이 꿈꾸는 조국통일은 「적화통일」이라는 취지로 보도를 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 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신청인은 지난 43년 10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전향을 거부하였다. “전향제도”란 인간의 내면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두 가지로 나눈 다음, “공산주의”는 절대

악으로, “자유민주주의”는 절대선으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절대악은 북한을, 절대선은 남한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가 “좌익수”로 분류한 재소자들을 무조건 “공산주의자”로 단정한 후,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전향제도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분법으로 시작하는 논리적 전제부터, 각 단계의 논리전개와 결론 모두가 잘못된 것으로서 실제로 복잡·다기한 사람의 내면을 전혀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방적인 재단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과 악으로 나눔으로써, 악으로 규정된 사람, 즉 전향을 거부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절대악”으로 규정하여 무제한의 폭력을 가할 수 있게 하는 흑백논리이며, 또한 폭력의 논리이자 관행이다.

신청인은 이처럼 인간의 양심과 사상을 흑백논리에 의하여 “이것 아니면 저것”하는 식으로 재단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고 현실정치에서 대립되는 두 가지 가치관을 하나는 절대선, 다른 하나는 절대악으로 규정하는 것도 반대하며, 대립하는 두 개의 사회 중 한쪽은 절대선을 대표하고 다른 쪽은 절대악을 대표하는 주장에도 동조할 수 없었다. 또한 자율적이고 창조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사람의 양심을 폭력에 의하여 바꾸려 하는 생각 자체에 반대하여 전향을 거부하였다. 신청인은 해방 직후 친일파들이 다시 권력을 잡고 독립운동가들이 미군정과 친일파들의 박해를 받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항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남로당에 가입하였으며 전쟁 중 인민군에 가담하였다가 포로로 붙잡혔다. 신청인은 전쟁 전에는 물론 43년 10개월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공산주의에 관하여 공부할 기회를 얻지도 못하였으며 가족과의 면접은 커녕 책이나 신문도 보지 못하였고 심지어 변호사와 접견하는 것조차 금지당하였다.

이러한 극단적인 흑백논리와 그것이 기반을 두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성장하는 폭력의 논리가 우리 민족의 비극이라고 믿기 때문에 신청인은 남북이 이러한 흑백논리에 기반한 폭력대결의 지양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룸으로써 더 이상의 비극이 없기를 지금까지 기원하였고 지금도 그렇기를 바랄 뿐이다.

정정보도청구인 김

1심 決定文

사 건 : 95카기5283 정정보도심판

신청인 : 김

서울 관악구

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우영, 방상훈

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장원찬, 최승인

주 문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기사는 그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정정보도의 내용은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비평, 논평 등 의사표현 내지 가치판단에 관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나, 사실적 진술이 아닌 의사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정보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이 게재한 이 사건 기사는 이른바 논평기사로서 신청인의 석방사실을 전제로 하여 정부의 장기수에 대한 정책, 이에 대한 사회일각의 분위기, 남북자에 대한 북한당국의 태도 등에 대한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 내지 가치평가를 피력한 것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도 전향제도에 대한 비판,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 등 신청인의 주관적 의견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실적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기사의 논평내용의 당부에 관계없이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16.

□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김 형 두

판사 신 광 렬

취재원이 보도내용과 같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 하더라도 일단 그 내용이
신문에 게재되어 공표된 이상 이는 이미
피신청인의 사실적 주장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기사에 관련된 신청인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6. 3. 26.자 판결 (95카합1209)

事實概要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 2부(재판장 황성재 부장판사)는 1996년 3월 26일 포항제철이 경북매일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판결에서 '취재원인 최 교수 가 보도내용과 같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 하더라도 일단 그 내용이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되어 공표된 이상 이는 이미 피신청인의 사실적 주장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기사에 관련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며 정정보도게재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신청인이 일부 정정보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최 교수의 이의에 의한 것이고 그 정정보도 내용에 비추어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고 밝혔다.

경북매일신문은 1995년 10월 8일자 1면 『영일만 해저에 청산가리층』 제하의 기사에서 '포철을 비롯한 연관단지에서 배출된 청산가리가 영일만 바닥에 10cm 두께로 퇴적층을

형성하면서 각종 어장을 황폐화시켰고 맹독성 적조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내용을 동국대 최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한 바 있고 1995년 10월 10일자 1면에는 『영일만 해저 오염실태 조사촉구』라는 제목으로 해당지역의 피해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신청인 포항제철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고(95대구중재8),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보도내용은 동국대 최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고 이러한 최교수의 주장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정보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불성립되었다.

신청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決文

사 건 : 95카합1209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포항시 남구 괴동동 1

대표이사 김 , 김

대리인 변호사 김영대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북매일신문(慶北每日新聞)

포항시 동빈로 1가 60의 14

대표이사 이승완

대리인 변호사 유중근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자의 경북매일신문 제1면의 기사란 중 좌측상단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본문기사 제목활자 크기로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의 성명은 본문활자 크기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정정보도문의 위치를 제1면의 우측상단에,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별지 제2 기재와 같이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경북매일신문의 1995. 10. 8.자(제1512호) 1면인 중앙상단 부분에 『영일만 해저에 청산가리층』이라는 제목으로 “영일만 일대에서 최근 우렁쟁이(명게) 양식장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영일만 해저에 청산가리층과 무산소층이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최 동국대 자연과학대학장이 발표한 영일만 생태연구논문 결과에서 드러났다. 최학장은 이 논문에서 포철을 비롯한 연관단지에서 배출된 청산가리가 현재 영일만 밑바닥에서 10cm두께로 퇴적하여 거대한 청산가리층을 형성하면서 5~6m의 크기의 무산소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수십년에 걸쳐 각종 어패류가 잇따라 폐사했고, 원인을 모르는 가운데 어장과 양식장이 황폐화됐다고 주장했다. 최학장은 특히 보름째 경북 동해연안 양식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맹독성 적조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최근 경북 동해연안 적조가 코클로디니움균에 이어 세라미움풀카균이 합세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철강생산시 온도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청산가리 사용이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또 1995. 10. 10.자(제1513호)1면인 중앙 부분에 『영일만 해저 오염실태조사 촉구』라는 제목으로 “속보=영일만 해저에 청산가리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이 퇴적되면서 거대한 무산소층이 형성되고 있다는 보도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정밀 오염실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9일 최 동국대 교수와 박 박사(환경연구소)는 영일만 해저에 형성된 중금속층과 무산소층이 이번 적조와 무관치 않다고 재차 지적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 오염실태 조사를 벌여 어민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철 관계자는 영일만 해저 오염에 따른 어민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피신청인은 12면을 일간으로 발행하여 오다가 1995. 3. 1.경부터는 16면으로 중간하여 경상북도 일원에 배포하여 온 신문사이고, 신청인은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에서 철강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루지 않는 사실이고, 소갑제6호증의 기재와 증인 최 의 증언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보도내용에 대하여 최

동국대 교수가 이의를 제기하자 1995. 12. 3.자 제2면에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동국대 최 교수의 논문을 인용, 청산가리 퇴적과 맹독성 적조와는 무관치 않다는 보도는 적조와 청산가리는 무관한 것으로 바로 잡는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지인 경북매일신문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기사로 말미암아 그의 법익에 피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자신의 사실적 주장을 담은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위 기사내용은 모두 피신청인 신문사 소속 기자들인 신청외 김 , 김 이 위 최 교수와의 대답을 기초로 한 것으로 전혀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며, 위 최 교수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한다고 하여 그 말을 사실로 믿을 수 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정보도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1995. 10. 8.자 보도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소명자료로는 위 김 , 김 이 위 최 교수와의 대답 내용을 메모한 소을제1 내지 3호증 및 위 김 , 김 의 사실확인서로서 소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그리고 증인 김 의 증언이 있으나 위 자료들은 모두 위 최 교수가 위 보도내용과 같은 논문을 준비하거나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나 앞서 판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스스로 위 최 교수의 이의를 받아들여 청산가리 퇴적과 적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정정보도를 하였음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보도내용이 진실한 내용이라거나, 위 최 교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는 반면에, 소갑제4호증, 소갑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최 의 증언 및 이 법원에서의 소외 최 환경정책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최 동국대 교수는 위 김 , 김 기자와의 인터뷰 및 전화대담에서, ① 영일만 생태계 연구 논문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일부 해역에 대한 미 발표내용을 언급한 것이고, ② 포철을 비롯한 연관단지에서 배출한 청산가리가 영일만 밑바닥에서 10cm두께로 퇴적되어 있다고 대답한 적은 없고,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에서 배출된 유기오염 물질인 기름, 구리 등 중금속이 발견되었다고 했을 뿐이며, ③ 포철 및 그 연관단지에 철강 생산시 온도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청산가리가 영일만으로 배출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고, ④ 맹독성 적조와 위 청산가리층의 퇴적과 관계가 있다고 말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위 생활오수 등에서 배출된 구리, 아연 등 중금속과 적조와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신청인의 위 1995. 10. 8.자 보도로 인하여 마치 신청인이 청산가리를 배출함으로써 영일만에 청산가리 퇴적층을 10cm정도나 형성시켜 어장과 양식장을 황폐화시키고 맹독성 적조를 유발시킨 것으로 독자들에게 인식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법익에 상당한 피해를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이른바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에 대하여 그 보

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써 일종의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의 대상이 된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며, 단지 피해자가 요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정정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최 교수가 위 보도내용과 같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 하더라도 일단 그 내용이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되어 공표된 이상 이는 이미 피신청인의 사실적 주장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기사에 관련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며,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5. 12. 3.자로 일부 정정보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최 교수의 이의에 의한 것이고 그 정정보도 내용에 비추어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1995. 10. 10.자 보도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포철관계자는 영일만 해저오염에 따른 어민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 보도한 내용이 오도된 사실을 근거로 어민 피해보상까지 언급하여 보도한 것을 자칫 어민들과 지역주민들을 자극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신청인 회사의 관계자를 인용보도한 부분은 신청인 회사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인용, 제재한 것으로 신청인 회사의 관계자가 청산가리 배출 등 오염원인 제공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포철관계자가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진술하였다고 보도한 것이 반드시 포철관계자가 영일만 해저 오염을 시인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정정보도는 문제된 보도를 반박하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만 국한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신청인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므로, 위에서 “자칫 어민들과 지역주민들을 자극할 수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부분은 위와 같은 반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 “신청인 회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청인 회사 관계자를 인용보도 하였고, 청산가리 배출 등 오염원인 제공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부분도 피신청인이 지역 일간신문을 발간하는 언론매체의 자격으로 신청인 회사 관계자로부터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더욱 그렇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와 같은 1995. 10. 10.자 피신

청인의 보도내용에서 위 1995. 10. 8.자와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관한 위 정정보도청구는 반론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별지 2기재 내용 중 앞서 배치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범위 내에서 별지 1기재 내용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 위치와 그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부분이 실렸던 면수와 그 위치, 글자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 수 등을 참작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게재방법과 위치 및 크기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6.

재판장 판사 황 성 재
 판사 이 인 규
 판사 이 담

〈별지 1〉 정정보도문

본지는 1995. 10. 8.자 1면 『영일만 해저에 청산가리층』라는 제목 하의 기사에서 ‘포철과 연관단지에서 철강제품의 생산공정에 사용되고 배출된 청산가리가 영일만 바닥에 10cm두께로 퇴적층을 형성하면서 각종 어장을 황폐화시켰고 맹독성 적조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동국대 최 교수의 논문을 인용한 바 있고, 1995. 10. 10.자 1면 『영일만 해저 오염실태 조사촉구』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위와 같은 피해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최 교수가 포철에서 철강제품의 생산공정에 사용된 청산가리가 영일만에 배출된다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포철에서 청산가리를 배출하고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으며, 영일만 바다에 10cm두께로 청산가리층이 형성되었다거나 이것과 맹독성 적조와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말하지는 않았고, 청산가리층의 형성과 맹독성 적조의 관계에 대

하여도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는 것이므로 이를 정정보도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바로잡습니다.

정정보도신청인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별지 2〉 정정보도문

본 지는 1995. 10. 8.자 1면 『영일만 해저에 청산가리층』제하의 기사에서 ‘포철과 연관 단지에서 철강제품의 생산공정에 사용되고 배출된 청산가리가 영일만 바닥에 10센티 두께로 퇴적층을 형성하면서 각종 어장을 황폐화시켰고 맹독성 적조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동국대 최 교수의 논문을 인용한 바 있고, 1995. 10. 10.자 1면 『영일만 해저 오염실태 조사촉구』 제하의 기사에서 최 교수 등과 포항시의 사회단체와 포항시의회, 시민 등이 피해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과 포철 관계자가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철은 생산공정 중에 청산가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방류수에도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그로 인해 어장과 양식장이 황폐화되었고 맹독성 적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보도와 동국대 최 교수의 논문내용과 주장을 게재한 부분도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렇게 오도된 사실을 근거로 어민 피해보상까지 언급하여 보도한 것을 자칫 어민들과 지역주민들을 자극할 수 있었으며, 포철관계자가 인용 보도한 부분은 본지에서 포철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인용, 게재한 것으로 포철관계자가 포철의 청산가리 배출 등 오염원인 제공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아니었음을 밝혀둡니다.

정정보도신청인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신청인 정당의 대표자 개인에 관한 보도와 신청인 정당은 개별적 연관성이 없으며, '사실적 주장' 이 아닌 '평가' 인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다

서울지방법원 1996. 5. 27.자 결정 (96카기2195)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6년 5월 27일 새정치국민회의가 서울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996. 3. 16.자 기사의 내용은 신청인 정당의 대표자인 김대중씨가 과거 민주당 대표로 재직하던 때에 발생한 일을 기사화한 것에 불과할 뿐 신청인 정당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기사는 아니므로, 신청인 정당의 대표자 개인에 관한 보도기사와 신청인 정당은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3. 18.자 기사에서 소재목을 <'공천현금' 국민시선 부담감>이라고 표현한 것은 국민회의가 시국강연회를 취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그 취소이유나 배경을 기자 나름대로 분석평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실적 주장' 이 아닌 '평가'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적 주장'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기사의 본문보도에서 국민회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시국강연회를 취소하였다는 신청인측의 주장을 보도하고 있어 위 소재목 부분 기사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입장이 충분히 언급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했다.

서울신문사는 1996년 3월 16일 1면 『DJ 14대 공천 1백30억 받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14대 총선시에 공천당비 130억원 중 일부를 김대중 총재가 유용했다는 요지의 보도를 하였고 같은 달 18일 『野, '時局 강연회' 돌연 취소』라는 대제목과 『선관위 강력대응·유

권자 거부감 의식, '공천현금' 국민시선 부담감, 국민회의 취소 이어 민주도 오늘 결정』이라는 소재목으로 국민회의가 공천현금이 폭로되자 유권자들의 거부감을 의식하여 시국강연회를 취소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1996. 3. 23.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고(96서울중재82), 중재 결과 불성립되자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定文

사 건 : 96카기2195 정정보도

신 청 인 : 새정치국민회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의 31 한양빌딩 4층

대표자 총재 김대중

대리인 변호사 박상천, 추미애, 이성재, 천정배, 유선호, 신기남

피신청인 :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대표이사 손주환

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 문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서울신문 1996. 3. 16.자 기사에 관하여

위 기사의 내용은 신청인 정당의 대표자인 김대중 씨가 과거 민주당 대표로 재직하던 때에 발생한 일을 기사화한 것에 불과할 뿐 신청인 정당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기사는 아니므로, 신청인 정당의 대표자 개인에 관한 위 보도기사와 신청인 정당은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 정당은 위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다(선거시기에 신청인 정당의 대표자 개인에게 마치 부도덕한 행위가 있었던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를 보도하였다고 하여 신청인 정당이 법률상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정당의 직무집행과도 무관한 대표자 개인에 관한 그와 같은 기사로 인해 신청인 정당의 이미지가 사실상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사로 인하여 법률상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대표자 개인이지 신청인 정당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 정당이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는 없다.)

2. 서울신문 1996. 3. 18.자 기사에 관하여

위 기사는 <야, '시국강연회' 돌연 취소>라는 대제목 하에 <선관위 강력대응·유권자 거부감 의식, '공천헌금' 국민시선 부담감, 국민회의 취소 이어 민주당 오늘 결정>이라는 소제목으로, 새정치국민회의가 시국강연회를 취소하였음을 보도하면서, 본문 기사로 <...공천헌금 폭로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가운데 또다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자칫 유권자로부터 거부감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계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회의는 ...선관위가 김대중 총재에게 보낸 시국강연회 자제요청 공문에 대한 당의 방침을 논의, ...장외 시국강연회를 모두 취소키로 결정했다. ...국민회의는 ...시국강연회를 선관위의 경고를 받아 들어 이종찬 의정보고회로 이름을 바꿔 개최했다. ...국민회의의 이해찬 단장은 "시국강연회가 위법이라는 선관위의 자의적인 법해석은 정당의 정상적인 역할을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제약하는 잘못된 견해"라고 주장하고 "그러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강연회를 취소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위 제목들과 본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 대제목과 관련한 소제목인 <'공천헌금' 국민시선 부담감>이라는 부분은 국민회의가 시국강연회를 취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그 취소 이유나 배경을 기자 나름대로 분석평가한 기사라고 할 것이어서 위 소제목 부분은 '사실적 주장'이 아닌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정정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소제목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기사의 본문보도에서 국민회의가 시국강연회를 취소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취소하였다는 신청인측의 주장을 보도하고 있어 위 소제목 부분 기사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입장이 충분히 언급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위 소제목 부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27.

□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김 형 두
판사 신 광 렬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그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반론, 반박할 권리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6. 6. 12.자 결정 (96카기2442)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6년 6월 12일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종로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 씨가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기사에 대하여 반론, 반박할 권리가 있다'고 하며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중 '사건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허용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1996년 4월 11일자 『법정선거운동 16일 ...이색기록들』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당선은 꿈도 꾸지 않고 있다", '정치가 너무썩어서 이번 기회에 평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고나니 속이 시원하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신청인은 이와 같은 발언을 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1996년 4월 1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6서울중재94).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기사내용은 신청인 부인과 직접 전화통화한 내용들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불성립되자 신청인

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決文

사 건 : 96카기2442 정정보도

신청인 : 김
서울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京鄕新聞社)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안 신 배

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정우, 김성용, 김 훈, 김태영, 김동하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되는 일간 신문 '경향신문'의 제21면 우측 상단 부분에 가로 5cm, 세로 6.5cm의 크기로, 그 상단에는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24급 고딕체활자로,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신청인을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각 가로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기간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4는 피신청인의, 나머지는 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일간 경향신문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 제3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1항의 이행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1996. 4. 11.자 제21면 우측 상단 부분에 『법정 선거 운동 16일… 이색기록들』이라는 제목 아래 제15대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박스기사가 게재된 사실, 위 박스기사 중의 일부로서 “당선과는 무관한 기록을 주장하는 후보도 있다.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무소속 김 후보는 선거운동원이 부인인 이 씨(42) 단 1명. 김(金)씨가 홍보물을 붙인 봉고차를 타고 유세를 벌이는 동안 부인 이(李)씨는 봉고차를 개조해 만든 선거사무실에서 전화기 2대로 선거운동을 벌였다. 김(金)씨는 ‘당선은 꿈도 꾸지 않고 있다’ 며 ‘정치가 너무 썩어서 이번 기회에 평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 고 밝혔다” 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의 위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위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사에 대하여 반론, 반박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정정보도의 내용으로서는 위 기사에 대한 반론으로서 별지 제1목록 기재 내용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별지 제3목록 기재의 정정보도문 중 위 인정한 반론문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신청인의 반론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정정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방법에 관하여는 위 기사 중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 부분의 크기, 정정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인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간접강제신청부분에 관하여는 주문 제1항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2.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여 훈 구
 판사 신 광 렬

〈별지 1〉 반론보도문

1996. 4. 11.자 경향신문 제21면에 “종로구에 출마한 무소속 김 국회의원 후보는 ‘당선은 꿈도 꾸지 않고 있다. 이번 기회에 평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고 밝혔다” 는 요지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본 신청인은 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만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세장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바도 없다.

정정보도신청인 김

〈별지 2〉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되는 일간신문 ‘경향신문’의 제1면 상단 부분에 별지 제3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3회에 걸쳐서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 3〉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반 론 문

지난 1996. 4. 11.자 경향신문은 제21면의 『법정선거운동 16일 ...이색기록들』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의 선거운동원이 신청인 본인의 부인 단 1명 뿐이며, 봉고차를 개조해 만든 선거사무실에서 전화기 2대로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아가 신청인 본인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당선은 꿈도 꾸지 않고 있다. 정치가 너무 썩어서 이번 기회에 평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는 전부 허위입니다. 신청인은 위 기사를 작성한 박 기자를 만난 적이 없으며, 유세장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위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신청인은 명예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이번 총선에 낙선하는 피해를 입게 되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종로구 무소속 후보 기호 7번 김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 1인이
언론중재절차를 거쳤다면 다른 피해자는
중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며, 또한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신청인의
반박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를 방송하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6. 6. 27.자 결정 (96카합999)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심명수 부장판사)는 1996년 6월 27일 부안군수인 강 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심판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 한국방송공사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고 결정했다.

한국방송공사는 1996년 2월 3일 07:00 KBS 제1텔레비전의 『KBS 아침 뉴스의 광장』 프로그램 중 전주권 뉴스부분에서 「부안군은 이미 승인된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설계비와 보상비가 투입된 국도개설도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가뭄대책사업비의 국고지원도 군수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신청인 강 은 기왕의 도시계획이 국립공원 등 주변 여건을 고려치 않아 전면 재검토한 것이며, 시행 중인 국도개설은 도심과 공원을 양분하는 등 생활환경에 적절치 못해 주민의 진정에 따라 공사를 중지한 상태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하였다.

변론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정정보도를 신청한 자는 강 개인인데 이 사건 청구에 앞서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부안군일 뿐 신청인은 언론중재절차를 경유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한 것」이고, 또한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신청인의 입장이 아닌 부안군의 입장을 반박한 것이므로 보도 관련성을 결여한 부당한 청구이며 그 내용도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당재판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의 1인이 중재절차를 경유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재고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절차에서 중재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다른 피해자가 정정보도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다시 똑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필요를 넘어서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나머지 피해자는 위 중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정정보도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군수로서 신청인이 군정을 수행했다는 반박내용으로 보여지므로 보도관련성이 없다는 피신청인 주장은 이유없다」 또 「신청인의 주장내용이 내용 자체만으로 평가할 때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신청인의 반박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를 방송하라고 결정했다.

이 기사가 보도되자 지난 1996년 3월 2일 부안군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측에서 「민선군수의 공약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면서 주민의 제보로 현장 취재한 것이므로 사실보도」라며 정정보도를 거부, 사건이 불성립되자(96전북중재5) 신청인은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決定文

사 건 : 96카합999 정정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강
전북 부안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홍 두 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주 교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방송되는 KBS 제1텔레비전 『KBS 아침 뉴스의 광장』 프로그램의 중간 부분에 텔레비전 화면 오른쪽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1. 기재의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5일의 기간 내에 위 제1항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

는 피신청인은 위 기간만료의 익일부터 이행완료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1일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
으로 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KBS 제1텔레비전의 1996. 2. 3. 07:00 『KBS 아침뉴스의 광장』이라는 프
로그램 중 전주권 뉴스부분에서 『자치단체 행정을 점검하는 기획보도』라는 제목 하에 「민
선군수가 출범한 뒤로 부안군의 굼직한 개발사업 대부분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민선군수
의 독주에 군의회나 군민들의 견제마저 미약하기 때문에 표류의 정도가 더욱 심해진다
는 목소리가 높습니다」라는 앵커의 소개 다음에 KBS의 기자가 「8만4천명의 부안군, 새정치
국민회의의 강 군수체제를 출범시켰지만 오히려 민선권위주의의 행적이 뚜렷합니다.
…부안군은 지난 94년 1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완성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고도 지난
해부터 또 다시 2,900만원을 들여 타당성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부안읍 중심에서 벗어
나 군수 출신지인 행안면 중심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5년마다 재
검토하는 관례를 무시한데다 주민의 여론수렴조차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은 20여억원의 설계비와 보상비를 투입한 국도 23호선의 부안읍 우회도로 개
설도 부안군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공사 중단상태, 가뭄대책 사업비 3억4천여만원의
국고지원도 물거품, 군비 부담능력이 없다는 군수의 소극적 태도 때문입니다. …부안군수
의 독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보수소방수로서 부안을 지켜온 의용소방대장을 일
방적으로 해임시켜 80명의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군의회
견제기능이 취약한 상태에서 지역 주민과 같이 하자면, 민선군수의 독주는 지역의 갈등과
낙후를 초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부안군 도시과장이나
해임된 의용소방대장과의 인터뷰 장면과 함께 방영한 사실, 신청인은 1995. 6. 27. 실시
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같은 해 7. 1.부터 부안군수의 직을 수행해 오고 있는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이다.

2. 판단

가. 위 방송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위 방송프로그램에서 공표된 위 보도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의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정정보도를 신청한 자는 강 개인인데, 이 사건 정정보도심
판청구에 앞서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신청외 부안군일

뿐 신청인은 언론중재절차를 경유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송법 제42조,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원의 법적 판단을 받기에 앞서서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구제의 기회를 부여하고, 언론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조사를 하게 함으로써 전문성도 살리면서 언론사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재고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며, 미리 쟁점을 정리하여 법원의 심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의 전치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인 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의 1인이 중재절차를 경유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재고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절차에서 중재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다른 피해자가 정정보도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다시 똑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필요를 넘어서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는 나머지 피해자는 위 중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정정보도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부안군은 …타당성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주민의 여론 수렴조차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안군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공사 중단 상태」 「…군수의 소극적 태도 때문입니다. 부안군수의 독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등 신청 외 부안군의 군정과 신청인에 대한 사실적 표현과 평가를 함께 보도하였으므로, 위 부안군과 신청인은 모두 위 사실적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동일한 방송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위 두 피해자 중 부안군이 중재절차에서 이 사건 정정보도심판청구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정보도를 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중재절차에서 스스로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이 이 사건 정정보도심판청구를 하면서 다시 중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신청인의 입장이 아닌 부안군의 입장을 반박한 것이므로, 보도관련성을 결여한 부당한 청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이 보도해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은 신청인이 부안군수로서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같이 군정을 수행했다는 반박내용으로 보여지므로, 보도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정정보도문안은 명백히 진실에 반하므로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는 방송기관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서,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동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법문상의 용어와는 달리 어떤 보도에 대한 정정이 아니라 그 보도에 의하여 사실상 피해를 입은 관련 당사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그 반론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나 독자들로 하여금 원래의 보도 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반론을 비교하여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을 도모함과 함께, 자칫 대립되는 이해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이 보도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반론권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문제된 보도 내용에 의하여 사실상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반론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방송기관은 그 반론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이를 보도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언론은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직업윤리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진실한 보도를 추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의 전파는 사회 공익에도 반하므로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어서, 누구든지 언론기관에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보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란 그 정정보도의 내용이, 널리 사회 일반에 걸쳐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구하는 반박문의 주장내용이 내용 자체만으로 평가할 때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신청인의 반박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별지 1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기로 하되,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명한 기간 내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의 익일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1일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그 외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거나 위 1일 금 10,000,000원의 범위를 넘어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7.

재판장 판사 심 명 수
판사 최 종 길
판사 윤 태 호

〈별지 1〉 반론보도문

한국방송공사는 1996. 2. 3. 『KBS 뉴스광장』에서 『부안군 표류』라는 제목하에 「94년 승인받은 도시기본계획을 5년만에 재검토하는 관례를 무시하고 타당성 재검토에 들어가 강 군수가 예산을 낭비하고, 국도 23호선의 부안을 우회도로 개설도 부안군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가뭄대책사업비 3억4천만원의 국고지원도 군수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고, 무보수 의용소방대장을 군수가 일방적으로 해임시켰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 부안군수는, 부안군의 남서쪽 지역에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기존의 국립공원 변산반도, 변산해수욕장 등도 부안군의 남서쪽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데도 기왕의 도시기본계획이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위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한 것이며, 국도 23호선은 변경계획된 노선이 도심과 서림공원을 관통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를 양분하는 등 적절치 못하여 그에 대해 부안군민 2만7천여명이 선형변경을 요구해 오므로 이리 국토관리청에 그 선형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고, 또한 3억4천여만원의 가뭄대책비는 이를 지원받게 되면 같은 금액의 군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바, 그것보다는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해 부안댐 온라인 사업과 연계하는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되어 위 가뭄대책비 지원금을 반납한 것이며, 의용소방대장은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이를 해임하고 후임 의용소방대장을 임명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해 오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밝혀 드립니다.

〈별지 2〉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본 방송 1996. 2. 3. 『KBS 뉴스광장』에서 방영한 『부안군 표류』라는 제하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부안군은 21세기 서해안시대를 대비하여 부안군의 발전방향에 관해 정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서해안에 인접한 부안군은 남서쪽 지역은 국책사업인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올해 완공예정인 부안댐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기존의 국립공원 변산반도 및 변산·격포·상륙·고사포·해수욕장과 목정온천이 자리잡고 있어 향후 부안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현재 부안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자 전북대학교 부설 도시 및 환경연구소에 그 타당성 여부를 의뢰하였습니다.

부안군에서는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군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부안군은 부안 - 김제간 국도 23호선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도심을 관통하는 현재의 선형을 바꿔 도심을 우회하여 시행해 줄 것을 수차 이리 국토관리청에 요청하였으나 이리 국토관리청에서는 당초의 도시계획선대로 공사를 강행하여 왔습니다. 부안군은 당초 계획대로 국도가 포장될 경우 부안을 유일의 서림공원이 훼손되고 심한 소음과 공해가 유발되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리 국토관리청에 서림공원을 우회하여 국도가 건설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여 왔습니다.

부안군민 2만7천여명도 작년 11월 관계당국에 선형변경을 요청하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초 예정된 부안을 우회도로 공사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부안군민의 공사 우회건의와 동절기인 관계로 일시 공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한편 부안군은 열악한 군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군비 지출없이 전액 국고부담으로 가뭄대책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당장 급하지도 않은 3억4천만원의 국고지원을 받을 경우 같은 금액의 군비를 지출해야 하므로 그것보다는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가뭄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동안 환경부에 농특세 162억원, 내무부에 특별교부세 55억원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곧 완공될 부안댐 온라인 사업과 연계하는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주식회사 변산온천으로부터 지난 1월 12일 도로점용허가신청을 받고 6일만인 1월 18일 이를 허가하였으며 같은 달 25일 도로점용완공과 함께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부안군은 1994년말로 임기가 완료된 군내 의용소방대장에 대하여 1995년 9월 1일 임기만료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였고 후임 의용소방대장을 임명하였습니다.

부안군은 강 민선군수가 취임한 이후 군민들의 숙원사업과 현안사업들을 부안군의 실정과 능력에 맞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군의회와도 충분히 협의하여 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